

2018.05.02(수) - 04(금)
공덕역 1번 출구 경의선광장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

5월 2일(수)

개회식 13:10
개막강연 13:30
워크숍 14:30
- 한국 커먼즈
운동의 부상과 의미
- 연구자의 커먼즈
네트워크 행사 18:30
- 커먼즈 연구자들의
식탁

5월 3일(목)

커먼즈퍼스펙티브 11:00
워크숍 13:50
- 도시와 커먼즈
- 경의선공유지운동과
확장 모델
행사 17:50
- 경의선 커먼즈 추진위
발족식
네트워크 행사 19:20
- 커머닝 파티

5월 4일(금)

커먼즈퍼스펙티브 13:00
워크숍 15:30
- 커먼즈와 커먼즈
- 커먼즈 네트워크
향후 전략 및 과제
폐회식 17:30

일시 2018.05.02(수) - 04(금)
장소 경의선광장
공동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주최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센터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

5월 2일

[개회식] 13:10~13:20

- 사회 : 오근상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 인사 1 :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의 의미
- 인사 2 : 경의선공유지의 환영인사

[개막강연 : 지금, 여기 커먼즈] 13:30~14:10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의 개막 강연으로 커먼즈 운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발표

- 발표: 정남영 (독립연구자)
“커먼즈 운동과 삶정치론”

005

[한국 커먼즈 운동의 부상과 그 의미] 14:30~16:00

한국사회에서 커먼즈 운동의 부상이 가지는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짚어보는 워크숍

: 사회운동 퍼스펙티브에서 커먼즈를 바라보는 연구자들을 초청

- 사회 :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발표 : 장훈교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과 그 의미-토론을 위한 4가지 질문”
- 토론
 - 이하영 (여성인권센터 보다 활동가)
 - 정영신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전은호 (나눔과 미래 시민자산화센터)

018

[연구자와 커먼즈] 16:30~18:00

동료연구자들의 생활 및 연구발전에 필요한 커먼즈는 무엇이고, 연구자들의 연구가 전체사회 기여할 수 있는 커먼즈 확충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 :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 사회 :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 토론
 - 김현준 (독립연구자네트워크)
 -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 센터장)
 - 김자경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 이무성 (전 광주대)

[커먼즈 연구자들의 식탁] 18:30~22:00

다양한 분야에서 커먼즈를 연구하고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의 저녁식사

: 한국 커먼즈 연구의 다음 단계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 네트워킹

5월 3일

[커먼즈 퍼스펙티브 I] 11:00~13:00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의 맥락과 흐름을 들어보는 자리

- 발표1: 송정희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현장조사 중심으로” 040
- 발표2: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건축과 커먼즈” 048
- 발표3: 최빛나 (언메이크 랩)
“똑똑한 도시와 쓰레기통,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 051
- 발표4: 이자훈
“Sharing & Commoning” 066
- 발표5: 민운기 (스페이스 빔)
“인천도시난개발과 커먼즈 : 인천의 고민” 071

[도시와 커먼즈] 13:50~15:50

도시에서의 커먼즈의 의미, 도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먼즈 모델과 유형에 대한 워크숍

- 사회 : 박배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 발제1: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 090
- 발제2: 조성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
“상생도시를 위한 커먼즈의 의미와 유형별 모델” 112
- 토론
 -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이오주은 (한국건설신문 건축저널리스트)
 - 김종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경의선공유지운동과 확장모델] 16:20~17:30

경의선공유지운동 모델과 대안전략에 대해 검토하고 연대계획 등을 함께 고민

- 사회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발제1 :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 문화도시연구소)
“경의선공유지운동과 대안공유지계획 - 하늘·땅·물·햇살은 우리 모두의 것” 133
- 발제2 :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공유지운동과 시민공동체 확장 전략” 136

[경의선커먼즈 발족식] 17:50~19:00

경의선공유지모델을 함께 만들어갈 민간협력네트워크 발족식

- 발표: 경의선커먼즈추진위 준비팀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151
 - 대표, 집행위원단 소개
 - 축사
 - 경의선커먼즈 발족선언문
“경의선공유지추진위를 발족하며” 159
-

[커머닝 파티] 19:20~22:00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킹 파티

5월 4일

[커먼즈 퍼스펙티브 II] 13:20~16:00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먼즈 운동의 맥락과 흐름을 들어보는 자리

- 발표1: 신호근 (은평공유센터)
“물품공유를 통해 바라본 공유와 도시” 163
- 발표2: 염찬희 (ICOOP 협동조합연구소)
“새로운 공유지의 창출 - 협동조합의 실험” 170
- 발표3: 엄문희 (강정평화기행단, 강정마을미술관 활동가)
“박탈된 커먼즈를 되살리는 방식에 관하여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180
- 발표4: 공동체은행 빈고
“커먼즈와 꼬문뱅크” 186
- 발표5: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
“민법과 공동소유” 197
- 발표6: 남성훈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차장)
“농지공유운동 - 한살림과 농지살림운동” 202
- 발표7: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미술관과 공유지” 217

[전체네트워크워크숍 : 커먼즈와 커먼즈] 16:30~18:30

전체 참여자의 토론

- 사회 :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 주제 1: 커먼즈 운동의 연대와 협력방안, 커먼즈네트워크의 향후 과제
- 주제 2: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및 2019년 계획

[폐회식] 18:30~19:00

커먼즈 운동과 삶정치

정남영
(독립연구자)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은 커먼즈 운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커먼즈 운동을 조금 소개해왔을 뿐 이 운동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저로서는 커먼즈 운동의 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주제넘을 듯하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의미'를 이 자리에서 말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네그리·하트가 제시한 '삶정치'(biopolitics)의 이론에 비추어 보는 것일 듯합니다. 제가 삶정치론을 나름대로 공부하며 다듬다가 커먼즈 운동을 알게 되었고¹⁾ 또 하던 공부와의 연관성 때문에 커먼즈 운동을 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커먼즈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커먼즈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삶정치론은 탈근대(여기서는 시기를 가리키며 서구의 경우에는 대략 1968년 혁명 이후, 혹은 정보화 혁명이 일어난 이후를 말합니다)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 즉 한편으로는 소외의 극단적 심화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항의 일반화 가능성을 낳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둡니다. 소외의 극단적 심화란 삶권력(biopower)의 등장—가령 자본이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포섭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사회적 삶 전체를 포섭하고 거기서 또 더 나아가 지구의 삶 전체를 포섭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항의 일반화란 이렇게 대립구도가 '권력 대 권력'의 구도²⁾가 아니라 '삶 대 삶권력'이 된 상황에서는 삶이 있는 모든 곳에 저항의 가능성이 생겼음을 말합니다.

소외의 문제를 가장 먼저 명시적으로 제기한 것은 맑스였습니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이 근대주의자들(국가자본주의자들)로 전환되면서³⁾ 이 문제는 묻혀 버립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근대화 경쟁을 하는 구도('냉전')는 바로 이러한 전환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성숙기의 맑스가 소외의 문제를 잊었다고 보면 안 됩니다.⁴⁾ 오히려 소외에

1) 네그리·하트의 저작에서 피터 라인보(Peter Linebaugh)를 알게 되었고 그의 저작을 번역하게 되었으며, 둘째 번역서인 『마그나카르타 선언』을 번역하면서 오스트롬(Elinor Ostrom)을 알게 되었고 이어서 데이빗 볼리어(David Bolier)를, 그리고 미셸 보웬스(Michel Bauwens)를 알게 되었습니다.

2) 이는 전형적인 근대적 구도로서 홉스 이후 거의 모든 정치학은 이 구도에 입각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거의 모든 선진국들의 공식 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구도에 입각해 있습니다.

3) '소외'를 제시할 때의 맑스를 초기의 맑스, 즉 아직 미숙한 맑스로 보는 태도가 맑스주의 학자들 사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미숙하지 않다고 평가받을 여러 맑스주의 경제이론가들이 한 일 가운데에는 자본의 논리와 관점을 더욱 널리 퍼뜨린 것도 속합니다. 가령 해리 클리버(Harry Cleaver)는 레닌과 스위지(Paul Sweezy)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본주의 발전론은 노동자들의 투쟁과는 무관하게 자본가들 사이의 내적 동학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와 국외에서의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봉기로서 예측하는 것은 그저 이 동학의 설명되지 않은 부산물로서만 나타난다." Harry Cleaver, *Rupturing the Dialectic: The Struggle against Work, Money, and Financialization* (AK Press, 2017), p.191. 이 저작에는 이런 취지의 대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4)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는 '소외'라는 제목이 딸린 짧은 단상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목도 내용상으로는 소외에 관한 것입니다. "생산의 원래적 조건들은 (혹은 같은 말이지만 이성들 사이의 자연적 과정을 통한 인간의 수의 점증하는 수의 재생산은— 이 재생산은 일면으로는 주체에 의한 객체의 전유로 나타나지만 다른 면에서는 형성으로서, 객체들의 주체적 목적에의 종속으로 나타난다. 주체적 활동의 결과들과 저장고들로 변형되는 것이다) 원래 그 자체가 생산물이 될 수는 없다. 즉 생산의 결과물이 될 수

대한 인식이 더 성숙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성숙기의 맑스는 자본주의적 삶의 정점 — 이는 곧 소외의 정점입니다 — 에서 자본주의를 즉 소외를 넘어서는 조건이 생성된다고 보았습니다.5)

맑스의 진의가 완전히 묻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맑스주의자들이 ‘소외’의 문제를 파문어버린 것과는 달리, 20세기 중반부터 소외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문제를 ‘삶’의 관점에서 새롭게 풀어온 일련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푸코의 삶권력/삶정치론6), 들뢰즈·가타리의 삶의 철학7), 네그리·하트의 삶정치론으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8) 이 계보는 자본주의를 ‘삶권력’ — 삶을 장악한 권력 — 으로서 정의함으로써 소외의 문제를 분명히 함과 아울러 삶의 힘(삶의 활력)을 저항의 힘 으로서 새로이 부각시킵니다. 전통적인 좌파의 경우 합법의 경로를 택하든 비합법의 경로를 택하든 권력(자본가가 권력)에 권력(노동자 권력)을 맞세우는 것이 추구되었는데, 이제 삶정치에서는 ‘삶 대 권력’이 기본적인 적대관계를 구성합니다.9)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습

는 없다. 설명이 필요한 것 혹은 역사적 과정의 결과인 것은, 살아있는 활동적인 인간이 자연과의 신진 대사의 자연적·비유기적 조건들 사이의 통일이 아니라, 따라서 자연의 전유가 아니라, 이 인간실존의 비유기적 조건들과 이 활동적 실존 사이의 분리이다. 이 분리는 임금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만 완전히 정립되는 바의 것이다.” Karl Marx,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ught), trans.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3, p.489. 이외에 『자본론』 3권의 이곳저곳에서도 소외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 5)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자본의 한계를 말하는 여러 대목이 있는데 한 대목만 들어봅니다. “어느 지점을 넘으면 생산력의 발전은 자본에 장벽이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노동의 생산력의 발전에 장벽이 된다. 자본은, 즉 임금노동은 이 지점에 도달하면 사회적 부와 생산력의 발전에 대하여 길드제도, 농노제, 노예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과 동일한 관계에 들어서게 되며, 필연적으로 축쇄가 되어 벗겨내어진다. 인간의 활동이 취하는 마지막 형태의 노예상태 — 한편으로는 임금노동,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 — 는 따라서 이렇게 피부처럼 벗겨지며 이러한 탈피는 자본에 상응하는 생산양식의 결과이다.” Karl Marx, *Grundrisse: Foundations of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Rough Draught), Trans. by Martin Nicolau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93, p. 749.
- 6) 푸코는 무엇보다도 권력을 실제 혹은 본질로 보는 사고방식, 달리 말하자면 권력을 사물화시키는 사고방식을 파헤쳤습니다. “권력은 본질이 없다. 단지 작동할 뿐이다. 권력은 속성이 아니라 관계이다.” Gilles Deleuze, *Foucault*, trans. Sean Hand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p.27.
- 7) 들뢰즈·가타리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삶의 철학’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생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따로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발제의 편의상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들뢰즈·가타리가 ‘삶’(vie, life)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일단 쓰는 경우에는 그들의 철학의 핵심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핵심적인 개념인 ‘공재의 평면’(a plane of consistency)은 ‘삶의 평면’(a plane of life)과 동의어입니다. 이와 연관되는 대목은 그들의 가장 대표적 저작인 『천 개의 고원』에도 몇 군데 나오지만 짧지만 들뢰즈가 자신의 철학의 핵심을 몇 페이지로 압축한 글 『내재성 : 하나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이 계보가 푸코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앞에는 스피노자, 맑스, 니체가 있습니다. ‘삶권력’, ‘삶정치’라는 말은 푸코가 만든 말인데, 푸코는 양자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이와 달리 네그리·하트에 게서 ‘삶정치’는 ‘삶권력’에 대립되는 ‘삶의 정치’라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발제문에서 ‘삶정치’는 기본적으로 네그리·하트의 사용에 따릅니다.
- 9) “그러나 이런 식으로 권력이 삶을 목표로 대상으로 삼을 때, 그때 권력에의 저항은 이미 삶의 편에 서며 삶을 권력에 대립시킨다. ‘정치적 대상으로서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그것을 통제하는 데 몰두하는 체제에 대립시켜지게 된다. / (···) 외부로부터 오는 힘은 푸코의 사유의 정점을 이루는, 삶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활력주의(vitalism)가 아니던가? 삶은 권력에 대항하는 이 능력이 아니던가? 『병원의 탄생』부터 줄곧 푸코는, 삶을 죽음에 대항하는 기능들의 집합으로서 정의하는 새로운 활력주의를 창안한 비샤(Bichat)를 좋아했다. 그리고 니체에게만이 아니라 푸코에게도 인간의 죽음에 대항하는 힘들과 기능들의 집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서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신체가 일단 인간적 혼욕으로부터 해방되면 무엇을 성취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푸코는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저항하는 힘들의 집합으로서 무엇을 성취할지 알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Gilles Deleuze, *Foucault*, p.92. (인용자의 강조)

니다. 여기서는 우선 삶은 ‘생명’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놓겠습니다.¹⁰⁾ 삶은 존재론적 원리이자 힘(활력)입니다.¹¹⁾ 생명은 에고로서의 개체가 활력을 받아서 자신의 생물학적 실존을 유지하는 힘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삶의 힘은 개체들을 가로질러 연결되어 주체성을 구성하고 그로써 하나의 온전하고 뚜렷한 삶의 형태를 개화시키는 힘입니다. 개체의 관점에서는 생명은 출발점이고 삶은 개화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령 D. H. 로렌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에게 부여되는 의의가 아니다. 여성이 자신을 낳는 것—이것이 최고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운명이다. 즉 미지의 것의 가장자리로 가서 그 가장자리를 넘어서는 것이.¹²⁾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의 차원에서의 일이며 “여성이 자신을 낳는 것”은 삶의 차원에서의 일입니다. 생명은 유한하지만, 삶은 스피노자적 의미의 ‘영원’의 차원에 속합니다. 스피노자의 용어를 사용하여 더 설명하자면, 생명은 ‘코나투스’(conatus)에 해당하며, 삶은 ‘코나투스’에서 출발하여 ‘욕구’(appetitus), ‘욕망’(cupiditas)을 거쳐 ‘사랑’(amore, 외적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¹³⁾)으로 나아가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코나투스’가 출발점이지만 아직 ‘사랑’은 아니듯이, 생명은 출발점이지만 아직 삶은 아닙니다.¹⁴⁾

생명은 자기유지 말고는 다른 목적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이에 반해 삶은 개화—더 정확히 말하자면 새로운 삶형태의 개화—가 목적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집니다. ① 기존의 삶 형태에서 벗어나야 하고 ② 새로운 삶형태를 만개¹⁵⁾시켜야 합니다. 삶정치론은 이 두 가지를 해내는 힘, 이 삶의 힘을 ‘활력’이라고 부르며 권력에 대립시킵니다. 영어를 제외하고 활력과 권력을 따로 부르는 단어들이 여러 언어에 있습니다.

10) 영어로든 대부분의 유럽어로든 양자는 같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네그리는 양자를 ‘bios’(삶)와 ‘zoe’(생명)라는 희랍어로 구분합니다.

11) 이기묘합(理氣妙合)입니다.

12) Lawrence. *D. H.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 H. Lawrence*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1936) p.441. 들뢰즈·가타리는 생명의 차원에서의 개체화인 ‘개별 주체로의 개체화’와 ‘삶의 개체화’를 맞세운 바 있습니다. “... 삶의 개체화는 주체(이는 삶의 개체화를 이끌거나 지탱해준다)의 개체화와 동일하지 않다. 동일한 ‘평면’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 공재의 평면 혹은 각개성(haecceities)들이 모여서 이루는 평면이다. 이는 오직 속도와 정동만을 안다. 후자의 경우는 형식들, 질료들, 주체들로 구성되는 전혀 다른 평면이다.”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7), p.261.

13) 코나투스(conatus)는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는 노력이고, ‘욕구’(appetitus)는 코나투스를 정신과 몸 양자와 연관시킨 것이며 ‘욕망’(cupiditas)은 스스로를 의식하는 ‘욕구’입니다. ‘사랑’(amore)은 외적 원인에 대한 생각을 수반하는 기쁨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었는지를 알면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은 사유능력(행동능력)의 증가가 가져오는 정동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슬픔’입니다.)

14) 사실 자본주의 체제란 이 출발점의 확보(생계수단의 획득)를 위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전 생애 동안 노동력을 팔아도 출발점에서 떠나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곳이 또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하게 될 것입니다.)

15) 저는 ‘만개’의 한자어 ‘滿開’에 ‘萬開’를 중첩시키고 싶습니다. ‘만물이 만 가지 형태로 만개하다’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	활력
라틴어	potestas	potentia
불어	pouvoir	puissance
독일어	Macht	Vermögen
스페인어	poder	potencia
이탈리아어	potere	potenza
영어	power	power

활력에 대한 가장 기본적 이해는 스스로 달라지는(차이를 발생시키는) 힘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힘은 존재론적으로 본원적인 힘입니다. 권력은 그 다음에 옵니다. 권력은 이 달라지는 힘이 발휘되지 않도록, 즉 달라지지 못하도록 막는 힘입니다.¹⁶⁾ 그런데 어떻게 막는 것일까요? 죽음으로써? 죽이는 권력이 존재했고 또 여전히 존재합니다.¹⁷⁾ 그러나 ‘죽임’은 삶권력의 발휘 양태가 아닙니다.¹⁸⁾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재를 두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활력이 본원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 활력이 현실화(육화)되는 차원입니다. 이 두 차원을 각각 ‘삶의 장’과 ‘현실화의 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삶의 장은 오직 변화와 흐름만이 존재하는 무형질의 차원입니다. ‘현실화의 장’은 활력이 형태를 부여받아 육화되는 형질의 차원입니다. ‘현실화의 장’에서 ‘지층화’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납니다. 지층화한 위계(수직적), 인과(수평적), 틀(3차원적)을 이루는 관계들이 사라지지 않고 고정적으로 존속하면서 활력이 새로운 형태를 띠지 못하고 이미 존재하는 형태로 반복되게 하는 것입니다.¹⁹⁾ 이 지층화의 고도화된 형태가 바로 삶권력입니다.



삶권력으로서의 자본은 삶의 활력이 산출하는 차이소(Δ , ‘삶의 잉여가치’ 혹은 ‘초과’²⁰⁾)를 수량화하여 ‘가격’(교환가치)의 형태로 ‘경제’ 체계로 끌어들입니다. 수량화는 척도에의 종속을 전제하며 척도에의 종속은 지층화의 한 양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 차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본의 수량화가 필연적으로 (사용가치)의 동질화를 동반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동질화를 동반하는 수량화는 활력의 늘 달라지는 힘을 덮고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달라지는 힘은 현실성의 층에서는 질적인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획이 계속되는

16) “권력은 자유로운 주체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운 한에서만 행사된다”라는 푸코의 말을 이런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Michel Foucault,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Vol. 8, NO. 4 (Summer, 1982), P.790.

17)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권력의 존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동물들의 세계에는 일반적으로 권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가까운 영장류의 경우에는 혹시 모르기에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들뢰즈는 『스피노자 — 실천철학』이라는 책에서 생명을 잃는 ‘외적 죽음’과는 다른 ‘내적 죽음’을 말하는데, 이는 권력에 의해 노예화된 삶을 가리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삶, 이것이 바로 ‘내적 죽음’입니다. 현대의 삶권력은 바로 이 ‘내적 죽음’을 세련된 방식으로 양산합니다.

18) 죽이는 것은 개체(에고)의 생명을 취함으로써 그 개체가 하나의 삶형태를 만개할 가능성을 아예 자르는 것인데, 해당 개체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본원적인 삶의 활력 자체를 소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19) *A Thousand Plateaus*, p.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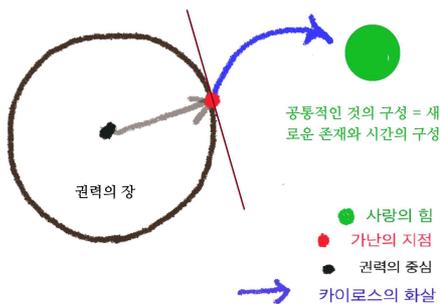
20) ‘삶의 잉여가치’는 들뢰즈·가파리의 용어이고 ‘초과’는 네그리의 용어입니다.

사이에 자본주의적 관계가 공고하게 되고 자본주의적 주체성(자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주체성)이 변성하게 됩니다. 이로써 삶권력으로서 자본이 삶을 포섭하는 작업이 일정하게 완료되는 것입니다.²¹⁾

삶정치론의 목표는 삶권력으로부터 삶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삶권력으로부터’라는 점에서 삶정치론은 커먼즈 운동과 명시적으로 상통합니다. 커먼즈 운동 또한 (오스트롬의 전통적인 공유지 연구에서부터) ‘국가와 시장(자본) 외부 혹은 너머’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²²⁾ 그런데 삶의 해방의 차원에서도 양자가 상통하는지는 삶정치론이 어떤 구체적 기획을 가지는지를 더 알아보고 커먼즈 운동의 구체적 기획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삶의 해방’이란 말이 아직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정치론은 이론이기에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행동하지는 못하며 반대로 커먼즈 운동은 실천적 운동이기에 그 운동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말하지는 못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삶정치론의 기획에서 삶이 만개에 이르는 과정은 둘로 나뉩니다. ① 우선 삶권력의 포획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삶권력이 워낙 삶 깊숙이 삼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탈근대에 일어난 자본의 변형은 생산하는 다중을 점점 더 자율적으로 만드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상황은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삶권력의 포획에서 자유롭다고 해서 일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② 삶권력이 장악했던 그 자리(현실화의 장)에 새로운 삶형태를 구현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단계 혹은 측면에 상응하여 네그리는 활력을 ‘가난’의 힘과 ‘사랑’의 힘으로 나눕니다. 가난은 권력을 텅 비운 상태(제로 지층화),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활력의 씨알이 잠재된 상태입니다. 사랑은 이 씨알이 활력으로 전개되어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형태를 창출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삶정치론의 기본 구도입니다. 물론 아직도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의 형태로 더 구체화한 것이 ‘특이성들의 다중’, ‘공통적인 것’(the common) 그리고 ‘민주주의’ 3자의 관계입니다.

삶정치론의 주체는 ‘다중’입니다.²³⁾ 이는 자본의 생산방식에 일어난 변형(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혹은 삶정치적 생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체입니다.²⁴⁾ 다중 이전의 대표적 변혁주체인 노동자계급이 자본과의 관계에서의 위치의 동일함을 중심으

로 한 집단이라면, 다중은 자본에 고용되든 아니든 사회적 생산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서로 차이나는 특이성들의 네트워크로서 이루어집니다. 다중은 경계가 확정된 어떤 고정된 집단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주체성입니다. 그래서 ‘다중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크기나 숫자와 무관합니다. 누구라도, 몇 명이라도 다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고 나면

21) 『천 개의 고원』의 영역자로 유명한 마쭈미(Brian Massumi)도 최근에 나온 『가치의 재가치화에 대한 99개의 테제』(99 Theses on the Revaluation of Value)에서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하는 일이 이 Δ를 측정 가능한 이윤/가격의 형태로 포획하는 것으로 봅니다. <https://manifold.umn.edu/read/a9a025ba-dd4f-46ac-a149-f6bdd7b07399/section/5a143d0f-7f69-4b07-8a20-44e5eac69f0f#toc>

22) 전통적인 공유지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와 시장은 역사적으로 철탈지원수입니다^^

23) 사실 주체라는 말보다 주체성 혹은 주체화라는 말을 쓰는 것이 푸코에서 네그리에 이르는 삶정치론자들의 취지에 더 부합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양자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24) 네그리는 그 이전에는 ‘전문 노동자’, ‘대중노동자’, ‘사회적 노동자’의 순서로 이러한 주체 형상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하게 다시 만들어야 할 주체성입니다.²⁵⁾

그런데 왜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다중이라고 하지 않고 '특이성들의 다중' 즉 특이성들이 모여서 이루는 다중이라고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정하게 자리를 잡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따르면 개인이 바로 자유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도, '개인'도 근대의 산물—커먼즈를 파괴한 그 근대의 산물—입니다. 커먼즈를 상실한 개별 인간들이 바로 '개인'들입니다. 자본의 시초 축적 단계에서 민중이 생산수단 및 생활수단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산산이 흩어져 이른바 '원자화된 개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의 역사에 비해 발전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개인'은 "권력의 최초의 효과들 중 하나"입니다.²⁶⁾ 이 근대적 '개인'은 율타리쳐진(중획된) 정신과 몸의 구현물이며²⁷⁾ 사적 소유의 주체입니다. 이제 '개인'은 '일자'가 되며 '정체성'에 정착합니다.²⁸⁾

삶정치론은 여러 특이한 힘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공재하며 서로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자리로서의 개인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특이한 힘이란 스스로 달라지는(차이를 발생시키는) 힘이기에 때문에,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²⁹⁾ 한 개인의 활력의 크기는 이 공재하는 힘들이 얼마나 협동적이나에 따릅니다. 각 힘들의 Δ 들은 사실 서로 상쇄될 수도 있는데 협동의 방식으로 네트워킹되는 경우에는 활력의 상호증가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공재하는 특이한 힘들은 각각 외부의 다른 힘들과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형태의 다중 만들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³⁰⁾

이렇듯 핵심은 개인보다는 특이한 힘들 그것들의 협동적 관계입니다. 즉 누구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이한 힘이 그를 거쳐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이성들의 다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개인들의 다중'을 말하면 근대적 개인관에 젖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중을 특정 개인들이 모여서 이룬 고정된 집단처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러면 다중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이성, 특이한 활력에 대한 강조는 우리의 시선의 일부가 늘 예의 '삶의 장'에 두어져 있고 거기서 활력을 받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³¹⁾

25)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다중 만들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촛불'다중의 형성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촛불'다중은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고정된 형태로 남는 식의 집단이 아닙니다.

26) Mich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Translated by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2003) pp.29-30. 이 앞에서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 권력은 유통되는 어떤 것으로, 더 정확하게는 연쇄의 일부로 서만 기능하는 어떤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권력은 이곳저곳에 장소를 잡지 않으며 소수의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나 상품이 전유되듯이 전유되지도 않는다. 권력은 기능한다. 권력은 네트워크들을 통해 행사되며 이 네트워크들에서 개인들이 유통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들은 권력에의 굴복과 권력의 행사를 동시에 행한다. 개인들은 결코 타성적이거나 동의하는 권력의 표적들이 아니다. 개인들이 권력의 중개점들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권력은 개인들을 통과한다. 권력이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책, p.29.

27) 이런 의미에서 소외의 한 양태입니다.

28) 이렇게 개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은 집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기반을 둔 집단 관입니다.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인간'을 상징하는 것도 동일한 사고방식입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율타리를 쳐서 인간/자연으로 나눈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나누면 반드시 양자 사이에 권력관계가 형성됩니다. 남/녀, 어른/아이, 중심/주변 등등의 나눌 짝들을 보세요.

29) 이 그때그때 다른 것을 각개성(haecceity)이라고 합니다.

30) 이는 어떤 커먼즈가 여러 커먼즈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31) 다른 운동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커먼즈 운동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필요상 한 커먼즈 내의 커먼너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특이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삶의 장'에 접속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이것이 무엇이든)에 그치는 운동이 되기 쉽습니다. 다행히도 커먼즈 운동과 연관된 이론가나 학자들 가운데 이 문제를 궁구하는 이가 없지 않습니다. 데이빗 볼리어의 *Think Like a Commoner*(한국어판 배수현 옮김『공유인으로 사 고하라』갈무리 2015) 10장 「전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커먼즈」에 소개되는

그런데 특이성들이 아무리 네트워크를 이루어 모여 있더라도 무언가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중은 공통적인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통적인 활동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것이 다시 갱신된 다중의 새로운 활동 조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통적인 것이 갱신되고 이와 함께 다중도 갱신됩니다.³²⁾

공통적인 것을 실행하는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삶정치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³³⁾처럼 통치의 한 방식이 아닙니다.³⁴⁾ 대의민주주의가 '일반의지'(루소)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다중의 민주주의는 '공통의 의지'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다중의 민주주의는 스피노자의 용어를 빌려 '절대 민주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과연 다중을 구성하는 모두가 자치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네그리와 하트는 "러시아 민중은 작업장에서 종속과 감독 그리고 관리자들을 필요로 하도록 훈련받았으며, 직장에 상사가 있기에 정치에서도 상사를 필요로 한다"는 레닌의 견해³⁵⁾를 소개한 후에 ① 자본주의의 기술적 변형에 따른 새로운 생산의 방식— 삶정치적 생산—이 다중을 지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있으며 ② 혹시 아직 훈련이 덜 되었더라도 민주주의의 훈련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는 곳이며 민주주의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커먼즈만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삶정치론의 민주주의론은 그 복잡한 디테일을 털고 나면 커먼즈의 민주주의와 바로 통하는 것입니다.³⁶⁾

삶정치론과 커먼즈 운동의 강한 친화성은 무엇보다 '공통적인 것'(the common)과 커먼즈(communs)의 어휘상의 유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유사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고 말한다.³⁷⁾ 커먼즈는 자원도 아니고 자원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도 아니며 자원을 파수하기 위한 프로토콜도 아니다. 커먼즈는 이 모든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다.³⁸⁾

여기서 "이 모든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란 삶정치론의 용어로 말하자면 다중이 민

베버(Andreas Weber)의 연구 — 이는 'Enlivenment'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면의 연구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커먼너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 '삶의 장'에 접속하는 훈련을 하는 것, 즉 사물을 포함한 주위세계와의 동지의식을 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네그리·하트가 공통적인 것을 설명할 때 그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언어는 정동이나 제스처처럼 대부분 공통적이며, 만일 사적이거나 공적인 것이 된다면—즉 단어·어구·품사의 많은 부분이 사적 소유나 공적 권위에 종속된다면—표현·창조·소통의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네그리·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사월의책 2014) 17-18면.

33) 네그리·하트가 보기에 대의민주주의는 귀족제입니다. 선출된 소수의 '대표자들'이 통치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34) 만일 그것이 통치라면 '자기통치'입니다. '모두에 의한 모두의 통치'입니다.

35) 『공통체』 256면.

36) 물론 사회 전체에는 아직 '지도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삶정치론이 비록 지도자의 부재를 지향할지라도 실제 현실에 지도자가 부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부재를 향한 경향을 현실에도 존재하는데 『집회』에서 네그리와 하트는 이 경향을 '전략과 전술의 전도'에서 읽어냅니다. 과거에는 지도부가 전략을 담당하고 대중이 전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다중이 전략을 담당하고 지도부가 전술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지난 촛불에서 일정한 만큼 목격했던 바입니다. 전체적인 방향 즉 전략을 결정한 것은 촛불다중이지 지도부들이 아닙니다.

37) [옮긴이] 이는 커먼즈 역사가인 피터 라인보(Peter Linebaugh)의 말이다.

38)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p.5.

주주의의 방식으로 부단히 공통적인 것을 산출하는 활동에 다름 아닙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시장의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다중과 통하고, “프로토콜”은 참여자 모두에 의한 거버넌스의 규칙이라는 점에서 다중의 민주주의와 통하며, “자원”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부이기 때문입니다. 커먼즈나 공통적인 것이나 사유재산이 아닌 부, 누구의 것도 아니면서 모두의 것인 공통재(common goods)를 포함하면서도 거기에 국한되지는 않고 주체적 활동의 측면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 ‘커머너’(commoner)는 다중에 속한 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네그리·하트도 『선언』(Declaration, 2012)에서 ‘커머너’와 ‘커머닝’을 온전히 자신들의 삶정치론에 들어와있는 용어처럼 설명합니다. 커머너의 커머닝이 “공통적인 것을 만드는” 활동으로서 제시되는 것입니다.³⁹⁾ 이는 초기의 태도에서 진전된 것입니다. 2004년에 네그리·하트는 ‘커먼즈’(the commons)라는 용어를 피하고 ‘공통적인 것’을 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커먼즈라고 부르기를 꺼리는데, 커먼즈가 사유재산의 출현으로 파괴된 전자본주의적인 공유된 공간들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비록 더 어색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그 철학적 내용을 더 부각시키며 이것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발전임을 강조한다.)⁴⁰⁾

오스트롬(Elinor Ostrom)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 2009년이고 P2P재단은 2005년에 창립되었으며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의 블로그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의 네그리·하트로서는 커먼즈를 전자본주의적인 공유지 이외의 것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커먼즈가 전통적인 공유지의 협소함—이것을 이유로 오스트롬의 커먼즈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에서 시원하게 벗어난 것은 디지털 커먼즈의 등장을 계기로 해서입니다. 이로써 커먼즈 운동에 전지구적 차원이 부여되고, 이는 DG-ML(Design globally, manufacture locally)이라는 새로운 생산양식(P2P 생산양식의 더 구체화인 형태)을 다듬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점도 삶정치론과 묘하게 통합니다. 네그리·하트가 다듬어낸 새로운 주체성인 다중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나중에는 ‘삶정치적 생산’이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됩니다)로 특징지어지는 자본의 기술적 변형에 상응하는 것인데, 이 변형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 바로 디지털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즉 커먼즈 운동이 운동으로 확대되는 계기는 다중이라는 정치적 주체성이 개념으로서 다듬어지는 계기와 동일합니다.

흥미롭게도 네그리·하트는 가장 최근의 책 『집회』(Assembly, 2017)에서 ‘공유지의 비극’론과 함께 그것을 반박하는 오스트롬을 명확하게 거론합니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민주적 참여의 제도들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롬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접근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작아야 하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생각을 달리한다. 우리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열린 더

39)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Declaration* (New York: Argo Navis Author Services, 2012). Declaration, p. 105. 이 대목은 조금 길지만 읽을 가치가 있기에 뒤에 부록으로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네그리·하트가 커먼즈 운동에 바라는 바가 담겨있다고 보아도 됩니다.

40)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2004) p.xv.

확장적인 민주적 경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⁴¹⁾

둘째 문장의 경우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디지털 커먼즈의 등장 이후 커먼즈 운동이 규모의 한계를 부수고 발전하고 있는 지금 그 초석을 놓았을 뿐인 오스트롬(과 그녀의 연구의 대상인 전통적인 형태의 커먼즈)을 놓고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듯합니다. 지금 커먼즈는 다중처럼 언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볼리어가 말했듯이 “커먼즈는 일군의 사람들이 어떤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접근, 이용, 장기적 돌봄을 특별히 염두에 두면서 관리하기로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⁴²⁾ 그리고 그 규모는 지역 너머, 일국 너머, 대륙 너머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보웬스 등의 커먼즈 활동가들 또한 네그리·하트처럼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커먼즈 활동가들의 포부가 네그리·하트의 포부와 어느 정도 유사한지는 『집회』에서 ‘세 얼굴의 디오니소스’를 말하는 대목⁴³⁾과 「커먼즈 이행과 P2P 입문」(“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⁴⁴⁾, 2017년 3월)이라는 제목의 팸플릿에서 커먼즈의 (정치적) 확대를 말하는 대목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⁴⁵⁾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살정치	커먼즈 운동
예시적 정치 (prefigurative politics)	작은 규모로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운동단체들, 액서더스	커먼즈의 생산공동체 자체
국가와의 관계	적대적 개혁주의: 기존의 제도를 그 내부로부터 변형 (가령, 민중의 ‘하인’이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	파트너 국가론 : 생산공동체를 국가의 법의 틀에서 합법화하는 비영리 지원단체들의 확장 ⁴⁶⁾
(참고) 자본과의 관계	다중적 기업가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
हे게모니 전략	권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⁴⁷⁾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여 새로운 사회의 제도들을 창출하는 것. 전체를 직접 변형시키는 것.	경제의 영역에서는 ‘커먼즈 회의소’(Chambers of the Commons)가, 정치의 영역에서는 ‘커먼즈 의회’(Assembly of the Commons)가 구상되고 있다. 이것은 다시 일국 사회의 범위 너머로 확대될 수 있다.

41)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Assembl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 96. 이 앞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공통적인 것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부의 사용과 부에의 접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통적인 것의 현대적 적합성을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저작을 쓴 엘리너 오스트롬은 올바르게도 거버넌스와 제도의 필요에 초점을 둔다. 오스트롬은 모든 부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황폐해지지 않게 보존되면 공적 재산이 되거나 사유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공유지의 비극’류의 주장들 모두의 허위성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다. 그녀는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는 관리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가와 자본주의적 기업이 관리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에는 반대한다. 집단적인 형태의 자주관리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 자신에 의해서 규칙이 고안되고 수정되며, 또한 그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시행되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공통의 재산 배치.’”

42) David Bollier, *Think Like a Commoner: A Short Introduction to the Life of the Commons* (New Society Publishers 2014), p. 128.

43) *Assembly*, 15장 2절

44) 나중에 더 확장되어 <http://commonstransition.org/commons-transition-p2p-primer/>에 올려져 있습니다.

45) ‘세 얼굴의 디오니소스’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향하는 움직임에 대한 것이므로 일단 정치적인 영역의 것입니다. 표에는 여기에 경제 영역의 유사성도 추가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양자 사이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친화성이 그 차이를 압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정치론과 커먼즈 운동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저 표에서 '예시적 정치'라는 항목과 관련해서일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네그리·하트는 운동단체들이 자체 내에서 수립하는 민주주의에 '예시적 정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⁴⁸⁾ 이런 의미에서 '예시적 정치'는 필요하지만 예의 '세 얼굴'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커먼즈 운동이 커먼즈의 정치를 '예시적'이라고 부를 때 이는 단지 필요한 여럿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미래의 예시적 현존, 따라서 확대되어야 할 씨알로 보는 것입니다.

커먼즈가 그리고 새로운 가치 체제의 예시적 형태들이 이미 존재한다. 커먼너들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며 이미 커머닝을 행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커먼즈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⁴⁹⁾

우리는 네그리·하트의 삶정치론과 커먼즈 운동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고정된 조직화 형태를 모델로서 말하지 않고 미지의 상태로 두는 삶정치론이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의 발명에 더 강조점을 둔다면, 커먼즈 운동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존재했던 조직 혹은 공동체 형태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새로운 현실에 맞추어 새롭게 발전시키는 데 더 초점을 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커먼즈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면 낡아도 한참 낡은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안근대의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형태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커먼즈 운동가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맑스가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맑스는 1868년 엥겔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동네인 훈스뤼크 지역(the Hunsrück)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게르만 유형의 커먼즈가 잔존했다고 말합니다.⁵⁰⁾ “가장 오래된 것에서 가장 새로운 것” 혹은 “오래된 유형의 사회가 더 우월한 형태로 부활한 것”⁵¹⁾ — 이것이 맑스가 보는 커먼즈입니다. 사실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서 자본은 그 발전의 정점에서 자본을 넘어서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들 것이라고 추론했으므로 네그리에게 큰 영감을 준 바 있습니다.⁵²⁾ 이렇게 볼 때 맑스가 — 그에게 두 측면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 삶정치론과 커먼즈 운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측면은 네그리·하트가 자본의 탈

46) 확장되면 “생산 공동체”는 시민사회가 되고,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은 시장 조직들이 되며, 비영리 지원단체는 국가(‘파트너 국가’)가 됩니다.

47) ‘정치적 힘을 장악하되 권력을 잡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taking power, but differently”)

48) 한국에서는 특히 전통적인 운동단체들의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촛불 다중의 수평성은 다중 자체가 이룬 것입니다. 2008년 촛불 다중이 막 형성되던 초기에 특정 운동단체가 지도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1999년 씨애틀 이후에는 특히 소문자 ‘a’의 아나키스트들(anarchists)이 절차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큼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s://newleftreview.org/II/13/david-graeber-the-new-anarchists> 참조.

49) Michel Bauwens, Vasilis Kostakis, Stacco Troncoso, Ann Marie Utratel, “Commons Transition and P2P: a Primer,” https://www.tni.org/files/publication-downloads/commons_transition_and_p2p_primer_v9.pdf, p.47.

50) Marx To Engels In Manchester, MECW Volume 42, p. 557.

51) 같은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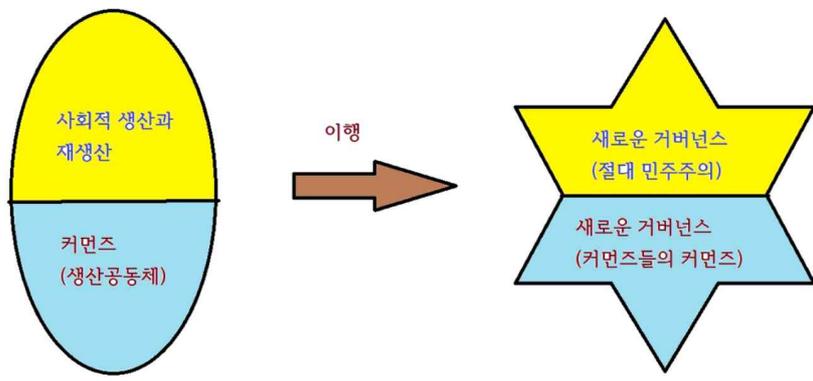
52) 네그리는 한때 감옥에서 엄청난 좌절에 빠졌는데, 이때 그를 구해준 것이 맑스와 스피노자의 저작들입니다. 네그리는 양자 모두 근대 속의 탈근대(나중에는 ‘대안근대’)로 꼽습니다.

근대적 변형에 상응하여 다중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을 다듬어낸 것과 연관되며, 다른 한 측면은 커먼즈 운동의 새로운 부활과 연관됩니다.)

지금은 맑스를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사실 (삶권력이라는 말은 20세기 후반에 와서야 생긴 것이지만) 맑스가 가장 먼저 자본과 국가를 삶권력으로서 포착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맑스를 잘 읽으면, 자본주의는 (아무리 그것이 일정한 역사적 사명⁵³⁾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삶을 삶이 아닌 것으로, 소외된 삶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따라서 극복되어야 할 체제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맑스의 자본 연구는 바로 이 ‘극복’을 위한 준비에 다름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삶은 만개라는 자기목적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유로운 조건이라면 각 개인이나 집단이 이 출발조건에서 만개를 향해 나아가는 만큼이 그 성취입니다. 자유로운 조건에서라도 모두가 만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억압적인 조건에서도 삶을 만개시키는 데 모두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소수나 특출한 소수의 관점에서 사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모두에게 자유로운 조건을 주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사회 구성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 조건입니다.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의 협소함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출발조건을 저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언론으로 스스로를 민주주의인 양 위장했습니다. 문명을 가장한 야만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출발조건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워킹머신과 같습니다. 열심히 걷고 뛰어야 그 위에 간신히 서 있으며 가만히 있으면 뒤로 쳐지고 맙니다. 출발조건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의 행태도 출발조건에 갇혀 있습니다. 만개를 향해 나아가기보다 내일의 출발조건, 내년의 출발조건, 후손의 출발조건을 확보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내생의 출발조건을 미리 확보하려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류가 이런 식으로 어리석어본 적이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출발조건이 삶의 감옥이 된 상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유리합니다. 한편으로는 희소성의 원칙에 간하지 않는 부를 생산하는 기술도 발전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입니다만) 이 상태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환경의 실제적 경고도 존재합니다. 커먼즈 운동은 자급운동(출발점의 확보)을 넘어서 바로 이러한 삶의 만개를 향한 운동, 진정한 삶의 가치를 향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삶정치론은 좋은 동지요 길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3) 맑스는 자본의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인정합니다.

|| 부록1 || 네그리·하트가 말하는 ‘커머너’와 ‘커머닝’

중세 잉글랜드에서 커머너(commoner)는 사회 질서를 구성하는 세 신분 — 싸우는 계층(귀족), 기도하는 계층(성직자), 일하는 계층(커머너) — 의 하나였다. 영국 등지에서 근대 영어의 용법에 보존된 ‘커머너’라는 용어의 의미[우리말로 ‘평민’]는 작위(爵位) 등의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 즉 보통사람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택하는 ‘커머너’라는 용어는 중세 잉글랜드로 소급되는 생산적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커머너들은 그저 그들이 일하기 때문에 ‘커먼’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공통적인 것에 입각하여 일하기 때문에 ‘커먼’하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빵 굽는 사람, 옷감 짜는 사람, 방아 돌리는 사람 같이 직업을 가리키는 말을 이해하듯이 ‘커머너’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빵 굽는 사람이 빵을 굽고, 옷감 짜는 사람이 옷감을 짜고, 방아 돌리는 사람이 방아를 돌리듯이, 커머너는 커머닝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통적인 것을 만든다.

따라서 커머너는 비범한 과제 — 사유 재산을 모든 이의 접근과 향유가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일, 국가의 권위에 의하여 통제되는 공적 재산을 공통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일, 그리고 모든 경우마다 공통의 부를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지속시키는 메커니즘들을 발견하는 일 — 를 성취하는 보통사람이다. 그렇다면 커머너의 과제는 빈자들이 자급할 수 있도록 들판과 강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디어, 이미지, 코드, 음악,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수단을 창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이 과제를 성취할 선결 조건들의 일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유대를 창출할 능력, 특이성들이 차이를 통해 소통할 능력, 공포가 없는 상태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안전,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행동을 할 능력이 그것이다. 커머너는 구성적 참여자이다. 즉 공통적인 것의 개방적 공유에 기반을 둔 민주적 사회를 구성하는 데 토대가 되고 필요한 주체성이다.

‘커머닝’의 행동은 공유된 부에의 접근과 자기관리만을 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조직화의 형태들을 구축하는 것을 향하기도 해야 한다. 커머너는 투쟁하는 광범하고 다양한 사회적 집단들 — 학생들, 노동자들,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 빈민, 젠더 및 인종과 관련된 종속과 싸우는 사람들 등 — 사이의 ‘연합’(alliances)를 창출할 수단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열거를 할 때 사람들은 때때로 정치적 현실화의 실천으로서 형성되는 ‘연대’(coalition)를 염두에 둔다. 그러나 ‘연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기에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다. ‘연대’는 다양한 집단들이 전략·전술상 함께하면서도 그 뚜렷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심지어 분리된 조직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함축한다. 공통적인 것의 ‘연합’은 전적으로 이와 다르다. 물론 커머닝은 정체성들⁵⁴⁾이 부정되어 모두가 자신들이 밀바탕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공통적인 것은 동일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투쟁과정에서는 상이한 사회적 집단들이 특이성들로서 상호작용하며 상호교류에 의하여 계몽되고 고취되고 변형된다. 그들은 투쟁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듣거나 이해할 수 없는 저주파로 서로 말한다.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Declaration, pp. 105-107 (밑줄은 인용자의 것)

54) 여기서는 ‘서로 다른 정체성들’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 부록2 || 근대와 대안근대

근대	대안근대
경쟁, 분업	협동, 커머닝
추출적(extractive)	생성적(generative)
대의(代議)	참여
선형(linear) → '물질대사의 단절'(맑스)	순환형(circular)
사적인 것 + 공적인 것	커먼즈/공통적인 것(the common)
주인으로서의 자본	친구로서의 자본
관료제로서의 국가, 혹은 시장 국가	파트너로서의 국가
중앙집중적	탈중심적, 분산적
총획(사유화)	공통화(commonification)
재분배(redistribution) — 복지국가	선(先)분배(pre-distribution) — 커먼즈
담음	엮음
자본의 축적	커먼즈의 축적
계몽주의적 이성/기능적 합리성	삶정치적 이성/공통적 감각
노동시간	삶의 시간
측정/척도	탈측정/척도 너머
이윤으로서의 잉여가치(경제적 잉여가치)	삶의 잉여가치
자본주의적 주체성	자유로운 주체성: 커머너, 다중
삶의 시간은 생계수단을 버는 시간	삶의 시간은 새로운 삶형태를 창출하는 시간
인격, 합리적 개인	특이성
추출 대상으로서의 자연	동지로서의 자연

알림 | 몇 사람이 모여서 커먼즈 운동 및 삶정치론에 대한 글들을 우리말로 옮겨서 소개하는 블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minamjah.tistory.com/)의 커먼즈 운동 및 삶정치 섹션의 글들을 가져오고 그 뒤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현재 제 블로그에도 저 말고도 다른 역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는 아직 구축 중입니다. 시간을 많이 못 내서(아니면 게을러서?) 아직 글들을 다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URL은 <http://commonstrans.net/>입니다.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과 그 의미

- 토론을 위한 4개의 질문

장훈교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나는 “공동자원 (사회)운동”을 공동의 자원(common resources)으로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체 혹은 집단의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의 제도화(communs)를 지향하는 운동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공동자원체계(communs)란 “복수의 개인이 동시에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과 그 존속을 담보하는 시스템”(모기 아이이치로, 2016: 112)⁵⁵⁾이란 의미로 사용한다. 공동의 자원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사회적 실천은 우리 일상생활세계 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실천을 공동자원 사회운동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또한 공동의 자원 만들기 과정에 국가나 정부, 혹은 기업이나 다양한 유형의 지역공동체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유형과 구별하여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공동의 자원 만들기 과정에 개입하는 부문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동자원 사회운동은 그러한 사회적 실천 일반이 아니라, 그 중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이러한 실천을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는 실천으로 나는 제한한다. 사회운동의 관점이란 표현은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공동의 자원 만들기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실천의 동원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때, 그 동원의 목적으로 기존 제도의 민주적 변형을 지향하는 관점을 나는 사회운동의 관점으로 이해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주체나 문제 등을 통합시켜내는 제도의 통합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동원에 대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기여 일반을 나는 사회운동의 관점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일부 실천 중엔 행위자들이 운동에 대한 자각이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운동으로 포함될 수 있는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글은 위의 정의에 입각해, 현재 한국사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동자원 운동 부상 배경과 그 특성과 의미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국의 논의로 한국의 현실을 대체하지 않는 것이다. 문헌으로만 파악해보는다면, 현재 외국에서 공동자원 운동은 이 운동의 참여자들의 주장처럼 폭발적인 국면으로 보인다. 전지구적 맥락에서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을 1단계로 본다면, 현 단계는 그 후속단계인 2단계의 공동자원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1단계의 공동자원 운동이 (1) 공동의 자원으로 존재해온 혹은 존재해야 할 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2) 2단계의 공동자원 운동은 보다 일상생활의 층위에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삶의 양식 전반을 공동자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면서, 전체 질서의 재구성을 아래로부터 지향해나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한국 공동자원 운동은 후발 공동자원 운동(late commons movements)의 특성을 지닌다. 그 영향으로 인해 공동자원의 시각과 패러다임이 문헌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동자원 운동 그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인 ‘공동자원’이 국내에 그 토

55) 모기 아이이치로, 2016, “커먼즈의 계보와 그 확장: 현대총유론으로 가교하기 위한 시도”, [현대총유론], 진인사

대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유럽적인 맥락 보다 정확하게는 영미문화권의 전통과 역사에 기반을 둔 개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동자원은 일정하게 외부로부터 삽입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사회운동의 체계와 질서 및 구조와 이 개념과 운동 규정은 충돌하거나 혹은 불일치나 갈등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운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나 운동의 발전에 실천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공동자원은 단지 외부로부터 삽입된 또 하나의 지적 식민화 현상 중 하나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전지구적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안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 사회운동의 조건으로 인해 (1) 공동자원 개념과 전략에 대한 습득과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고 (2) 이 과정에서 공동자원과의 접합 혹은 공동자원을 통해 자신의 운동을 다시 규정하거나 (3) 혹은 공동자원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수립하고자 하는 실천들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이는 전체 사회운동부문(social movement sector)으로 본다면 여전히 주변적이며, 공동자원 운동이란 규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의 발전과 지속에 어떤 가능성을 더 하는 개념과 전략인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 부상하고 있는 공동자원 운동의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1) 공동자원 운동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구조를 다른 각도에서 재점검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2) 동시에 공동자원 운동에 내재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동자원 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사회의 변화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항해계모니 창출과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이 현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역사적인 접근과 조사에 기초해야 함은 분명하지만, 아쉽게도 이 글은 그런 분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작업가설을 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멈춘다.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외국의 공동자원 운동과 한국의 공동자원 운동에는 그 운동의 구조뿐만 아니라 맥락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는 것이다.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그러한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질문을 던진다. 이 글은 이 모든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운동과 공동자원 운동의 관계 및 그 전망을 도출해내기 위한 동료들과의 토론 문항이다. 이 글이 담고 있는 혹은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에서 공동자원 운동이 부상하고 있는가? 부상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공동자원 운동은 어떤 배경 하에 등장하고 있는가?
- (2)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구조 혹은 특성은 무엇인가? 혹은 기존 사회운동과의 관계 /비교/대조 속에서 발견되는 고유성이 있는가?
- (3) 공동자원 운동이 현재 한국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혹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떤 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가?
- (4) 공동자원 운동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도시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어줄 것인가?

1. 예비적 논의

공동자원 운동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일차적인 난점은 공동자원의 개념과 그 개념에 부합하는 공동자원 운동의 범위 그리고 실제 운동을 그 범주 안에 배치하는 일이다. 공동자원의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그 범주와 구성 집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는 공동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대신, 운동이 주창하는 공동자원이란 구호를 근거로 공동자원 운동의 범주를 그려내고, 그 안에서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현재와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공동자원 운동은 (1) 디지털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며 (2) 도시 공동자원(urban commons)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의 운동 (3) 자연 공동자원의 방어를 위한 운동 (4) 공동체 공동자원의 운동 (5) 전지구적 공동자원의 방어를 위한 운동 (6) 포스트-자본주의 공동자원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공동자원 운동 주창자들은 공동자원을 국가와 시장에 의한 인클로저(enclosure)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사회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커먼즈”의 용례를 따르는 혹은 “커먼즈”를 주창하는 운동과 실천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커먼즈를 자체 문화의 맥락 안에서 해석 할 수 있는 영어문화권이나 유럽의 일부 문화권에서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커먼즈와 유사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이를 지칭하는 통일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나, 전통적인 용어가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근대로의 단절이 급격하고 압축적으로 진행되어 전통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미약한 사회에선 그와 동일한 용어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커먼즈 운동이라고 할 때,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커먼즈란 용어를 일상의 문법 안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그 의미와 다양하게 접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양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런 폭발은 하나의 정치적 현상을 넘어 전지구적 문화현상의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많다. 이런 해석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적인 지배질서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성취이자 사회적 동등성과 윤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⁵⁶⁾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곧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측면과 평등과 대안 윤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란 두 차원이 커먼즈를 둘러싸고 현재 부상하고 있는 실천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1) 통합기표로서의 공동자원

공동자원 개념 이전에도 공동의 자원을 만들고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다. 숲을 관리하고, 어장을 지키거나 마을의 물을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를 만들기도 했다. 도시 공간을 함께 이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골목을 관리하기도 하고, 다세대주택에선 쓰레기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규칙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단지 공동자원(common)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 모든 활동들은 공동자원의 (재)생산과 관계있는 실천들이다. 공동자원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실천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전통, 혹은 관습 안에 이미 존재하던 실천의 재발견이자 이를 현대 맥락에 맞추어 재구성해온 실천이란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그러나 공동자원이란 기표가 등장하면서, 이런 실천들이 (1) 원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별적인 실천들이나 (2) 상호부조와 같은 전통 공동체의 일상생활의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3)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실천으로 재규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자원은 통합기표로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David Bollier와 Burns H. Weston은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의 특징을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아젠다에 의해 규정되는 전통적인 운동이 아니며, 그보다는 자기-경영/관리(self-governance

56) URL: <http://www.onthecommons.org/commons-movement-1#sthash.2NDwWJQM.dpbs>

)의 원리와 특정한 사회적 실천에 대한 참여자들의 헌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운동⁵⁷⁾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보통 'commoner'라고 불리는)은 그들 자신의 대안 모델을 직접 만드는 자기 조직화의 실천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그 대안 모델은 참여자들의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동의 자원 모델이기도 하고, 때론 그들을 넘어서 전체 동료시민이나 혹은 인류 전체를 위한 공동의 자원이기도 하다.

전지구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자원 운동에서 흥미로운 점은 (1) 엘리너 오스트롬을 매개로 구체화된 공동자원 연구의 학술 계보와 (2)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화된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의 관계이다.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이 엘리너 오스트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흐름이 비교적 중첩되는 시간대에 부상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공동자원 부문(common sector)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만들어진 디지털 공동자원 부문이다. 참여자의 수가 다른 부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이 안엔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공동자원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규칙, 프로토콜, 라이선스 등의 규정을 통해 전지구적 공동자원(global commons)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회적 실천을 공동자원 운동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 공동자원 운동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네트워크를 (재)생산하는 실천이 아니라 네트워크로부터 배제된 자들이 네트워크 안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천을 나는 공동자원 사회운동 혹은 공동자원 운동이라고 부를 것이다. 곧 "협력 의도가 없는 개인들의 행위가 집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문화확산" 등의 현상과 사회운동의 실천을 구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집단 현상들은 사회운동의 실천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이 현상들은 사회운동의 문화적 맥락을 이룬다. 그러나 분석적으로 사회운동은 두 현상과는 다른 현상으로 우리가 정의해야만, 분석적으로 공동자원 사회운동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운동에 대한 좁은 해석일 수 있다.

2) 공동자원 운동의 현황

Open access movement 오픈 사이언스, 오픈 에듀케이션, 오픈 컬쳐, 오픈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오픈 액세스 운동들은 기존 사회운동들과 동일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지만 동시에 차이도 존재한다.

- 공통점 :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의 충족에 필요한 자원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옹호한다.

그러나 단지 권리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그 자원을 창출한다. 이런 점에서 공동자원 운동은 (1) 요구의 정치(politics of demand)의 차원을 지니기도 하지만 (2) 그보다는 압도적으로 창안의 정치(politics of creation)를 따른다.

디지털 영역에서 이런 운동이 보다 자유로운 이유는 자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PC와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 비용은 과거 지식과 정보의 생산에 필요했던 자본의 필요에 비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도서관 동료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접근과 지식의 순환을 방어하고자 하는 도서관 운동

과학자들의 운동 과학자료와 지식의 공개를 통한 협력과 자유로운 연구를 지향하는 과학자들의

57) <http://www.csrwire.com/blog/posts/1203-the-commons-as-a-growing-global-movement>

운동

문화예술가들의 운동 자신들의 작업이 과거의 작품과 다른 이들과의 협력의 결과라는 점을 자각해 나가고 있는 문화예술가들의 운동

미디어활동가들 Open Spectrum 운동

이주자들의 운동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식이나 문화를 전유하고 있는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며, 그 주권성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이주자 공동체들의 운동

온라인 이용자들 시장의 어떤 제재도 없이 상호간에 자유로운 접근과 통신을 하기 위한 실천들

자연공동자원의 방어를 위한 운동 (1) 환경주의자들은 자연 자원을 방어하기 위한 담론으로 공동자원이란 용어나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늘어남 (2) 생물종의 다양성을 방어하는 운동가들도 이런 경향을 보임 (3) 특히 농업 종자와 관련한 움직임들 (4) GMO와 관련한 운동들

대항지구화운동 대항지구화운동 진영에선 커먼즈를 민주적인 자가지배와 지역 문화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상업화 비판 일상생활의 과잉-상업화(over-commercialization)를 비판하는 이들도 공동자원 개념이나 전략을 활용 : 학교, 공공제도, 스포츠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항 운동 상업 구역의 확장 혹은 상업 구역의 한계 없는 상업화 혹은 이윤추구 논리를 이용, 소유, 관리의 측면에서 제한하면서, 구역 전체를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운동들

지역공동체운동들 지역화폐운동, 지역식농(local food),

공동체발전(Community Development) 전략

농민운동 농지공유운동

생존

주거 주거환경에 공동자원의 개념을 도입한 운동들

제작자들의 운동

일상자원의 공유를 위한 운동들

2. 질문1: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 배경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 배경을 이해하는 일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한국 공동자원 운동이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자, 공동자원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경로를 찾는 일이다.

1)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현 단계

사회운동의 생애주기(life cycle of social movements)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운동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예를 들어 Blumer(1969)와 킬리(1978)는 사회운동의 주기를 [Preliminary state(emergence state) → Coalescence state → Institutionalization state → decline state]의 4단계로 구별한다. 이런 단계 구별이 공동자원 운동 분석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일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단계 구별법에 기초해서 본다면 공동자원 운동은 1) 광범위한 어떤 불만 혹은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와 모순, 갈등을 토대로 2) 자신의 운동을 형성해나가는 초기 국면으로 보인다. 곧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운동 모델로 나타나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하거나 더 큰 운동으로 병합해나가는 특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를 자신의 대안으로 치환하는 원형 모델을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모델뿐만 아니라 관련 운동은 리더(leader)를 만들고 있고, 이 리더들은 자신의 실천과 운동에 대한 전망과 서사(narrative)를 전체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디어와 정부의 관심도 높으며,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일종의 민주적 실험주의의 윤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윤리와 함께 공동자원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운동 모델의 복제(copying)와 창안이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별적이고 원자적인 운동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각 운동을 연결하거나 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실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현재 한국 공동자원 운동이 '부상'(rising) 단계에 있다고 본다.⁵⁸⁾

2)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 배경

한국에서 공동자원 운동이 부상하고 있는 배경은 단지 한국의 맥락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과 한국의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공동자원 운동이 출발단계인 1990년대 중반부터 전지구적 대항운동의 차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고, 2000년대 이후 운동의 전지구적 연결 특히 실시간적 연결성이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자원 운동의 전지구적 부상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재편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 공동자원 운동이 한국만의 운동이 아니라 일종의 전지구적 보편성을 공유하는 운동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또한 동료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미시적인 맥락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지구적 보편성을 추상적으로 보편화하여 각 장소나 각 맥락에 따라 구현되는 운동의 고유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을 설명하는 외국 연구/활동가들은 대부분 공동자원 운동을 신자유주의적 합의(neoliberal consensus) 혹은 그 질서에 대한 도전이란 맥락에서 설명한다. 전지구적 공동

58) 이 점에서 나는 사회운동의 생애주기를 [Preliminary state(emergence state) → Rising state → Coalescence state → Institutionalization state → decline state]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본다.

자원 운동의 출현 자체가 자본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분명 일정한 설명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데이비드 하비가 “강탈에 의한 축적”이라고 불렀던 메커니즘에 의해 동료시민들이 공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자원과 분리되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이를 비판하면서 다시 자원과 동료시민을 연결하는 패러다임으로 공동자원이 영어문화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점은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을 이해할 때 언제나 중요하다. 또한 바로 이런 전지구적 맥락 안에 내재된 보편성의 차원이 각 장소의 운동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했고, 공동자원은 그 통합기표(unifying signifier)의 기능을 했다.

공동자원은 곧 비판과 대안의 이중기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기표였다. 공동자원이란 개념을 자체 역사 안에 간직하고 있던 영어문화권은 1) 강탈에 의한 축적을 공동자원의 인클로저(enclosure of commons)라고 하는 자신들의 역사적인 선례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야기를 창안해냈고 2) 동시에 이 분리 과정의 대안으로 다시 “공동자원을 되찾아(reclaiming the commons)”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실천을 동원할 수 있었다. 공동자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망이자 전략이 되었고, 공동자원이란 규정에 내재된 포괄성으로 인해 동료시민들의 삶에 기본적인 문화적인 필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자원 전체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 20세기 사회공학자가 즉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동유럽의 국가사회주의, 그리고 제3세계의 민족사회주의국가 모두의 실패 뒤에 시장에 대항하여 다시 구축한 하나의 운동전망으로 공동자원이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을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맥락과 공동자원의 이중기능으로 대체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신자유주의가 각국마다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동자원 운동이 한국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유성의 하나는 한국의 소유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의 위기 혹은 그 한계이다. 신자유주의를 무엇보다 소유를 통한 자유의 확장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때, 이 이데올로기는 이중운동을 통해 소유적 개인주의를 내파시켰다. 한국의 소유구조가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더욱 강화된 형태의 ‘추출적 소유’(extractive ownership)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런 추출적 소유구조는 (1) 노동의 불안 (2) 자산과 부의 집중을 초래했다. 곧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의 부가 일부 집단과 개인의 부로 전이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시민의 삶이 파괴되거나 불안해졌다. 이는 동료시민의 일상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가 소유적 개인주의의 내파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을 통한 개인적 부의 확장이란 전망이 지난 20년간 거의 완전한 형태로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동료시민간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 동료시민과의 안정적인 결합을 해체시키는 용해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소유적 개인주의의 내파와 일상생활의 불안 증폭 과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소유와 이용 그리고 이를 위한 동료시민간의 상호조정(mutual coordination)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곧 과잉경쟁에 의한 삶의 파괴나 자기보존의 실패 문제를 넘어서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상호조정 질서를 아래로부터 만들어나가는 실천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문제라는 점에서 (1) 국가를 통한 재분배나 (2) 시장의 교환으로는 완전하게 충족될 수 없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료시민과의 상호조정 곧 동료시민간의 협력에 기반을 둔 합의 혹은 규칙의 제정 과정 없이는 일상생활의 필요와 비국가적이고 비시장적인 영역에서 실천을 제도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의 자기조절(self-regulation) 메커니즘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조정 필요성 증대와 자본주의의 재편과 발전양식의 진화 과정은 연결되어 있다. 자

본주의의 진화가 네트워크를 통합하면서 (1) 전통적인 시장의 메커니즘과는 구별되는 (2)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도와 활용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구조 자체가 네트워크와 융합되고 있다. 네트워크는 국가나 시장과는 다른 형태의 상호조정 메커니즘이다. 이런 요소가 실제 동료시민의 상호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공동자원 운동은 바로 이런 동료시민간의 상호조정 필요성과 이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상호조정의 질서를 그 부상의 핵심 배경으로 한다. 이 상호조정의 질서의 핵심은 소유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과잉경쟁 혹은 소유를 통한 각 개인의 자유 확장이란 문제를 공동의 상호조정 합의와 규칙/질서 안에 다시 묶어두는 것이다. 곧 개인의 자원이 아닌 '공동'의 자원으로 만들어, (1) 각 개인의 소유와 선택을 제한하거나 (2) 한 개인의 소유로 인해 나타나는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넘어서기 위해 소유와 이용의 분리를 공동의 규칙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나타났다. 이런 제도화 과정이 일차적으로 나타난 운동은 대안소유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종합원 소유기업, 종업원 경영참여, 지역공동체제도, 코하우징(co-housing)과 같은 운동들이었다.

- 이 부분에서 상속 문제는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상속 문제는 고령화, 인구의 변동(한국의 인구학적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의 세대간 부의 전이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농지와 같이 개인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전체사회의 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대상들의 경우, 그 소유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농지로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 이와 같은 문제의 상호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예) 제주도 가시리 목장조합 : 총유의 방식으로 접근

이런 새로운 동료시민간 상호조정의 질서의 부상 과정에 전지구적 공동자원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노출되었다. 전지구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은 현재 2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의 운동은 공동의 자원으로 지속되어오던 자원을 방어하는 운동의 성격이 강했다면 2단계의 운동은 보다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공동의 자원을 창출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자원의 개념을 전체사회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데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동자원 패러다임(commoning paradigm)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였고 특히 구체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던 정책전문가들에게 영감과 새로운 전망을 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자원 운동은 바로 이러한 2단계 공동자원 패러다임의 확산 과정에 노출되어 나타난 '후발' 공동자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발 운동의 특성상 1) 기존의 실천을 공동자원 패러다임 하에서 재해석하고 있으며 2) 동시에 공동자원 패러다임이 약속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 해결 능력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이 운동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다.

3. 질문2: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구조 혹은 그 특성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동기구조, 운동구조, 프레임이나 전략 혹은 다른 운동과의 관계나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 내재된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까? 이 질문은 (1)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과 한국 공동자원 운동이 공유하는 특성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2)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특이성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공동자원 운동이 일본이나 대만, 중국 혹은 아시아의 공동자원 운동과 갖는 공통성이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은 공동자원 운동 연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1) 공공성과 분리

Ugo Matti가 이탈리아 공동자원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탈리아 공동자원 운동은 구체적인 ‘물’이라는 공동자원을 방어하기 위한 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자원인 물의 이용이 민영화에 의해 위협받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대규모 운동이 출현하였다. 공동자원은 이 과정에서 물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의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매개였다. 공공자원의 민영화에 대항하여 공공자원의 공동자원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선 공동자원화(commonization)를 규정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발생했다.

한국에서 공공자원의 민영화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주도담론은 ‘공공(公共)성’이었다. 공공성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공공성 투쟁을 주도한 운동 부문이 의료, 교육, 언론 등 전체사회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들 혹은 공공부문(적) 속성을 띤 부문이란 점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공공성 담론이나 이에 근거를 둔 전략이 전체사회를 포괄하는 전략이 아니라 일부 공공부문만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공공성 전략은 공공부문 내에서 출발했지만, 그 부문의 경계를 넘어 전체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징후를 보였다. 평가는 보다 치밀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만, 이런 공공성 전략은 2010년을 경유하면서 일정정도 쇠퇴하거나 혹은 관성화 혹은 일정한 정체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2011년 ‘보편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복지국가연석회의의 수립은 2000년대의 공공성 패러다임이 2010년대에 접어들어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복지국가연석회의로의 진화, 그리고 “연석회의 출범 이후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이 창립해서 복지국가운동의 한 흐름을 형성”하는 계기들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운동의 2010년대 주도 패러다임은 분명 “보편적 복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주요 전략은 복지국가동맹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중심에 보편적 복지국가 혹은 보편적 복지라는 전체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운동이 존재하였다면, 그 주변엔 ‘공동성’을 주창하거나 혹은 이를 구현하려는 일상생활세계의 운동들이 존재하였다. 다수는 공동체운동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시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서 도시의 새로운 조건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었다. 도시는 공동체 없는 사회의 대표모델에서, 도시 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공동체 혹은 대안적인 유형의 공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다시 파악되었다. 핵심은 국가조절(state-regulation)을 통해 동료시민의 필요를 보장하고자 하였던 공공성 담론과 달리 일상생활 안에서 동료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필요를 충족시켜나가는 대안적인 자기조절 메커니즘이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공성과 공동성의 이런 분리는 (1) 전체사회대 공동체 (2) 사회화(socialization)대 공동체화(communalization)라는 대립적인 도식으로 나타났다. 이런 대립으로 인해 공동자원이 공공성과 접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된 채, 공동체-공동자원(community-commons)의 차원이나 개방-공통자원(Open-access commons)의 두 차원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것이 현재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 1) 사회국가의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국

가발전의 단계때문이기도 하고 2) 또 다른 차원에선 전체사회와 공동체를 분리시켜 사유하고 실천해온 한국 사회운동의 맥락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공공자원의 민영화에 맞선 대안운동과 공동자원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나타난 이탈리아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분명한 차이를 지니는 지점이다. 또한 향후 공동자원 운동이 어떤 특성을 보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 대안소유 혹은 소유의 대안

공동자원 운동은 그 자체로 (1) 소유에 대한 공동성의 통제 (2) 혹은 공동의 소유 (3) 소유를 대체하는 공동의 관계 형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곧 기존 한국에서 절대성을 부여받았던 '사적소유'의 신화와는 다른 방향에서 소유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 사적소유의 통제 : 각 개인의 소유권 행사로 인해 공동의 자원이 파괴되거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유(總有)와 같은 제도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유의 권리다발 중 일부를 개인에게서 박탈하는 이런 제도들은 공동의 부 유지와 존속이라는 변화의 서사 아래 진행되고 있다.
- 공동의 소유 : 시민자산화 운동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추출적 소유' 구조에 내재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료시민의 협력으로 직접 토지나 건물 등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유의 성격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소유가 타자를 분리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타자와 결합하는 새로운 능력을 가진 양식으로 재발견되고, 그 운영 방식과 제도화의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 소유와 이용의 분리 혹은 소유를 대체하는 공동의 관계 : 소유와 이용의 분리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경향 중 하나이다. 지식생산 과정에 완전하게 나타나는 이런 경향은 물질 자원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공구나 책, 자동차를 공동의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집적하거나 혹은 동료간에 합의하고, 이를 동료시민들이 공동의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소유와 이용의 분리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메커니즘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주체: 동료시민(peer citizen)의 부상

공동자원 운동에 참여하는 혹은 공동자원 운동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다수의 주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들이 생산자(producer)나 제작자(maker)라는 점이다. 오픈소프트웨어나 오픈하드웨어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오픈액세스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의 다수는 그 자원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들이다. 농지공유운동은 농민들의 운동이며, 이들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동료시민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메이커들은 공구도서관을 만들고, 자신들의 랩을 공동의 자원으로 활용한다.

중요한 점은 공동자원 운동 안에서 타자가 나의 '동료'(peer)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동료시민(peer citizen)이다. 이때의 동료시민은 'Fellow citizen'과는 다른 의미이다. 'Fellow citizen'이 시민간의 동등한 상호관계를 호명하는 것이라면, 'peer citizen'은 그 동등성에 생산자로서의 위치를 더한다. 이는 'fellow citizen'이 종속노동을 하는 동료시민에게도 붙여질 수 있는 이름이란 점을 떠올리면, 그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

동료생산(peer production)의 양식은 공동자원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의 양식일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동료생산의 양식은 공동자원 운동 안에 내재된 하나의 이상이자 이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다. 곧 자유로운 협력과 그 협력에 기초한 전체의 부를 생산하는 어떤 양식에 대한 열망이 공동자원 운동에 내재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공동자원 운동이 일종의 ‘DIY’ 윤리를 내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자원 운동이 일종의 ‘DIY’ 윤리를 내포한다고 할 때, 이는 한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DIY 문화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오픈액세스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혹은 보다 넓은 의미의 지식을 다루는 공동자원 운동은 직접적으로 DIY 윤리와 연결된다. 이는 지식생산에 존재했던 위계와 경계가 해체되는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특징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단지 디지털커먼즈(Digital Commons)/지식의 영역에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프로슈머(prosumer) 현상 자체가 공동자원 운동의 배후를 이룬다고 말할 수도 있다. 공동자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융합(hybrid)을 지향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DIY를 넘어 DIT(Do it together)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다. DIY 운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제작운동으로 고찰해야 하지만, DIY 운동을 잉태한 문화적 조건이 동일하게 공동자원 운동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나에겐 매우 흥미롭다.

4) 공적 지원 혹은 국가/정부와의 믹스(mix)

한국 공동자원 운동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공동의 자원 구축 과정에서 국가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운동들이 많다는 점이다. 제주의 공동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마을들은 국가와 제주도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차원과 융합되어 있다.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동료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동의 자원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수준이 높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공동체의 확장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의 규모 확장이 이루어져 왔다. 이 지원제도가 실제 공동체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는 현재 중요한 논쟁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체 공동자원의 형성과정이 국가/정부의 제도와 결합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보인다.

이는 신자유주의 퇴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동자원 운동의 특성이란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재정 확대를 반대하는데 이로 인해 국가의 공적 서비스를 확장하기 어렵다. (2)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결과로 전체 동료시민의 일상생활안전이 불안정해지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한다. (3) 따라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요구는 통합하면서도 그 역할로부터 국가의 후퇴를 정당화할 방안이 필요한데, 공동체의 강화는 그 핵심전략 중 하나이다. 동료시민이 직접 자신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상생활 제도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비용은 줄이고 동료시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연속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보완적인 속성을 함께 띠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측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자원 운동은 공동체의 자원을 강화하고, 이는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동료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5) 공동자원 운동에 나타나는 규칙성과 제도화의 차원들

공동자원 운동의 주창자들은 공동자원의 방어와 확장을 위해 (1) 공동자원의 장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곧 공동자원과 밝은 미래 혹은 공동자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그 핵심을 이룬다.⁵⁹⁾ 특히 “나”(me)로부터 “우

리”(we)로 나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주창에는 공동자원 운영에 내재된 난점과 어려움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많은 공동자원 연구자들은 공동자원생산자들이 자원을 관리하는 지식을 배워야한다고 말한다. 일상의 지식을 제도화하는 과정은 경험적이고 암묵적인 지식을 사회화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동자원 운동이 매우 중요한 지식의 정치학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자원 운동은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재)생산을 위한 다양한 규칙들을 발전시킨다. 이 규칙들은 (1) 협동을 유인하고 (2) 무임승차를 좌절시키는 조치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 혹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자원들과 관계된 문제들에 응용될 여지가 많다. “기후변동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나 쓰나미에 의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안지역의 계획 재검토에서부터 공원과 녹지대를 통한 생활편의 제공, 소방서와 파출소의 설치 혹은 천재지변에 대비한 피난루트 창설에 이르기까지”(맥킨, 2016: 160)

곧 우리가 직면한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협력을 구성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공동자원 운동은 바로 이런 협력의 제도화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서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들의 영역으로 고민을 확장시킬 수 있다. 동료시민간의 상호조정 메커니즘 혹은 협력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물질대사로 생활이 영위되는데, 거기서는 막대한 외부성이 만들어진다. 이 사태가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 건설에서, 특히 도시 지역의 생활양식에서 상호조정을 도모해가는 것밖에 없다.”(맥킨, 2016: 160)

전통 자연 공동자원의 관리에선 분명한 제도화의 규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분적으로 조합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어, 조합을 통해 관리된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자원(new commons)의 경우, 과거와 같은 조합 방식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동자원의 경우, 그 자체의 고유한 제도화의 규칙을 찾고 있지 못한 면도 존재한다. 이는 공동자원(commons)이 하나의 구호나 지향을 담은 변화의 서사로 존재할 뿐, 구체적인 실현 양식을 고안해내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전통적인 공동자원 재생산과 관리의 양식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현대 공동자원 운동이 발견해낸 제도화의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이 점에서 공동자원의 미래에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6) 변화의 서사(narratives of change)

공동자원 운동이 단지 공동자원 패러다임에만 의존해서 발생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자원운동은 사회운동부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변화의 담론 혹은 변화의 서사(narratives of change)와 융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자원 운동에 접근할 때, 공동자원 운동뿐만 아니라 공동자원 운동과 결합한 변화의 담론이나 변화의 서사를 동시에 고찰할 때, 운동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위기 담론(Discourse of Crisis) : 공동자원 운동이 다양한 형태의 위기 담론을 전제하고 있다

59) 다음과 같은 Wall Jaysper의 글을 보라.

URL: <https://www.thenation.com/article/struggle-commons/>

는 점은 분명하다. 기후변화와 산업변화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 등은 바로 공동자원의 배후에서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담론이다.

-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 도시 부문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동자원 운동은 도시에 대한 권리 담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그 영향을 받은 운동들이 많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를 동료시민들의 집합적 권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요구하는데, 이런 요소가 공동자원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이는 국내에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이 불러오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아직 도시 그 자체를 하나의 공동자원(City as commons)으로 바라보는 관점까지 운동이 나아갔다고는 볼 수 없지만, 도시로부터 배제되거나 혹은 추방 당하지 않을 권리 혹은 도시 안에서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들이 도시의 공간과 그 실천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동자원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 지속가능사회
- 새로운 보장(new assurance)

7) 공동자원의 정치와 페미니즘

일부 외국 페미니즘(feminism) 진영은 공동자원을 둘러싼 권력, 지식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통찰뿐만 아니라 공동자원의 (재)생산과 관련된 실천의 조직화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해오고 있다.⁶⁰⁾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전체사회의 재생산에 필수적인 자원들과 관계들이 혹은 일상생활의 재생산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실천,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들이 여성의 실천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때, 이는 자연스럽다.

한국의 주요한 장소 기반 운동들은 여성들의 공동자원 방어와 재생산을 위한 투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다수의 자연 공동자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자원의 (재)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다수는 여성들이다. 물리적인 자원을 넘어 돌봄과 육아, 공동교육 등 실비아 페데리치가 “재생산의 공동체화”(communalizing reproduction)라고 불렀던 활동들도 확산되고 있다.

공동자원은 (1) 공동의 자원 (재)생산 과정과 분리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2) 그 자원의 생산 메커니즘 안으로 우리를 통합시키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이런 관점이 ‘분리’에 기초해 이루어졌던 남성지배와 자본축적, 자연파괴와 상품화의 과정 일반을 비판하는 개념으로 페미니즘이 공동자원 개념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특히 이는 노동 개념의 재규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8) 국가의 이중성 : 파괴와 건설

공동자원과 국가의 관계는 이중적이다. 전통적인 자연 공동자원의 경우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의 개발 전략에 따라 관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는 새로운 공동자원(new commons)의 창출 과정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를 국가가 후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특히 마을만들기나 오픈데이터, 오픈에듀케이션과 같은 오픈액세스 과정에 국가의 지원이 많다. 이런 국가의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60) URL: <http://journals.kent.ac.uk/index.php/feministsatlaw/article/view/33/97>

한쪽으로는 개발국가의 차원을 보이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공동자원운동의 협력자나 혹은 공동자원운동의 조력자로 또 다른 측면에선 공동자원운동을 국가 내로 포섭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는 국가가 다양한 전략들이 교차하는 헤게모니의 접합체임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국가의 변형 과정이 공동자원 혹은 공동자원 운동과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9) 시장과의 관계

다수의 공동자원은 현재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시장 안으로 완전하게 통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장으로부터 수익을 얻어 공동자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통 자연공동자원의 경우 생태관광 등과 같은 관광/레저 자원으로 바뀌어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 히로카와 유지의 경우 이를 “글로벌 시장경제의 침투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시장에서 얻게 되자 풀의 자원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가치가 하락한 풀은 생활필수품의 지위를 상실했고 방치되어 황폐화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대대로 길러온 풀로써 양질의 초지경관과 문화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다(유지, 2016: 95) 관리비용이나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과 연결한다.

10) 현대적 생존권의 보장

4. 질문3: 한국 공동자원 운동의 기여 혹은 공동자원 운동과 사회변화

1) 협력주의의 부상

신자유주의가 발생시킨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되돌리는 자기경영의 패러다임을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자기경영의 패러다임은 한국에서 최소한 150년간 지속되어온 사회진화론과 국가경쟁 그리고 힘을 통한 자유의 추구에 내재된 경쟁의 내면화로 인해 큰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자본의 본령이 경쟁에 있다는 측면에서 경쟁이 시민사회의 원리로 수용된 것인데, 이는 당연히 시민사회를 구성해야 할 시민적 우정이나 결합의 원리와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해체 과정에 대항하여 새로운 결합 원리를 추구하려는 다양한 운동들이 발생했다.

현대 좌우의 핵심 경계는 평등과 불평등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도 경쟁과 협력의 대립 관계를 보완하는 관계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선 그 내용 중 일부가 기존 한국 사회운동 내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공유, 협력, 인정]의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디지털화가 이에 대한 반격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예시정치(prefigurative politics)

공동자원 운동은 예시정치의 속성을 보여준다. 국가에 청원하는 요구의 정치보다는 자신의 필

요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필요를 충족하고자 한다. 곧 창안의 정치(politics of creation) 특성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 현재 질서 안에서 다른 새로운 질서 혹은 새로운 질서를 넘어선 다음 질서(next order)를 보여주는 운동 사례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공동자원 운동을 포스트-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운동들 안에서 나타난다.

3) 공동의 자원에 대한 권리와 제도화의 요구 : 새로운 보장체제와 민주주의

공동자원 운동은 우리에게 특정 자원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한다. 이때 제도화는 법적 제도화를 포함하지만, 일상의 실천의 제도화란 문제를 포함한다. 곧 동료시민간의 상호조정과 상호보장의 제도화란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다수의 문제가 일상생활의 제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자원은 자원과 개인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한다. 공동의 자원이란 규정은 해당 자원이 자기 자신과 분리된 자원이 아닌 자신이 접속할 수 있고,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원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한다. 단지 내가 이용하는 자원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를 배제하는 자기면제의 메커니즘이나 무임승차자(free rider)의 문제가 공동자원에선 매우 중요하다. 또한 특정 자원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구조의 효과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자원과 나의 관계를 공동자원이란 개념을 통해 접근하면서 그 자원에 대한 접속과 의사결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공공정책의 개혁 : 공동의 부(common wealth)라는 전망

공동자원 운동은 국가에 의한 재분배, 시장에 의한 교환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또 다른 부의 창출 수단이 있으며, 그러한 부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동료시민의 협력에 존재한다는 믿음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또한 우리의 번영이 의존하고 있는 공동자원이 너무나도 쉽게 사유재산으로 변형되어 시장에서 팔리고 있거나 국가의 개발 전략으로 인해 파괴되고 있다는 자각과도 연결되어 있다. 공동자원 운동은 공동의 부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거나 혹은 창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공공정책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자원 패러다임이 거리의 운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동자원 운동의 일부는 대안적인 제도의 창출을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제도화의 모색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특히 연구자나 이론가들의 공동자원 운동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자원 운동이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전지구적 운동으로 부상한 데엔 이와 같은 공동자원에 대한 공통의 지식(common knowledge) 구성뿐만 아니라, 공동자원을 구체적인 대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동자원 연구 운동의 기여도 존재한다고 보인다.

공동자원 기반 의제의 층위를 나누어본다면, (1) 정책 발굴을 돕는 패러다임의 차원 (2) 구체적인 정책 의제의 차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정책 발굴을 돕는 패러다임의 차원에서 의제는 “도시 공동자원”(Urban Commons)과 같이 도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도록 돕는 동시에 대안제도의 창출을 위한 디자인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의제이다. 구체적인 정책 의제는 그 보다 더 구체적이고 층위에서 제도의 창출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가. 대안 패러다임

- (1) 시민자산화
- (2) 도시공동자원(Urban commons)
- (3) 크리에이티브커먼즈(Creative Commons)
- (4) 사이언스커먼즈(Science Commons)

:사이언스커먼즈는 CCL를 과학과 학술영역에 접목시킨 개념이다. (1) 오픈액세스(Open access) (2) 원-클릭 액세스(One-click access) (3) 오픈 소스(open source) 지식 관리 등 세 가지이다. 오픈액세스는 과학데이터베이스들을 공유한다. 방법은 오픈액세스 철학에 동참하는 250개 이상의 학술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일반 학술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저자가 사이언스 커먼즈의 도움으로 웹에 올리는 것이다. 원-클릭 액세스는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들을 손쉽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상거래시스템이 목적이다. 오픈소스 관리는 흩어져 있는 정보 소스 들을 체계화하고 종합하는 오픈소스지식관리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 구체적인 대안제도

- (1) 농지공유제도 : 농지공유제도는 농지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된 제도이다. 개발과 농민 감소 등으로 농지는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감소될 전망이다. 농지공유제도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 주로 공동체토지신탁(CTL: Community Land Trust) 전략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은 특정한 시민연합이 갖고, 농지를 시민연합이나 지역의 필요를 위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제도이다.
- (2) 기본소득이나 시민배당과 같은 대안소득체제 혹은 소득의 새로운 보장체제

5) 자원에 대한 통제와 획득의 대안 경로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노동과 시민의 분리에 기초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자원 운동의 핵심 특징은 바로 그런 분할에 도전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바로 이 부분이 외국의 많은 급진주의 좌파들이 공동자원 운동에 주목하는 이유일 지도 모른다. 노동과 시민의 분리는 (1) 기본적으로 생산수단과 분리된 노동자로서 (2) 동시에 노동에 대한 통제와 분리된 시민으로 존재하는 구조를 말한다. 자유민주주의가 노동과 시민의 결합을 허용하는 틀은 노동결사를 통한 노동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통제의 가능성일 뿐, 시민에게 자체의 생산수단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적인 자원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대안경제 혹은 다른 경제를 추구하는 많은 이들 특히 경제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통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두 가지 였다. 하나는 (1) 통제를 획득하는 과정(process gaining control) (2) 통제할 수 있는 자원(the resources over which people take control).⁶¹⁾ 이 부분에 있어 현재 공동자원 운동은 많은 영감을 준다. 공동자원 운

61) <http://neweconomics.org/2017/05/building-new-social-commons/>

동의 기본 특징은 공동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1)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의 자원 구성이나 (2) 국가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자원 구성도 존재할 수 있지만 (3)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자원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곧 모두에게 필요한 자원이기에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국가의 변형을 통한 시장의 이중규제

외국 공동자원 주창자들은 공동자원이 전통적인 국가와 시장의 이분법 외부에서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제3의 방법을 제안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 속의 공동자원은 그런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국가 및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존속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지닌다. 한 예로, 농지공유운동의 경우, 헌법이나 농지법에 들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곧 농민이나 농업법인을 제외하면 농지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직면한다(최용재, 2016: 4).⁶²⁾

공동자원 사회운동이 동료시민의 협력에 기초를 둔 비국가적이고 비시장적인 공동의 자원 구성에 일차적인 목적을 둘 때,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공동의 자원 구성 자체가 국가와 시장 안에서 그에 대항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곧 국가의 외부라는 표현은 재분배와는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의 구성과 분배를 말하는 것일 뿐, 실제 그 사회적 실천의 동원 과정은 국가의 법제도 안에서 그 규정과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동일하게 시장과의 관계도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1) 시장의 외부는 시장의 내부 변형 문제를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시장의 외부라는 표현과 전략은 실제 공동의 자원이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존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지 못한 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 공동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목장이나 마을어장과 같은 경우, 생태관광이나 레저 등의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을목장 그 자체를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마을목장과 관광시장을 연결하지 않고서는 마을목장 그 자체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어떤 국가인가? 어떤 시장인가? 의 문제가 공동자원 운동과 언제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1) 국내 공동자원 운동의 경우 국가와 시장의 문제의 변형에 대한 문제의식은 매우 약하거나 (2) 분명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한 공동자원 운동이 국가와 시장 내부에서 그에 대항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공동자원 운동은 (1) 국가의 민주적 변형과 (2) 시장의 사회화라고 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곧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프로젝트의 수준을 넘어 전체사회의 제도 전환을 위한 열망이나 동력을 그로부터 도출해낼 수도 있다.

7) 변화하는 조건에 대한 예측과 개입의 준비

공동자원 운동은 공동자원과 이를 둘러싼 사회생태시스템이 공동자원을 일종의 ‘허구적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운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 움직인다. 따라서 허구적 상품화의 맥락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축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축을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사회운동부문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칼 플라니의 허구적 상품 개념에 기초를 두는데, 칼 플라니는 토지와 노동, 화폐를 그 허구적 상품의 예로 들었었다.

62) 최용재, 2016, “국내 농지공유운동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의 사유를 시도할 수 있다. 공동자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운동은 1단계 노동, 2단계 토지를 포함하는 자연, 3단계 화폐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젠더와 지식의 문제를 포함하는 도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노동 → [자연 → 토지 → 여성 → 지식] → 화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1단계 노동에서, 2단계 자연을 넘어 3단계인 토지, 여성, 지식의 혼합 국면으로 진입 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중에서 현재 사회운동의 전망 속에 아직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지 않은 지식과 화폐가 향후 사회운동의 중심 갈등 축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가. 지식 공동자원화 운동

한국 공동자원운동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공동자원 운동에서도 넓은 의미의 '지식' 부문은 공동자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 중 하나이다.

• 데이터 공동자원(data commons) : 지식 공동자원화 운동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차원이 바로 데이터 공동자원이다. 전체 동료시민의 일상생활과 노동생활 안에서 형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알고리즘으로 전환되어 국가의 통제나 자본의 생산과 서비스 메커니즘 안에 통합되어 나간다. 이 때문에 생산자인 우리 자신이 데이터를 다시 우리에게 되돌리기 위한 '데이터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data)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엔 물론 오픈소스(open source)나 오픈 데이터(open data)와 같은 문제가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이는 현재 예측되고 있는 급속한 산업변화 특히 알고리즘 기반 사회(algorithm based society)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동료시민의 생활안전이나 노동 문제에 대응할 때 특히 그렇다.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에 의해 우리가 소외되거나 축출되는 결과와 직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나. 다음 단계는 화폐

모든 유형의 공동자원뿐만 아니라 공동자원을 포함한 모든 운동과 이념, 이론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화폐와 금융의 문제이다. 단지 공동자원 운동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필요성때문만이 아니라, 화폐와 금융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가의 여부가 다음 경제(next system)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화폐의 공동자원화(commonization)를 향한 운동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사회운동 부문이 추진해온 이 분야 운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뿌뿌리 운동은 다수가 공동체화폐운동으로, 공공운동은 화폐와 금융부문의 감시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공동자원운동은 화폐와 금융이 전체 동료시민의 공동자원으로 작동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8) 도시 문제의 해결

5. 질문4 : 사회운동을 위한 전략적 시각의 가능성

1) 전략적 시각으로서의 공동자원

외국 이론가와 활동가들 사이에서 공동자원(the commons)을 사회운동의 전략적 시각으로 상
승시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 사회운동은 체계의 복잡성에 대항하는 과정
에서 발생한 다원적 분화를 그 핵심 특징으로 한다. 각 사회운동마다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
에 대한 분석과 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각 운동을 연결하여 운
동의 연대와 동맹을 위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와 직면하곤 했다. 공동자원을
사회운동의 전략적 시각으로 상승시키려는 흐름은 바로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공동자원이 “사회
운동의 운동”(movement of social movements) 혹은 “운동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 운동의 다원화는 기
본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대상 즉 사회구조의 복잡성 증가로 인한 차원도 존재하지만, 동시에 각
운동이 의존하고 있는 이론과 관점 혹은 해석체계의 차이에도 기인한다. 동일한 대상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그 대상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해석의 차이가 운동의 분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구체적인 실천 영역에선 사안별 정책별 연대 및 협력의 강화 노력이 존재하지만, 운
동의 다원성이 전체 운동역량의 강화로 귀결되기보다는 파편적인 운동역량의 손실로 연결되는 경
우도 많다. 공동자원을 운동의 운동으로 상승시키고자 하는 입장은 바로 이런 인식 하에, 각 운
동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운동의 종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공동자원에 부여하
고 있다.

공동자원의 딜레마(common dilemma)에 비유하여 사회운동의 이러한 딜레마를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을 지도 모른다. 각 사회운동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
할 것인가? 전통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조
직의 건설이었다. 그 핵심은 물론 정치정당이였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이해관계의 차이와 불
일치를 인정하고, 단기적인 이해관계의 수평적인 연대를 구성하는 것이였다. 이는 의제 별 연합/
동맹 전략(agenda based alliance)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의제 별 연합/동맹보다는 보
다 지속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협력을 가능케 하면서도 정치정당과 같은 단일 정치 조직보다는 유
연하고 포괄적인 제3의 동맹전략은 가능할까? 공동자원 사회운동 이론가와 실천가들의 일부는
이 질문에 대해 “공동자원의 확장”(expansion of the commons)이 바로 그와 같은 질문에 답
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공동자원 운동의
이념적 스펙트럼의 다원성 때문이다. 공동자원 접근(common approach)은 자유주의부터 공화
주의, 사회주의, 혹은 코뮌주의 그리고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념 속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각 이념마다 공동자원을 다루는 배치의 양식엔 차이가 있다. 그에 따라 공동자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날 수 있다.⁶³⁾ 그럼에도 현실 사회운동을 추동하는 이념체계와 이론
이 공동자원을 그 안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경향성이 공
동자원의 확장을 공통의 전략으로 만들 수 있는 경험적 토대가 된다고 그들은 본다.

63) Von Benni Bärman, 2009, “The commons as a strategic perspective for social
movements”, Keimform.de
<http://keimform.de/2009/the-commons-as-a-strategic-perspective-for-social-movements/>
검색일 : 2018년 4월 12일

공동자원이 공동의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 또 다른 이유는 공동자원이 현대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포괄적인 적용 가능성을 갖는 개념이자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곧 한 부문 운동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원적인 운동 영역을 관통하는 공동의 해결책을 생산하는 공통 패러다임(common paradigm)으로 공동자원이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자원이 부문과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 이를 연결하면서, 문제를 수렴하는 프레임(a frame for the convergence)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Silke Helfrich, 2010). 이는 또한 여기엔 공동자원의 내적 구조 자체가 다원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다양한 집단과 운동이 공존하면서도 하나의 전략적 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분석 또한 포함된다.

외국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운동의 공동전략 혹은 사회운동의 공동 패러다임으로서의 공동자원이란 구상은 (1) 그 자체로 얼마나 적합하며 (2) 우리의 현실과 대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동자원이 운동의 운동을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가능성을 지닌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자원 운동의 확산은 공동자원 시각(common perspective)의 확장 과정을 동반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공동자원의 하위 범주로 포섭하고 있다. 연결의 확장 과정은 이를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과 전략의 필요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공동자원은 분산되어 있던 운동들의 영역을 보다 심층의 차원에서 통합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동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한 공동자원을 위한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 for commons)을 구성하는데 공동자원 그 자체가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공동자원 그 자체보다는 협력을 위한 제도의 구축이란 문제에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곧 사회운동의 협력 하부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동자원 패러다임 자체의 전파와 확산만론 이런 효과가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 공동자원이 한국 사회운동의 보다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패러다임으로 기능하기엔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운동의 특성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동자원 거버넌스(common governance)의 구성은 (1)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자원의 공동 관리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2) 비국가 비시장 영역에서 운동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3) 그에 필요한 기반과 제도화의 문제가 보다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곧 다중심성을 종합할 수 있는 운동의 역량이 요구될 것은 분명하다.

2) 공동자원을 향한 투쟁 : 도시정치의 통합기표?

이제 공동자원 운동의 출현 단계인 한국 상황에서 공동자원 운동의 정치화 전망이나 경향을 독해해나가는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선 공동자원 운동과 정치 운동을 연결하려 고민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로 질문을 바꾸어 고민을 해본다.

그 교훈 중 하나는 도시정치와의 연계 가능성이다. 공동자원 운동은 무엇보다 도시정치운동과 연결되고 있다. 특히 도시자치주의운동(municipalist movement)과 공동자원 운동은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흐름은 2017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도시자치주의 정상회담인 'Fearless cities'(두려움 없는 도시들)이다.⁶⁴

도시정치 네트워크의 확장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전지구적 현상 중 하나이고, 갈수록 도시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은 너무 작고 국가는 너무 크며,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자원 운동은 도시를 공동자원(city as commons)으로 전환한다는 구상 하에 다양한 부문과 주체들의 운동의 운동으로 도시자치주의운동의 새로운 방식을 구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무엇보다 도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동맹 곧 전환동맹(transition alliance)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진주의 도시운동들, 혹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담아내고 있는 운동들은 공동자원을 매개로 한 동맹 형성에 대한 사유와 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승리의 유일한 동력이라고 할 수 없지만, [Barcelona en Comú (Barcelona in Common)]의 2015년 선거 승리는 많은 이들이 그 예로 제시하는 사례이다.⁶⁵⁾

공동자원을 위한 동맹(coalition for the commons)이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만약 제안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혹은 가능할까? 공동자원은 다층적이고 중첩된 거버넌스를 요구하며, 바로 이 때문에 그 방어와 확장을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집단과 개인들의 연합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공동자원을 위한 동맹은 기존 분할을 넘어 새로운 분할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자원을 다르게 구성해나가는 동맹 운동으로 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자원을 위한 동맹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자원 운동들이 포함된다. (1) 지식과 정보 공동자원 (2) 물리적 공동자원 (3) 사회적 공동자원 (4) 공동자원의 운동을 위한 공동자원. 이런 동맹의 구축은 (1) 공공성의 확장을 위한 복지국가동맹 (2) 혹은 시장화의 확장을 위한 시장국가동맹과는 구별되는 제3의 동맹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이런 동맹의 구축이 현재 한국 사회운동의 복잡한 분화를 포괄하면서 다음 30년을 둘러싼 중요한 갈등축으로서 부상할 수 있을까?

6. 토론의 발전을 기대하며 : 사회적 자유의 창안과 제도화

나는 현재 부상하고 있는 공동자원 운동이 (1) 개인적 자유가 아니라 (2) 주변동료 혹은 전체 사회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사회적 자유의 원형을 창출하는 운동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다. 왜곡된 소유체계에 대항하는 운동의 특성과 함께 공동성 안에서 다시 자유를 정의하는 특성이 공동자원 안에 존재한다.

(1) “근대적 소유권의 근본적 재고를 촉구하며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각”(92)⁶⁶⁾에서 접근하며 (2) 현대 소유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와는 구별되는 사회적 자유의 물적 토대로서 현대 공동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나 공동자원 운동의 부상 과정 안에 내재된 이런 사회적 자유의 원형은 그 자체로 미래를 예시할 뿐, 미래 그 자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과제는 이런 사회적 자유를 창안하는 대안적인 실천이 우리 도시 안에서 하나의 점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현실화시킬 힘을 갖는 제도화된 실천으로 구체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64) <https://www.opendemocracy.net/can-europe-make-it/kate-shea-baird/new-international-municipalist-movement-is-on-rise-from-small-vic>

65) <http://geo.coop/story/commons-based-coalition-wins-big-barcelona-election>

66) 히로카와 유지, 2016, “현대적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농촌의 도전: 사회학적 공유론과 국가법의 접점을 찾아서”, [현대공유론], 진인진

- 공동성과 소유 혹은 권리의 다발 : “지역주민 사이에서 공유되는 의식으로서 동질적/폐쇄적 지역사회가 와해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다. 지역 사회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유입될 경우 공동인식은 사회질서로서는 무척 유약할 수밖에 없다.”(93)

따라서 현대적인 맥락에서 공동성을 통해 소유를 제약하고, 동료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대안적인 관계성의 인식이 필요하다. 시민적 우정과 연대?

제주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한 기초 조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현장조사 중심으로

송정희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제주 신당의 공동자원화를 위한 기초조사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현장조사 중심으로

발제자 송정희

차례

1. 서론
2. 제주 지역 신당의 특징과 분류
3.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유형
4. 제주시 권역 신당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 조천읍 함덕리 중심으로
5. 결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제주의 신당은 제주인들에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며 성소임
- - 사라지고 있는 신당들이 많지만 보존 대책이 없음
- - 신당의 소유권 문제를 파악하여 신당이 사라져 가는 것에 문제 제기
- - 신당은 마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공간, 문화와 문화적 공간은 매우 중요한 공동자원.

(2)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내용

- - <제주신당조사 2008-제주시권>을 기본 자료로 삼음
- - 제주 신당 GPS를 활용하여 주소 추산 후 현장 조사

2. 제주지역 신당의 특징과 분류

- (1) 제주의 신은 그 신앙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뉨
- - 일반적으로 모든 제주도민이 믿는 신은 일반신
- (천지왕, 삼성신, 설문대 할망 등) - 특정한 장소가 없음
- - 마을 단위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은 **당신**
- (하로산또, 보름웃또, 백주또, 일뿔할망 등)
- - 특정한 장소가 있음 (本郷堂, 일뿔당, 산신당 등)
- - 특별한 집안에서 모시는 신은 조상신
- (양씨아미, 고전적, 광청할망 등) - 특정한 장소가 없음

- (2) 당곳의 종류
 - - 신과세제 : 본향당
 - - 영등곳 : 마을에서 특별히 정한 곳
 - - 마불림 : 본향당
 - - 시만국대제 : 본향당
 - 그 외의 당(일렛당, 처녀당, 남당 등)에서는 수시로 개별 기원을 드림



▲신을 청하는 제차인 초강제 진행 모습 사진=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소리

2018년 송당본향당 신과세제 (김윤수 심방)

제주도 민속문화재 등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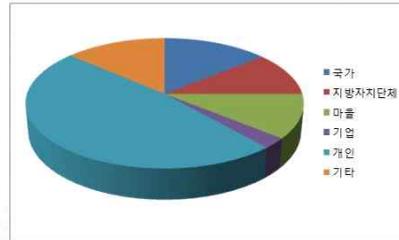
	지역	신당명	직능	소유권	등록 번호	비고
1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 웃손당 당오름 백주할망당	본향당	송당리 새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1호	신과세제 영등곳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2	제주시 회천동	회천동 본향 새미하로산당	본향당	동회천 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2호	신과세제 마불림제
3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본향 한거리 하로산당	본향당	와흘리 새마을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3호	신과세제 영등곳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4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 본향 올웨모르 하로산당	본향당	군위오제 경룡공파 친족회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4호	신과세제 영등곳 마불림제 신과세제
5	제주시 월평동	월평 본향 다리굿당	본향당	개인 (강교훈)	제주도 민속 문화재 제9-5호	신과세제 마불림제

* 제주 칠머리당 영등곳 : 유네스코 인류문명문화유산 등재(2009), 중요무형문화재 71호. (당곳은 아님)

3.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 유형

제주시 192개소 신당의 소유 유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기업, 개인으로 나타남

소유 유형	개소
국가	27
지방자치단체	21
마을	21
기업	5
개인	92
기타(해변, 오류)	26



- 제주시 신당의 부동산 소유권 유형 분석

1) 국가 소유 현황

총 27개소 중 11개소의 지목이 도로로 나타남. 그 외는 잡종지, 임야, 구거, 유지, 하천 등

2)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제주군)

총 21개소이고, 지목의 유형은 임야, 도로, 잡종지, 종교용지, 공원, 전, 수도용지 등

3) 마을

총 21개소이고, 10개소의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고 그 외는 전, 목장용지, 체육용지, 대지, 잡종지 등

4)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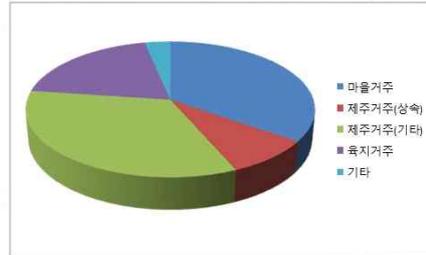
총 5개소이고, 함덕리 소지모르 일렛당의 경우는 호텔 신축으로 멸실됨. 지목은 임야, 대지, 유원지, 잡종지 등

5) 개인

제주시 신당 192개소 중 92개소이고, 48개소 지목이 전(田).

그 외에 지목 유형은 임야, 과수원, 대지, 목장, 도로, 잡종지, 건물, 종교용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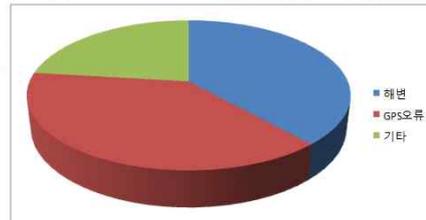
개인 소유 유형		개소
마을 거주		32
제주거주	상속	8
	기타	31
제주 이외(육지)		18
기타		3
총		92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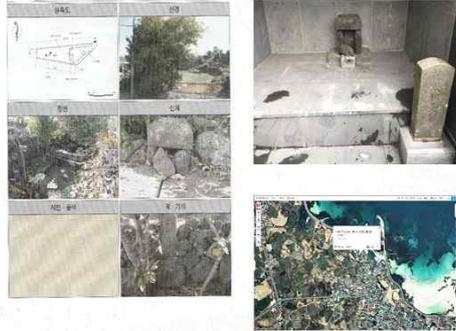
해변(주소가 없는 경우), GPS오류, 기타

기타 유형	개소
해변	10
GPS오류	10
기타(등기없음 외)	6
총	26



4. 현장조사 및 결과 분석 (조천읍 함덕리)

- (1) 함덕리본향 알카름 서물당
- 주소 - 함덕리 3155-2
 - 소유권 - 복제주군
 - 지목 - 도로
 - 신명 - 급서황하늘, 알카름 서물한집, 죽도남빌레 일뤼한집, 뒷당동산 일뤼한집, 알질우의 요드레한집, 함덕역개(신흥) 열식거리 삼천병매
 - 제일 - 서물날(11일, 26일)
 - 분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김영철 심방
 - 관리 - 함덕리 문화재지킴이
 - 당굿 - 없음
 - 특이사항 - 주변 빌라 신축으로 본래 위치에서 보수되었다.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2) 함덕리 나니 루 일뤼당
- 주소 - 함덕리 1698번지
 - 소유권 - 제주특별자치도
 - 지목 - 임야
 - 신명 - 나니 루 고씨할망
 - 제일 - 택일
 - 분풀이 - 있음
 - 매회심방 - 없음
 - 관리 - 함덕리 문화재지킴이
 - 당굿 - 없음



- (3) 함덕리 한양할망당
- 주소 - 함덕리 2547-1
 - 소유권 - 등기없음
 - 신명 - 한양할마님
 - 제일 - 택일
 - 분풀이 - 없음
 - 매회심방 - 없음
 - 관리 - 집안 사람들



(4) 함덕리 소지모르 일뤼당

- 주소 - 함덕리 3061
- 소유권 - 기업
- 신명 소지모르 일뤼 할망
- 멸실



(5) 기타

함덕리 머체일뤼당, 서모오름 산신당, 문두낭당 등은 개인 소유로 현재 명확한 위치 찾기 힘든 상황

(6)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신당 관리현황

- 신당은 소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다. 함덕리인 경우 개인소유로 있던 신당들이 멸실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소지모루일뤼당이 기업소유로 멸실되었다.
- 함덕리 분향당에서는 이전 더 이상 굿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함덕리 영등굿을 하기때문에 분향당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
- 함덕리 5구로 구성되어있고, 1구와 4구는 포제를 하고, 어촌계는 영등굿을 하고, 리사무소에서는 일출제(유교식)와 서우제당에서 무사기원(해수욕장 개장 때)을 위해 제를 지낸다.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우제당이다. 서우제당은 원래 멸치잡이를 위한 굿을 하는 신당이였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멸치도 잡히지 않고, 더 이상 멸치잡이 어업을 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멸치풍어 굿은 사라지고 신당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용도로 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을 하는 것이다. 물론 과거 굿 형식으로 제를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식으로 일년에 한 번 해수욕장 개장을 할 때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제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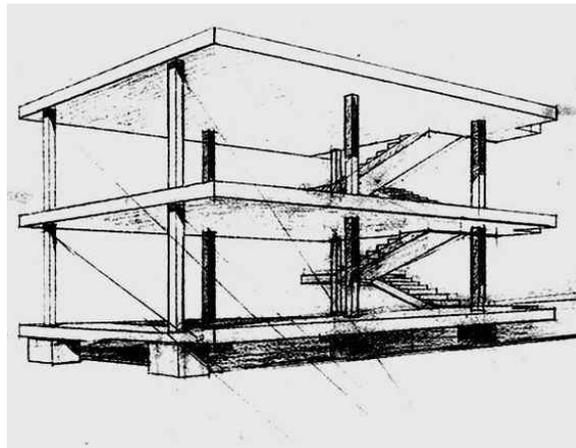
5. 결론

- 제주에는 다양한 신당들이 존재한다. 신당은 의례의 장으로 마을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활용
- 이러한 공간이 사유화를 통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개발바람)
- 현장조사를 통해 신당 보존 및 관리 주체는 크게 마을, 어촌계, 심방으로 볼 수 있다.
- 신당의 관리의 주체를 마을이 담당하고 그 소유 역시 마을인 경우가 신당 관리, 운영, 보전의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보인다.
- 제주 신당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신당의 토지를 마을의 총유로 만들어 소유와 관리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마을의 신당을 가장 효율적인 보존 방법일 것이다.

건축과 커먼즈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건축의 대표적 거장인 르 꼬르뷔제(Le Corbusier, 1887~1965)는 ‘도미노 프레임’과 ‘건축의 5원칙(필로티/자유로운 입면/자유로운 평면/수평띠창/옥상정원)’으로 근대건축의 기반을 만들었다. 르 꼬르뷔제의 이론은 많은 경우 형태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도미노 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된 구조를 고안해 기존 벽식구조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수직 확장이 가능한 대량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낸 것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14년 발발한 1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도시와 주택의 신속한 재건과 연계된 고안이었다. 20세기 초 건축은 ‘더 많은 사람이 더 효율적인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고안하는 것으로 사회적역할을 중요한 가치에 두고 있었다.



르 꼬르뷔제의 ‘도미노 프레임’

도미노(Domino)는 집을 뜻하는 라틴어 “Domus”와 혁신을 뜻하는 “Innovation”을 결합한 단어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확장과 강화됨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유권과 처분권 등의 사적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했고, 이에 따라 토지와 함께 건물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사용 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전국각지에서 내몰림 현상이 심각하고, 주거는 전국이 대기업에서 개발한 아파트로 뒤덮이고 있다. 현재 다세대/다가구/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 인구의 95%가 거주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브랜드 아키텍처(Brand Architecture), 브랜드 아키텍트(Brand Architect)라는 말이 통용되며, 도시적 맥락이나 삶과 무관하게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건축이 활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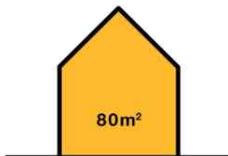
아파트(Apartment)

아파트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의 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꼬르뷔제가 설계한 아파트 '유니떼 다비다시옹'은 탄광노동자를 위한 주거였고, 커뮤니티 활성을 위한 홀, 상가, 옥상정원 등의 공공공간이 주요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산업화로 도시에 주택이 부족할 때 대량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한 주거형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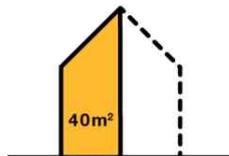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즈커상'의 수상자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건축가에게 주어지고 있다. 크게는 '도시권'을 확보하는 방향이라 판단된다.



값이 싼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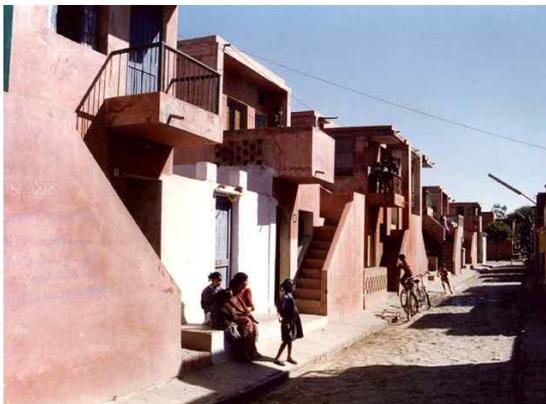


값이 비싼 부지



알레한드로 알라베나(칠레)의 'Quinta Monroy'

2016년 프리즈커상 수상자로 칠레 정부와 함께 재정적인 한계와 정책적인 제한사항 하에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발크리슈나 도시(인도)의

'Aranya Low Cost Housing'

2018년 프리즈커상 수상자이며, 인도 인도르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민 8만 여명을 위한 주택단지를 설계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범위 내 가족을 통합하고, 공용 통행로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도록 계획했다.

도시에서 시민이 추방되고, 비실재되는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권리', '자신들이 원하는 도시를 스스로 만들 권리' 등 시민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도시에 대한 권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의는 1968년 프랑스 학자 르페브르의 *"Le droit a la ville"*에서 시작되어, 브라질 도시법제정운동·도시에 대한 권리 현장 제정운동·유엔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도시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헌장』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는

“도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집합적 공간이다. 도시 거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사회적·생태적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갖는 동시에 연대의 의무가 있다.”, “도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도시 거주자 모두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질 헌법(1988)상 도시에 대한 권리와 이를 구체화한 도시법(City Statute, 2001)은 “토지 소유자가 있더라도 저(低)활용·미(未)활용되는 도시 토지의 분할·건축·강제 이용촉진, 시간이 지날수록 누진하는 재산세, 공공을 위한 토지 매입에 필요한 공채, 장기 점유자의 소유권 취득 허용”

등의 공유재인 토지 용익권(이용가치)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건축의 커머닝은 건축(가)이 사회적고민과 사회적역할 그리고 '도시권'의 추구로 자본에 복무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커먼즈가 만들어질 것이다.

똑똑한 도시와 쓰레기통,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

최빛나
(언메이크 랩)

똑똑한 도시와 쓰레기통,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

언메이크 랩

커먼즈 네트워크

언메이크 랩

다르게 만들기 연구실

기술문화를 기반으로 연구, 전시, 교육, 연대 활동

www.unmakelab.org



자기정량화운동



빵퓨타 : 핸드메이드 컴퓨터 만들기



키트의 사회문화사 리서치 공유회



일시적 예술기술학교 Forking Room : 데이터화 된 자아

커먼즈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커먼즈는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닐까. 커먼즈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혹은 이때까지의 활동을 커먼즈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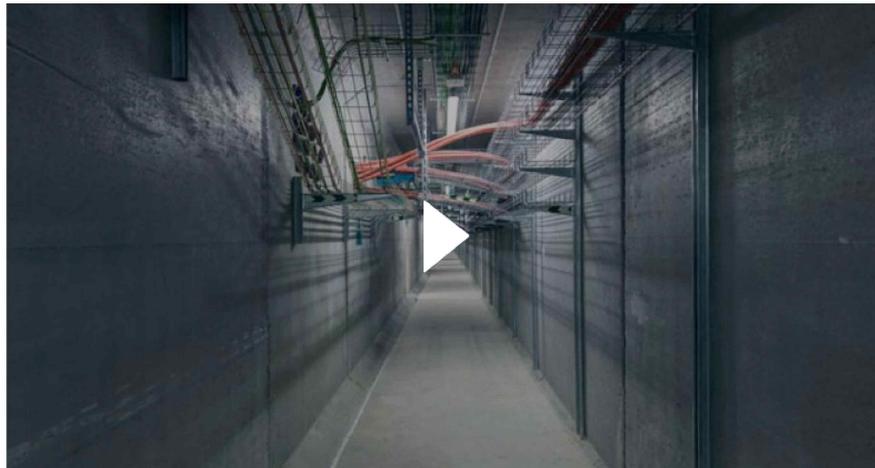
예술 연구(Artistic Research)

은유로서의 연구 (은유 : 자율적 자기 이론의 정립)

인간, 기술적 장치, 사회적 시스템의 상호 관계를 들여다 보고, 서로의 인식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리서치 하고 그 과정을 하나의 작업이자 매개체로 두고 사람들과 얘기 나눌 수 있을까

그 과정과 내용을 예술의 문제 뿐 아니라 시민사회, 연구 집단과 교류할 수 있을까

기술사회



Internet machine / Timo Arnall

인터넷과 디지털을 '구름'이란 신화를 넘어 '첨물질'(add-material)로 다루기



An Internet / Jeroen Van Loon

연기와 같은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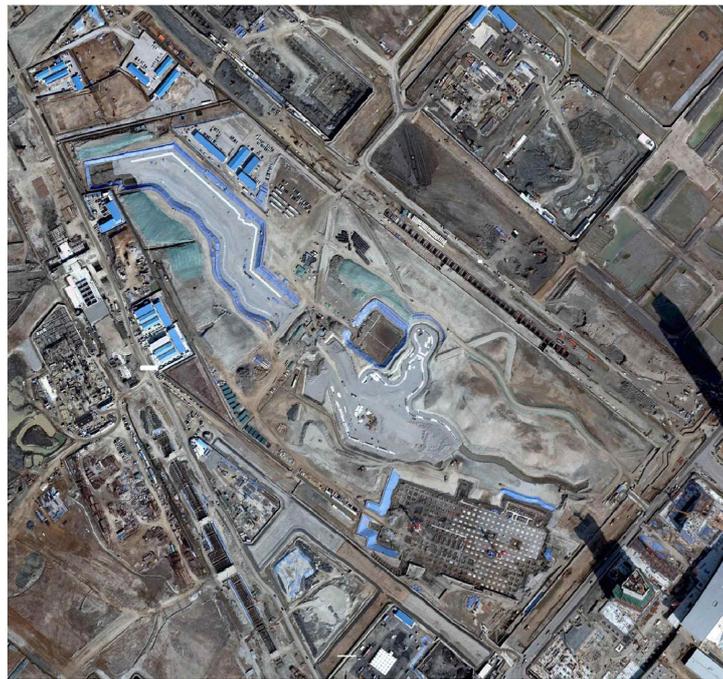


Bincam, Newcastle University

스마트 함 속의 기술해결주의



송도
센트럴파크
2017



송도
센트럴파크
2008



송도 스마트시티 컨트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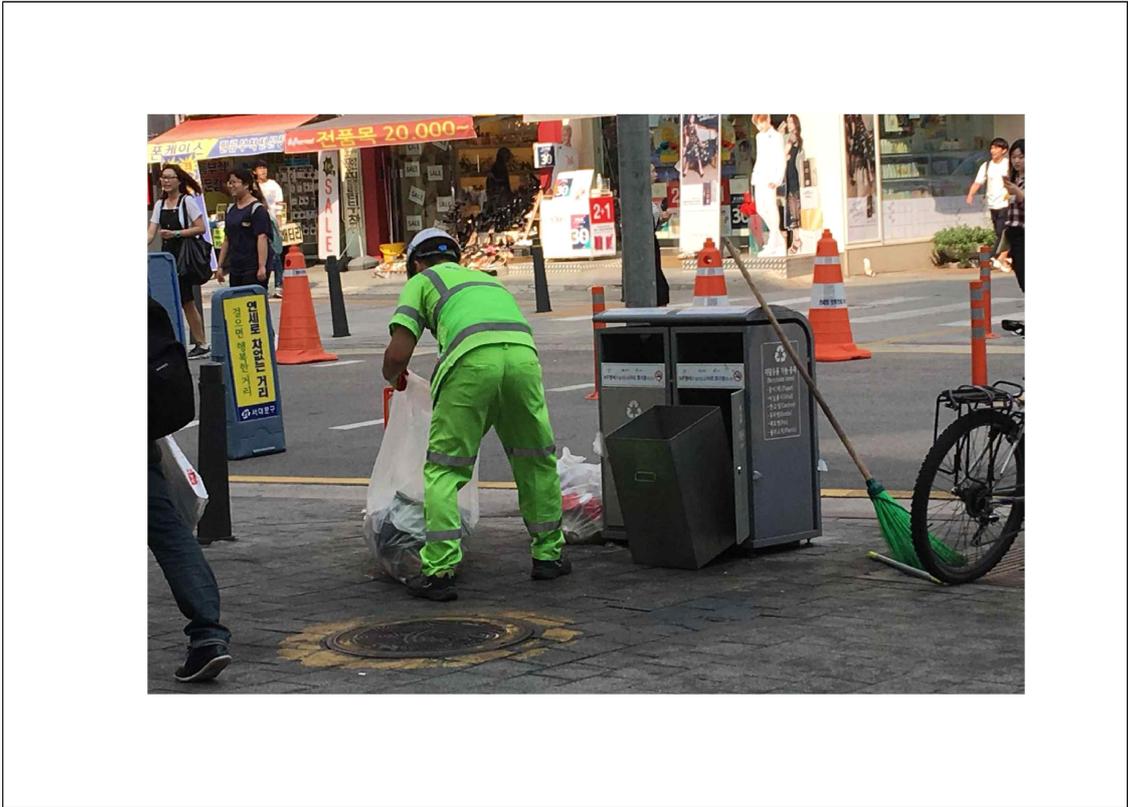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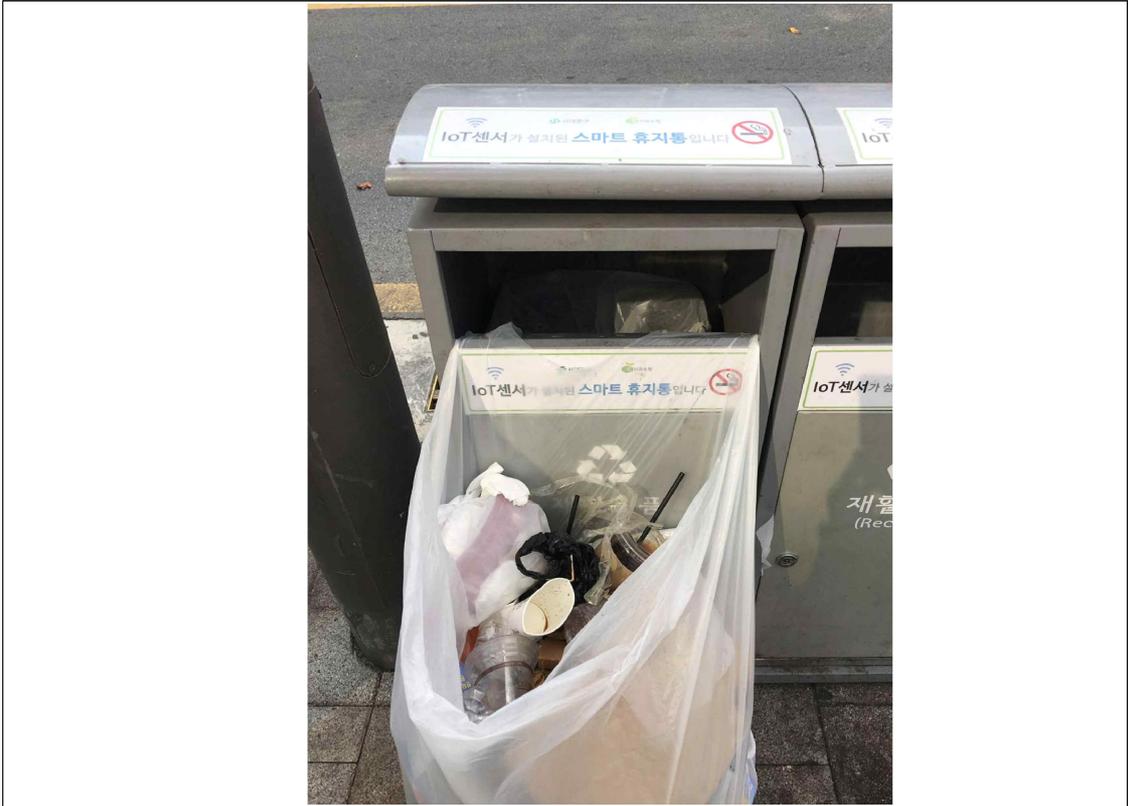
신촌 스마트 쓰레기통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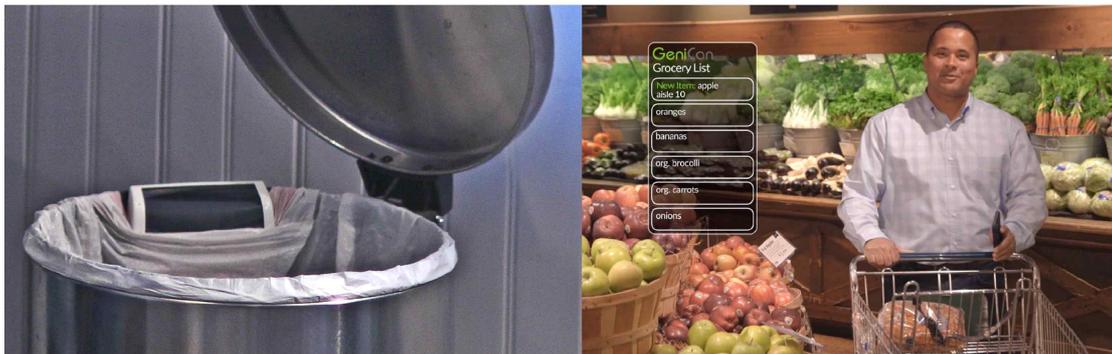
신촌 스마트 쓰레기통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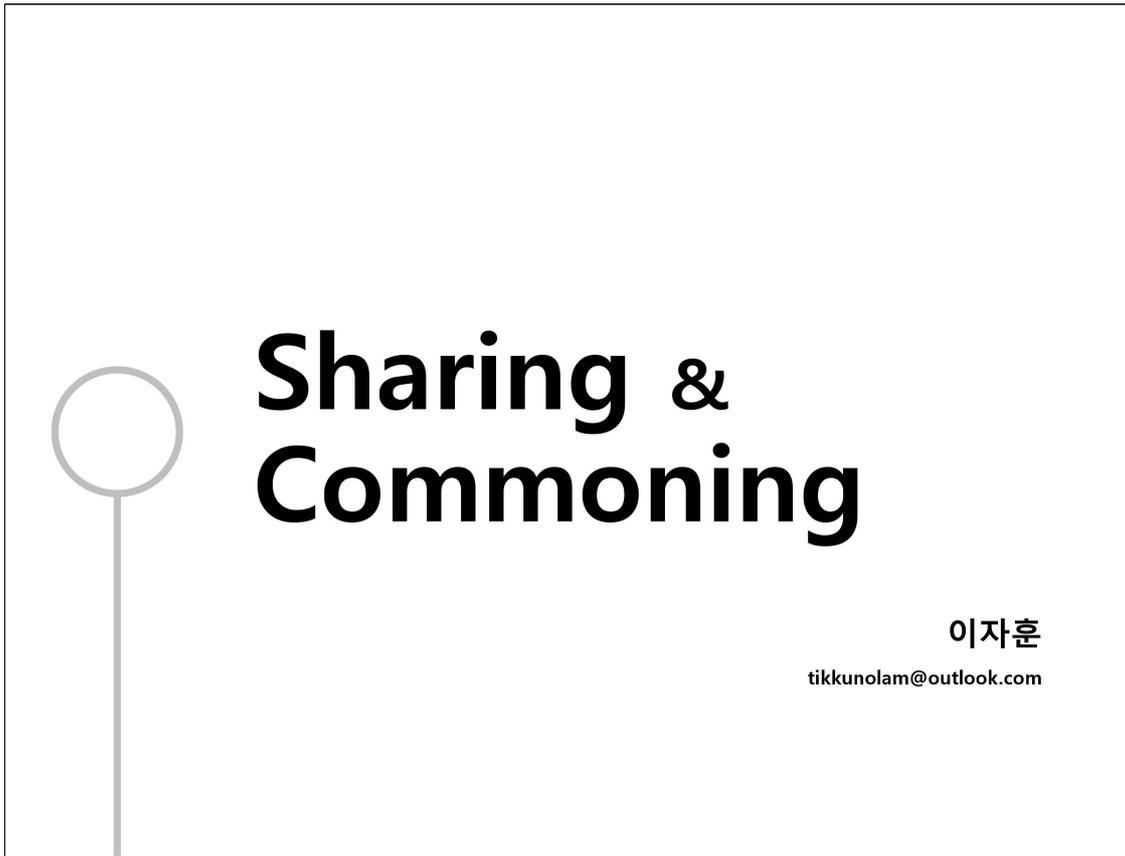


여전히 커먼즈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

- 기술이 우리를 어떻게 확장 시키고 축소시키는가
- 기술적 장치들이 우리의 삶의 공간에 배치되기 시작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 정보의 민주화, 기술의 민주화라는 스마트 함 아래서 가려지는 건 무엇일까
- 비물질적으로 얘기되는 디지털 시대의 물리적, 환경적 영향은?
- '자율과 억압이 분간되지 않는' 디지털 과두 정치 시대에
부드럽게 배제되는 건 무엇일까

Sharing & Commoning

이자훈



○ 공유경제는 공유를 말하지 않는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연결 소비(Connected Consumption), 메시(Mesh), 대중기반 자본주의(Crowd-based capitalism), 접근기반소비(Access-based consumption), 임시직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P2P economy,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rporatism), 플랫폼 자본주의(Platform capitalism), 커먼즈 경제(Commons economy), 풀링 경제(Pooling economy), 한계비용 제로사회(Marginal cost zero society), 네트워크 경제(networked economy), 부스러기 경제(share-the-scrap economy), O2O 경제(Online-to-Offline economy)

...

공유경제는 사업모델, 사회적 경제, 순환 경제 등 다양한 맥락에서 논의됨

그러나

공유가 어떠한 활동인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



공유는 무엇인가?

○ 공유의 일상적 의미

- **나눔** :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Ex) 음식을 나눠 먹음
- **공동사용·점유** : 타인과 함께 사용하는 것(공간, 언어, 문화, 운명 등)
Ex) Bed Sharing, 물건 돌려쓰기
- **소통** :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세상에 알리는 것
-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보배포', 'SNS 참여'로 의미 확장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암시

○ 공유의 학술적 정의

- Clay Shirky(2008)
자신이 인식한 상태에서 자기 작업물을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
- Heimans & Timms(2014)
SNS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취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것
- Belk(2010)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는 행위'
- Widlok(2013)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취하게 하는 것'
- Price(1975)
'친밀한 사회 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 재화 및 서비스를 배분하는 과정'
 -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친밀한 상호의존관계
 -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동료 등
 - 분산적·직접적·불균형한 교환

○ 공유의 동기

식량공유(food sharing)

- 친족 선택 기반 족벌주의(Kin selection-based nepotism)
: 같은 유전자를 갖는 친족들에게 편익 제공
-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
: 사냥감의 일부를 보상하여 협력을 보장
-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ing)
: 공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알림
- 용인된 절도 또는 징발 (Tolerated theft or scrounging)
: 식량을 지키는 것보다 일부를 잃는 것이 편익이 더 클 경우

요구공유(demand sharing)

- 상대방이 잉여자원을 갖는 것이 확실할 때, 이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간주하고 요구하는 것
- 요구가 충족될 경우 친밀감 및 연대의식 형성 가능



Sharing & Commoning

○ Sharing과 Commoning

Sharing :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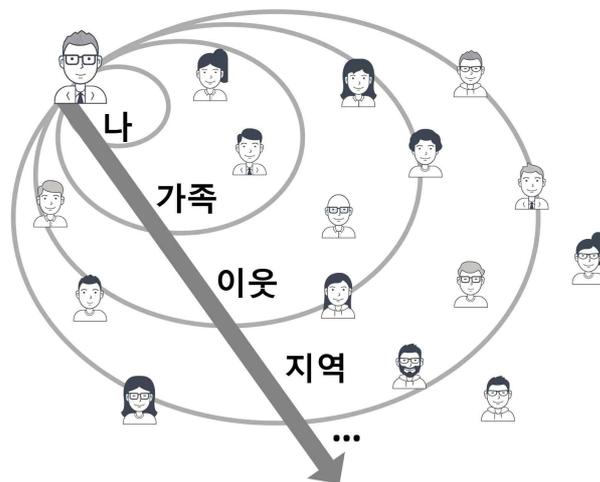
- 공동체를 형성·유지하는 소비활동
 - 소비 : 다른 사람(더 나아가 사회)과 관계의 매개
-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
 - 사용가치에 집중 ↔ 시장행위(이윤추구, 교환가치에 집중)
- 주로 비공식적인 활동
 - 법적 : 호의관계 ↔ 시장행위(계약관계)
 - 예: 카풀 vs 택시

Commoning : Commons를 위한 사회적 활동

- **Commons** : 관계를 포함한 자원(공동체+자원+사회적 규약)
- Commoning의 접근
 - (재)생산·사용 활동 : 생산자+사용자
 - 니즈 충족 및 자발적 활동 : 주관적 만족감
 - 평등한 거버넌스(Peers and Self-organization)
 - 포용성 : 가격이 아닌 사회적 동기

○ 개인의 실천으로서 Commoning

Commoning은 Sharing의 원리를 사회로 확장하는 것



인천의 도시난개발과 커먼즈

- 인천의 고민

민운기

(스페이스 빔)

“국공유지는 국가 전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고, 궁극적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권한은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가지는 것.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관료나 국가 기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용과 점유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자세임.”⁶⁷⁾

“오늘날 잉여가치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특히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누적된 것이며, 또한 경제적, 도시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분명 도시 서민, 정확히 말해 도시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도시의 건조 환경에 물질적으로 체현될 뿐만 아니라 그 경관에 부여된 문화적 상징자본을 포함하여 도시의 잉여가치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고,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치는 공유재로 인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그 동안 도시공간을 통한 잉여가치의 생산과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따라서 도시의 잉여가치가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공유재는 확대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적적으로 증가한 도시 공유재가 오늘날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파괴·소멸되면서 사적으로 전유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⁸⁾

지역 내에서 특정의 도시 공간이나 건물 또는 장소, 즉 자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공적 접근 및 활용 방안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나아가서는 이해관계에 얽힌 또 다른 주민들)와의 갈등과 충돌이 그 동안 적지 않게 있어 왔다. 이러한 ‘싸움’의 양상은 늘 지자체가 어떤 계획(안)을 발표하거나 결정을 내리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시민사회가 대응하는 모양새로 드러난다. 물론 그 과정에 자문회의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제도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요식 행위로 그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며 최종 결론을 내리는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그 결과 이로 인한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에너지 낭비와 소진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 이면에는 지자체가 그 소유권과 처분권을 지니고 있다는 사고와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지자체는 행정 권력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하게 되는데, 그 동안 시민사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해왔지 이러한 ‘권력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발동시켜 오지는 않았다.

이 글은 이러한 소모적(?) 싸움의 반복을 막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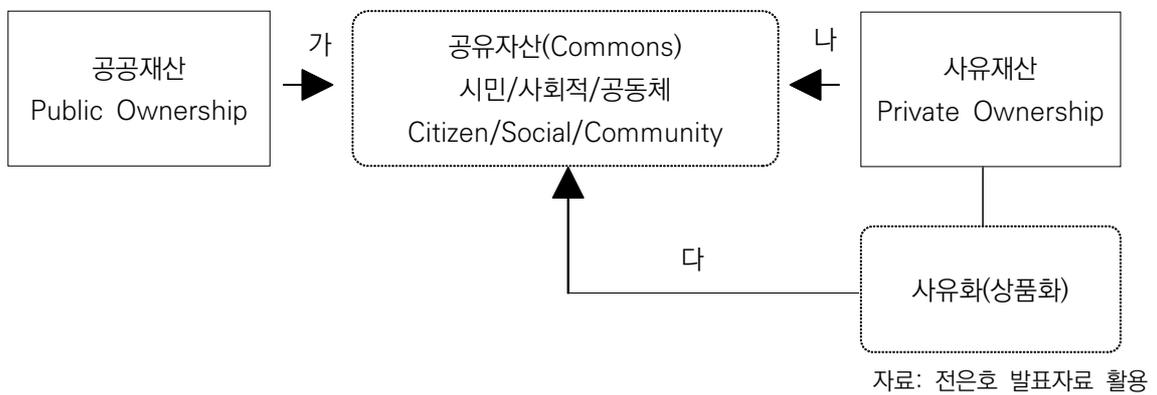
67) 박배균,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토론문, 2017.12.26, 종로 마이크업팩트.

68) 최병두,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2016. 6. 24,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심포지엄 〈위기의 도시 희망의 도시〉 자료집 14쪽.

특정의 도시 공간이나 건물 또는 장소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다룸으로써 인천판 공유재 (commons) 또는 공유자산화(commoning) 담론을 본격 형성하고자 하는 시작점으로 준비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역 내 특정 자산에 대해 지자체가 그 동안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관련 사례들을 통해 되돌아봄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특정 자산에 대한 지자체의 권력 행사 유형과 그 결과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경우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재산(Public Ownership)이든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이든 이를 공유재 또는 공유자산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변화로도모하거나 그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해왔는지 다음의 세 가지 유형 또는 관점으로 나누어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림 1〉 시민자산화의 개념과 그 형태

가) 공공재산(Public Ownership)의 처분과 활용

이는 공유재(common)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공공 소유의 재산을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분 또는 활용했는가와 관련된 사례이다.

① 월미도



이곳은 제국주의 시기에서부터 개항기,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분단과 냉전이라는 시기를 거치며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사와 맞물려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민간인을 희생시켰고, 그들이 살던 거주지마저 빼앗아 군부대로 활용하였지만 철수한 이후에도 원 소유주에게 되돌려주지 않음은 물론 다소 생뚱맞은 월미전통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이곳이 지닌 역사적 기억을 탈각시키는 우를 범했다. 이를 조성하는 단계에서도 다수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적었고, 조성 이후에도 시민들은 제한된 선택의 자유만을 지닐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지자체의 공간 권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일 뿐 인천이나 중구는 이곳의 역사성을 무시하거나 특정의 사고와 이념에 사로잡혀 이를 대변하는 시설물과 조형물로 채워 넣고 있는 가운데, 섬 자체를 천박한 유흥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각종 위락시설과 호텔 등이 난립하고 있는데 몇 차례에 걸쳐 고도완화를 시행(2006년 2,3층→7,9층, 2016년 16층)했고, 정상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지난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막일에 맞추어 853억을 투입하여 개통하려던 월미은하레일은 비록 부실공사에 의해 개통을 못한 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면에는 이곳에 부동산이나 놀이시설 등을 소유한 일부 정치인이나 그 일가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

② 내항8부두



이곳은 하역과 물류 수송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불편과 피해를 끼쳐와 지속적인 이전 및 개방 요구 속에 부두 기능 재배치 계획으로 지난 2016년 4월, 40여 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곧바로 인근의 차이나타운과 송월동 동화마을 방문객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이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그 지배권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 중구가 상호 견제 속에 소유하며 제 각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현재 이곳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지로 지정하여 2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무산되어 지난 2016년 12월 해수부, 인천시, LH공사, 인천항만공사가 '기본업무협약'을 맺어 공동개발로 전환한 상태로, 이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곳 8부두 내에 있는 원당창고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중심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상플랫폼'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구는 이곳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의 협력 속에 현 청장과 개발 욕망에 사로잡힌 주민들이 합세하여 이 일대에 도크타운(Docktown)이라는 초고층 고밀도 주상

복합아파트 건립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한 내항 및 배후부지 4.64km²(464만m²)를 대상으로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발표를 했고,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 내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열린 논의를 진정성 있게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성에 부합하는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③ 북성포구



이 일대를 포함한 인천 연안은 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립을 해왔고,⁶⁹⁾ 개항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매립과 더불어 산업 단지를 조성해왔다. 이곳은 1960~1970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매립공사를 벌여 왔는데, 물자 수송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달리하여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니 십자수로 모양이 되었다. 내륙과 맞닿은 곳엔 갯벌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인천 연안에서는 유일하다. “1973년 경기어련부두가 항동 연안부두로 이전하자 십자수로를 따라 조성된 갯골로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북성포구가 형성”⁷⁰⁾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부두도 아닌, 포구로서 비록 규모는 작으나 이곳을 터전으로 적지 않은 서민들이 어업 생태계를 이루며 생업을 이어왔다. 지금도 바닷물이 들어올 때면 갯 잡아온 해산물을 배 위에서 직접 파는 선상파시가 열리고 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 많은 곳에만 신경을 쓰고 그럴듯하게 꾸미는 지자체 행정에 의해 이곳은 관심 밖의 장소가 되어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한편으로 이곳만의 남다른 특색과 풍광 또는 인천의 정체성을 간직하게 되어 이를 보려는 방문객들이 꾸준



69) 이번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어쩌면 이 부분을 포함한 송도나 청라, 영종 등의 갯벌 매립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신도시 개발과 투기 문제도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나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된 터라 이곳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70) 배성수 「북성포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2017년 1월 19일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에서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주최로 마련한 북성포구 살리기 대안 마련을 위한 1차 시민토론회 <인천 북성포구, 매립을 넘어 상생의 대안을 찾다> 발제글 중.

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이 일대 7만 여㎡를 매립하여 준설토투기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오염된 갯벌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낙후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동구청·중구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 것이라 하는데, 정작 이곳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준설토 투기장 건설 이후 토지 소유권, 분양, 임대 등에 대한 내용만 담겨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환경 개선이 아닌 땅투기 개발임이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나서서 2016년 11월 22일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을 꾸려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7일부터 기어이 매립공사에 들어가고 있다. 북성포구 매립의 심각성은 주민들의 민원을 공공이 수용하는 모양새로 이루어졌지만, 순수하게 오염과 악취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보다는 이를 이유로 매립을 통한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또 다른 주민들과 지자체가 합세하여 밀어붙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갯벌이라고 하는 공유재의 파괴와 더불어 이곳을 근거지로 살아가는 어민들, 상인들의 생계에 피해와 타격을 주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저 마다의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율적 권리를 박탈하면서까지 상업지로 변질시켜 일부만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반공공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④ 문학산



비류 백제의 건국 신화가 깃들여 있는 이곳은 분단과 냉전 상황 속에서 1962년부터 50년 넘게 군부대가 정상에 주둔하고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불허되어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1998년 봉제산 미사일 오발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 범시민단체들의 ‘군부대 이전 및 시민공원 만들기 운동,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운동’ 등을 벌였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군부대는 결국 2005년부터 영종도 이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며 문학산 정상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와중에 민선6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문화주권’ 2차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문학산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문학타워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의 사학계는 물론 환경단체, 문화진영을 중심으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자 올 초 인천시는 <인천 랜드마크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 용역>을 3월 중 별일 예정이라고 밝히며 용역 명에서 ‘문학산’을 슬그머니 뺐다. 이러한 과정과 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도시 정책 내지는 관광 사업을 펼치며 내실보다는 외형 및 보여주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자연문화유산 자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일보다는, 자연을 이용하여 (도시)경관을 즐기려는 문명인의 자기만족적 사고와 감각, 시선에 사로잡혀 있음을 역으로 고백하고 있다. 거기에 지역의 일부 식자와 언론들도 가세하여 이를 부추기다가 머쓱해진 상황이다. 자연환경은 대표적인 공유재로서 이는 인간 삶의 지속을 위해 남 다른 접근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팍한 인식과 욕망의 소유자들로 인해 자꾸만 수단화, 대상화 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⑤ 애인광장



이는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과 중구 월미공원, 그리고 월미문화의 거리 세 곳에 총 9억여 원을 들여 '애인(愛仁)'이라는 컨셉으로 꾸민 광장을 일컫는 말이다. 이곳에는 하트조형물과 반지조형물, 인천글자조형물, 종합안내판, all ways INCHEON 글자조형물, 화성석 좌대, 트리아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발상과 조성 과정이 가관이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연초 시 중급간부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애인광장' 조성 방안 아이디어가 마련됐고, 유정복 시장이 직접 애인광장의 필요성을 언급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입찰을 실시해 연말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 그 어디에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애인(愛仁)'은 유정복 시장 임기 초반에 '애인(愛仁)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이후 애인 섬 만들기, 애인페스티벌 개최, 애인김장축제 개최, 애인동네 만들기 사업, 애인카드 발급, 인천시청 신축에 따른 구 청사의 애인청 명명 등으로 이어져 더니 급기야 지난해의 '인천주권' 선언 및 분야별 정책 발표에 이어 지난해에는 '애인정책'을 시리즈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사랑이 결국은 애인광장 조성으로 연결된 것이며,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마저 애인으로 이름을 붙이는 등 모든 길은 인천이 아닌 애인으로 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한 광장의 조형물과 이미지들을 보면 그 수준을 떠나 반지와 하트모양을 형상화하면서 '애인(愛仁)'이 아닌, 애인(愛人)이 되어버렸다. 유정복 인천시장 스스로 '애인(愛仁)'이 지닌 애초의 의미마저 놓쳐버리고 3류 멜로물로 변질 및 전락시킨 것이다. 그러나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이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란 점이다. 그러한 공간에 정작 그 공간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기 내에 애용한 자기 사업 이름으로 시장 개인의 발상이 개입된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자 독단적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광장'이 지닌 열린 성격과 의미를 안다면 여타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을 제약하면서 특정한 사고와 취향, 미감을 강요하는 이런 시설물 설치의 감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공유의 공간이 독점과 강요의 공간으로 뒤바뀐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⁷¹⁾

나)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의 처분과 활용

이는 공유재(common)로서의 성격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간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을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처분 또는 활용했는가와 관련된 사례이다.



① 인천역사(驛舍)

이는 1899년 경인철도 개통과 더불어 한국철도 탄생역인 제물포역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 때 파괴됐던 시설을 1960년에 신축하여 복구한 것으로, 경인선 구간 내 역사 중 유일한 간이역 형태로 남아 있다. 그 건축적 수준 및 가치와는 별개로 한 시대의 기차역사驛舍 건축 양식(벽체구조 : 조적조, 지붕구조 : 맞배지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물론, 지난했던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관통하며 그 시·공간성을 오롯이 담고 있고, 이곳을 이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애환이 깃든 곳이다. 또한 역사 앞 광장은 어떠한 경제적 비용이나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드나들고 머무르며 약속의 장소로도 삼았던, 모두에게 열린 공유의 공간이다. 이렇듯 인천역사와 앞 광장은 인천의 소중한 근대역사문화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인 코레일(옛 철도청)은 인천시와 함께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오던 중 지난 2015년 12월 국토부 공모 도시재생선도사업에 ‘개항창조도시’ 조성 사업이 재수(?) 끝에 선정되어 이곳을 복합역사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았다. 그 일환으로 2016년 7월 이 일원을 입지규제최소구역⁷²⁾으로 지정하여 현재의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관없이 2천㎡ 이상의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개발계획에 맞춰 60%와 250%에서 각각 80%와 600%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를 토대로 코레일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 2021년 준공 목표로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의 인천역 복합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천역사의 멸실 위험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역 여론을 의

71) 이러한 사례는 인천 동구 일대를 포함하여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한 이홍수 구청장의 독점적 점유 및 활용과도 흡사하다.

72) 이는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거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 행정 수단이다.

식했는지 이를 '파사드(Facade)' 방식으로 복원한다는 소식도 있다. 즉 현재의 인천역사 정면 벽체만을 떼어낸 후 새로 짓는 복합역사 내 전시관 외벽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코레일과 인천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인천역 일원 역사권활성화 사업은 근대 역사유산과 공유공간이라는 성격을 지닌 이 역사와 광장 및 이 일대가 지닌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무시하고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전환시켜 특정 기관과 업체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방안에 다름 아니다. 다만 이를 추진할 민간사업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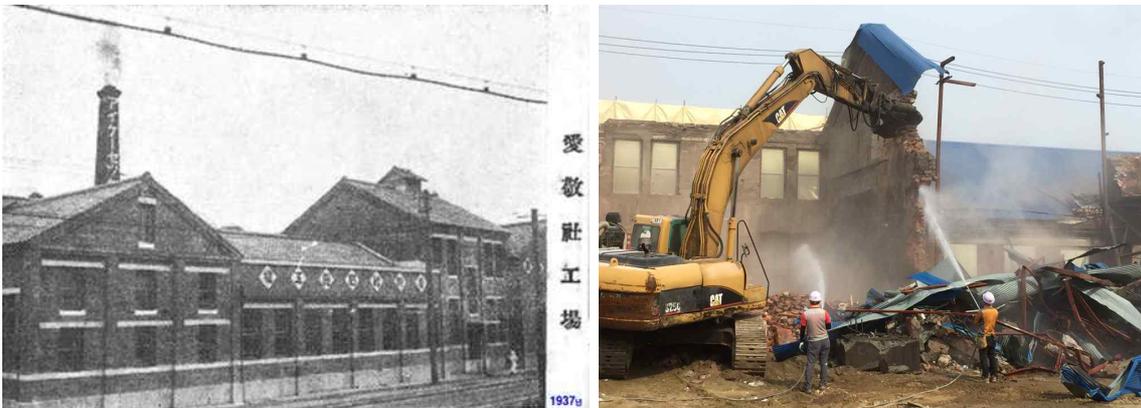
② 중구 개항장과 송월동 동화마을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광역과 기초 단위 자치단체들은 이른 바 '도시경쟁력 확보' 차원의 다각적인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역만이 지닌 남다른 역사 문화(유산), 자연 요소 등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한 때 활력이 넘쳤으나 도시의 확장 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화려했던 옛 영화를 다시 꿈꾸기 위한 도시재생 또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전개되었다. 인천 중구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문제는 개념과 철학 없는 도시 및 관광 정책에 기반을 두고 오로지 경제적인 잣대만을 내세워 접근하다 보니 역사 문화적 가치와 맥락이 없는 공간으로 변질시켜 왔다는 것이다. 옛 청관의 울긋불긋 벽화 및 인공 시설물과 조형물들, 옛 일본 조계지 건물 외벽의 나무껍데기 덧씌우기 작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식의 공간 및 거리 조성 사업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이나 장소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왜곡시킨다. 바람직한 관광은 해당 지역이나 도시가 지닌 역사나 삶에 대해 진솔하게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매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이를 가로막고 표피적인 볼거리 수준의 소비 행태를 조장할 뿐이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짝퉁 거리와 장소를 만들어놓았는데 그것이 통한다는 사실이다. 사업 추진 이후 중구 개항장 일대는 주말이 되면 곳곳에서 찾아와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결국 이는 행정과 시민 내지는 우리의 관광(객) 수준이 합작하여 이루어 낸 결과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중구청은 이러한 방식의 사업을 더 확장시킬 계획을 세운다. 좀 더 구체적인 이유로는 개항장 일대를 관람한 가족들 중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사업 방식은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아니 더 심각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삶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을 동화 속 이미지들로 덮어버렸다. 당연히 그 이미지 이면의 마을이 지닌 이모저모, 즉 속살들은 감추어져 버렸다. 물론 시행 과정 속에서 일부 주민들의 여러 불만과 문제 제기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 결과 이곳 또한 ‘성공’하였다. 부모님과 손잡은 아이들은 물론 친구들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역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일대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 등 임대료가 오르고, 목 좋은 곳에는 대부분 외부자본이 들어와 차지하였다. 당연히 이곳에 살던 주민들이 떠나가게 되고, 골목길 주민들은 방문객들로 인한 소음에 문을 닫아놓아야 한다. 실제로 이곳은 동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비해 인구가 줄었다는 연구논문도 있다.⁷³⁾ 그렇다면 이로 인한 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을까? 주민들로 구성된 <송월동 동화마을 협동조합>이 지속적인 수익증대를 위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수익금은 일자리창출, 청소,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는 이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속한 마을의 역사 문화 정체성 왜곡이나 훼손, 나아가서는 파괴⁷⁴⁾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이곳은 개항과 근대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지역 또는 민간 마을을 관광 수익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서(특정 지역은 상업적인 이익에 경도된 일부 주민들과 함께) 해당 장소가 지닌 고유의 정체성과 공유의 가치를 맥락 없는 짝퉁 시설물 및 이미지와 맞바꾼 사례지라 할 수 있다.

③ 애경사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 중구 송월동에 위치한 붉은 벽돌 건물이 너무도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건물은 다름 아닌, 1912년 이곳에서 시작했던 비누공장 애경사로, 이후 애경그룹이 1954년 창업을 하며 인수해 1962년 매각한 이래 여러 업체가 매입하여 사용해왔는데, 무엇보다도 개항기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이 일대의 양조장, 정미소, 전기회사 등과 함께 초기 인천 산업 단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유산이다. 그러나 중구청(장)은 이 산업단지로 인해 생겨난 배후 주거지인 송월동을 ‘동화마을’이라는 생똥맞은 개념의 관광지로 꾸민 후 몰려드는 차량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이를 매입한 후

73) 이옥진의 한국교원대학교 2016년 8월 석사학위(지리교육 전공) 논문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 연구 -인천시 송월동 동화마을의 사례> 96쪽. “동화마을 사업 추진 전(2013년 3월) 송월동에는 2,556세대 5,929명(인천 중 구 전체 인구의 5.8%)이 거주하고 있었다. 동화마을 사업 추진 후 약 3년이 경과된 2016년 3월 송월동의 인구는 2,354가구 5,276명(인천 중구 전체 인구의 4.6%)으로 감소하였다.” 그 외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 이전과 이후의 여러 변화 등을 이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4)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이어지는 근대산업유산 애경사 철거 내용에 소개하였다.

철거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를 인지한 지역의 시민 및 시민문화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 이 부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송월동 동화마을 협동조합> 회원들이 나와 철거를 반대하는 시민문화단체 회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지역발전 가로막는 시민단체 물러가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였다. 이러한 파괴 과정을 현장에 나선 시민문화단체 회원들 및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SNS를 통해 생중계 수준으로 외부에 알렸고, 지역은 물론 중앙 언론들도 파괴 장면을 보여주며 적극 보도를 하면서 비판 여론은 들끓었다. 무엇보다도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고 분노를 일으켰던 점은 이러한 일이 처음이 아닌, 이미 조일양조장, 동방극장, 호프집 ‘마음과 마음’ 등을 지자체가 매입하여 부수고 하나같이 주차장을 만드는 일이 반복되어 온데다가, 이렇듯 소중한 역사 유산이 구청장 한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애경사 파괴는 인천의 근대유산 보존 및 관리, 활용에 있어서 총체적 한계와 문제점 및 그 수준을 드러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중구는 이미 201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중구 차원에서 <향토문화유산 전수조사>를 관내 모 민간단체에 맡겨 애경사 파괴가 이뤄지던 6월부터 시작하려던 참에 있었다. 인천시 또한 정부에서 지난 2015년 제정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인 ‘근대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건축자산 전수조사’를 미루고 있다가 이러한 사태를 맞아 예산 편성 및 전담 기관과 전문 인력 충원에 부랴부랴 나섰다.⁷⁵⁾ 결국 이러한 모습은 “역사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중구청장이나 ‘인천 가치 재창조’를 외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닌 도시 정책의 허울과 민낯 그 자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의 부재와 알팍한 인식 속에 오늘날 도 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수많은 유산들은 하나 둘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④ 인천가톨릭회관



애경사 철거에 따른 충격의 여진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지역 자산이 사라졌다. 다름 아닌 인천가톨릭회관으로,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 서울의 명동성당에 비견되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다. 이곳은 1977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일원인 김병상 신부가 유신헌법 철폐 기도회를 주최했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며, 인천 5·3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노동자 대투쟁 등의 집회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곳을 중구청이 ‘답동

75) 최근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인천문화재단 내 인천역사문화센터에 맡겨 <인천시 문화유산 증장기 5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언덕배기의 답동성당(사적 제287호)이 길 건너편에서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정비하고, 그 아래로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해 말 이를 서둘러 철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시민문화단체가 철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답동성당의 일부 신자들로 구성된 <답동성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도 1889년 성당을 건설할 당시 땅을 제공한 기증자의 의도와 맞지 않다며 반대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이 공간의 주인이었던 가톨릭 인천교구가 이러한 철거 행위에 전혀 나서지 않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구 송림동 소재 박문여중고를 2014년과 2015년에 차례로 송도신도시로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가톨릭 인천교구가 들어가기 위해 (가톨릭 인천교구 건물로 사용했던)답동의 가톨릭회관 부지를 중구청에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는 이 건물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던 그 누군가가 나서겠지 하며 눈치를 보다 철거 직전에야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미 중요한 제반 행정 절차를 대부분 마친 후의 '집행'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결국 인천가톨릭회관 철거는 이권을 쫓아 이러한 대대적인 장소 이동 및 재배치, 부지 매각에 앞장 선 가톨릭 인천교구와, 무엇을 위한 관광인지는 모르겠으나 문화재 건물 하나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역사자산을 파괴하는 인천시와 중구청, 더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는 인근 일부 상인들의 생각이 합쳐져서 만들어 낸 결과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의 공유자산과 주차장을 맞바꾸었다.

⑤ 화수부두 부산집과 연탄화덕



이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로 29-1에 위치하고 있는 선술집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애착이 많았던 곳이다. 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가게 안쪽에 놓인 연탄화덕 때문인데, 지름과 높이 1미터 남짓의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주변이 널찍하여 이곳에서 조리도 하고 손님들이 탁자 삼아 빙 둘러 앉아 찌개 등의 안주와 술잔을 기울이며 돈독한 친밀감을 형성하게 만든다.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이자 현재와 같은 이동식 탁자가 나오기 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한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생활문화자산이라고 여겨졌다. 더불어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운영해 온 유임상 여사의 생애사는 물론, 쾌활한 성격에 넉넉한 인심은 한 때의 활력을 뒤로하고 허름해진 화수부두를 찾는 도시인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어온, 연탄화덕 못지않은 따뜻하고도 소중한 또 다른 공유자산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연탄화덕은 물론이 가게 또한 사라져버렸다. 다름 아닌 이 '부산집'이 있는 거리 일대가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지난 2016년에 도로 확장을 위한 철거가 이

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겪으며 이곳에서 50년 동안 살아오며 세월을 묻은, 그리고 철거를 앞둔 당시 아흔을 넘겨 어디로 가도 새롭게 무엇을 하기도 어려운 유 여사는 "나 죽을 때까지 만이라도 아무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암담하다"고 하소연 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유 여사는 이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지 철거 전에 입원을 하여 병원생활 중이고, 이후 가게 철거와 더불어 유 여사와 함께 마을살이를 했던 이웃 할머니들도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 활성화 또는 재생 사업을 벌이면서도 정작 그곳에 있는 지역 주민은 물론 공유 자산이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며 자생적인 공동체와 생활생태계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재생'이고 '활성화'인지.

⑥ 배다리마을과 관통도로



이곳은 이미 많이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유지 싸움 현장이다. 한 마을 중간을 '지나는' 산업도로 건설과 전면 철거 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맞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문화공간 및 시민단체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이를 막아내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을 만들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써 왔다. 이곳은 법적으로 보면 일개 민간인 마을에 불과하나 1883년 일제에 의한 제물포 개항 이후 조선인들의 중심지였고, 노동자와 서민, 피난민의 고달픈 역사가 깃들여 있으며, 이들과 함께 지식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온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곳을 인천시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마을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해체하려고 나선 것이다. 현재 산업도로는 배다리마을 3구간을 남겨둔 채 1,2구간을 우선 개통하려다 주민들이 전 구간 전면 폐기를 내세우며 지난 해 9월부터 '천막행동'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3구간의 경우 그 동안 지하화를 전제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텃밭 가꾸기, 여름생태캠프 개최, 생태놀이터 조성 등 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해왔는데, 지난해부터 동구청이 '접수'하여 인위적인 관리 방식을 적용시키며 이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은 상태이다. 이에 다시 주민들이 상의하여 민·관 협력의 도시 숲 조성 방안을 제안한 상태인데, 일부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도 있어 올해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한편 마을의 경우 개발 계획에 맞서 지키고 가꾸어 왔더니 뒤늦게 동구청이 나서서 주민들과의 상의도 없이 이곳을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이라고 하는 볼거리 중심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세워 자기성과를 내려고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⁷⁶⁾ 이를 의식한 부분적인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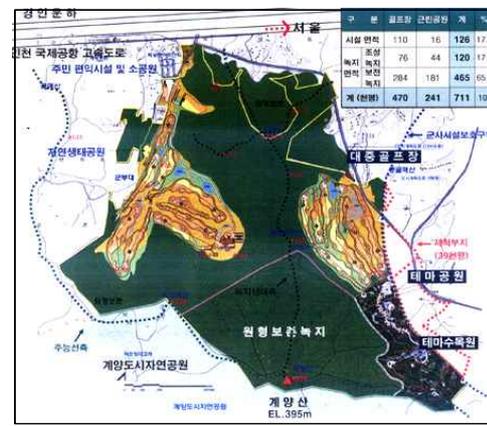
76) 이 과정에서 발제자가 몸담고 있는 스페이스 빔의 인천양조장 건물 매각 소식을 듣고 동구청이 스페이

은 한 마을이 지닌 공유적 자산과 가치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민간과 공공의 시선과 태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타의 사례와 다른 점은 주민들은 물론 이곳의 문화공간 운영자 및 활동가들이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 거주 또는 생활을 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도로 폐기와 마을 지키기를 넘어선, 한 시대를 지배했던 속도와 효율, 발전과 성장이라는 담론을 대신하여 생명과 생태,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려는 노력인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주목하고 연대하고 있다.

다) 사유재산의 사유화(상품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이는 공유재(common)로서의 가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민간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을 해당 소유주가 사유화(상품화)하여 반공공적으로 활용하려 할 경우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개입했는가와 관련된 사례이다.

①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립



계양산은 한남정맥으로 이어지는 인천의 진산이자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고, 하루 방문객이 1만 5천명이나 되는 시민의 소중한 쉼터다. 그런데 총 면적 384만㎡(약 116만 2623 평) 중 60%에 해당하는 257만㎡(78만 평)이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유로, 롯데 측은 지난 1998년부터 꾸준히 계양산 북사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즉각 ‘계양산골프장저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은 2012년 민선6기 송영길 인천시장 이후보시절 시민사회와 약속한 바와 같이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에 롯데 측은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1,2심에서 패소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이다. 그러나 판결이 뒤집혀지기는 어렵고, 더 이상의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게 증론으로, 사실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는 자연유산이 특정 개인 또는 기업의 소유라 하더라도 공유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사회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 범의 지속 사용 여부에는 관심도 없이 바다리 종합관광안내소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시민 주도의 공유자산화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나 소유주가 건물의 철거 없이 스페이스 범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여 없었던 일이 된 바 있다.

② 굴업도 골프장 건립

천혜의 해안 절경을 지니고 있고, 매와 덕구렁이,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서해의 보물섬인 이곳은 1994년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결합하여 1년 동안에 걸친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였고, 결국 건설 계획이 철회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2006년도에 CJ그룹 이재현 일가가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C&I 레저산업이 굴업도의 전체부지 중 98.5%를 매입한 후 이곳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립하려는 Ocean Park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위기가 다시 찾아왔다. 이에 환경 및 문화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조직하고, <굴업도를 지키는 문화예술인 모임> 등을 결성하여 이의 지키기 및 알리기 활동을 활발히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2011년 12월 민선6기 송영길 인천시장이 자신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환경훼손이 큰 골프장을 제외한 생태적인 관광단지 개발방안을 CJ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대 전기를 맞게 되었고, 이후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이 굴업도 매입에 투입이 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2014년 7월 23일 C&I 레저산업은 굴업도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막을 내렸다.



③ 선감도 채석단지 신청

덕적군도에 속해 있는 선감도는 섬 둘레가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고, 평지가 거의 없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무인도이다. 하지만 신선세계와 접해 있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경관이 빼어나다. 특히 C자형 호상 해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곳만의 유일한 특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섬이 사라질 뻔했다. 그 시작은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립 계획이 무산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직 반대 싸움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한국해양연구소(현 한국해양연구원)가 선감도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핵폐기장 재추진 논란으로 확산되었다. 덕적면 주민들이 의혹 해소를 위해 섬 매각을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한국해양연구원은 지난 2006년 (주)선도공영에게 매각했다. 선감도를 소유하게 된 이 업체는 골재 채취를 위해 지난 2014년 2월 허가권자인 산림청에 전체 면적의 10%가 넘는 부지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 대다수가 채석장 지정 반대에 나섰고, (사)황해섬네트워크를 비롯한 환경단체들 또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옹진군은 산림청에 최근 엇갈린 의견을 냈다. 인천시는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훼손과 분진 피해 등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옹진군은 섬 지역도로 건설이나 기반 시설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이



유로 찬성 의견을 각각 냈다. 아무튼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 <용진 채석단지 지정사업 신청 취하 요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하면서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⁷⁷⁾

④ 송도유원지 일대 송도테마파크 건립과 송도석산 개발

송도유원지 일대는 1970년대 초 유원지 지구로 지정된 후 해수욕장과 놀이시설 등이 갖춰져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인공 해수욕장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송도유원지는 인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가 들어서는 가운데 운영사의 누적 적자로 2011년 해수욕장을 매립한 뒤 유원지를 완전히 폐쇄했다. 인접 지역도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 소유인 관계로 토지주 간 갈등과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역에 한해 모텔이나 간이 골프장, 카페 등이 들어섰을 뿐이다. 이에 인천시는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송도유원지 일대 ‘장기 미집행 토지’ 107만4,400㎡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 용역>을 지난해 9월 발주하였다.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 등 일정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유원지 시설에서 자동 해제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 한다. 용역 대상지는 옛 송도관광단지 1~3블록, 송도석산, 옛 송도해수욕장, 이견산업 부지 등 송도유원지 내 107만 4천419㎡다.



그 중 핵심은 옛 송도해수욕장이었던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내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다. 이는 연수구 동춘동 일원에 49만9575㎡의 규모로 총사업비 약 7,479억 원을 투자해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인천시가 2008년 당시 유원지였던 대우자동차판매 부지(92만 6952㎡)의 절반에 도시개발사업을 승인키로 하면서 공동주택 등의 분양 이익금으로 나머지 절반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조건을 내걸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2010년 4월 대우자동차판매의 워크아웃과 2014년 8월 파산결정에 따른 법원의 매각으로 2015년 10월 부영그룹이 해당 부지 103만여㎡(테마파크 49만9575㎡, 도시개발사업 53만8952㎡)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대우자동차판매가 부지를 소유했던 송도테마파크는 당초 사업 종료기간이 지난 2015년 12

77) 그러나 최근 선갑도 앞의 바다모래를 퍼내기 위해 용진군과 골재채취업자들이 해역이용협의서를 인천 지방해수청에 제출하였고, 인천시는 모래 채취 신규지정절차를 강행하면서 어업인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월이었으나 부영그룹이 송도부지를 매입하자 인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로 하고 2016년 6월로 연장한데 이어 2017년 12월로 또 다시 연장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그룹은 또 다시 행정절차 완료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테마파크 완공 시점을 오는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인천시는 ‘특혜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된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말 또 다시 4개월을 연장해줬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7월 송도테마파크 사업 조건부 승인을 받은 뒤 9월에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연수구에 제출했는데, 세대수를 당초 계획보다 1040세대 늘어난 4960세대로 하고, 계획인구를 1만 193명에서 1만 2500명으로 늘려달라는 게 골자였다. 테마파크보다 아파트 개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속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사실상 엄청난 특혜를 요구한 것이었으나 인천시는 침묵 상태다. 한편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은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 원대 부당이익과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7일 구속됐다. 인천시가 부도덕한 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대상지인 송도석산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토석 채취장으로, 야산의 절반가량을 골재로 채취했지만 발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해 지난 1994년 채취가 중단된 곳이다. 인천시는 홍물로 10년 넘게 방치된 송도석산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시공사(당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도시



계획시설(유원지)인 송도석산 13만9천㎡에 ‘시민의 숲’ 조성을 추진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용역을 통해 ‘시민의 숲’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원지 개발’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그 이면에는 당시 민선4기 안상수 인천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도시공사는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489억 원을 투입해 민간 소유 부지를 사들였다. 이후 도시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민간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호텔과 골프연습장, 에너지센터, 문화센터, 쇼핑몰, 문화광장, 전망대 등의 컨셉을 마련했지만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였다. 이후 도시공사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이미 투입된 483억원을 정산해줄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협약과 다른 수익사업에 대해 시가 사업비를 보전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상비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인천시는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송도유원지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 변경 등) 수립 용역>을 지난 해 9월 발주하며 송도석산 개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⑤ 애관극장

애관극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으로 인천의 문화유산이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다. 1895년 인천의 대부호 정치국이 협률사라는 공연장을 설립함으로써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1911년 ‘축항사(築港舍)’로 이름을 바꿨다가 1920년대 중반 소유주가 김윤복으로 바뀌며 ‘애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뒤 1960년 재개발하면서 이름을 현재의 ‘애관극장’으로 바꿨다. 1972년 현 탁경란 대표의 부친인 탁상덕씨가 인수하고 1980년대에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듯 애관극장은 개항기부터 시작하여 근현대를 거쳐오며 오랜 역사를 가진 장소적 가치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인천

시민들 대부분이 이곳에서 영화 한 편 안 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법적으로는 소유주의 자산일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시민들 모두의 추억과 기억의 공유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관극장도 2000년대 들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속속 들어서고 인구가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면서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말 지역 언론의 모 지면을 통해 애관극장 매각 소식이 흘러나왔다. 인근에 있는 인천가톨릭회관 철거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애관극장마저 헐리면 어쩌나 하는 시민들의 걱정은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인천시민들> 이름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인천시로 하여금 애관이 계속 인천시민들을 위한 상영관이자 문화시설로 존속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고, 극장주에게도 민간 건설업자나 대기업 자본에 매각하는 일만은 잠시 미루고 애관극장을 인천의 공공문화유산으로 보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인천시민들에게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약칭 '애사모')>가 공식 발족되어 다양한 대응책을 상의하였으나, 정작 극장주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뿐더러 연락조차 안 되고 상황에서 '애사모' 활동도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시의 태도가 일부 확인이 되었는데, 인천시 산하 기구인 인천영상위원회를 통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해 보았다는 정도다. 이를 두고 지역 문화계에서는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으며, 애관극장 매각 문제를 문화적 관점에서 폭 넓게 인식하지 못한 채 극장이라는 한정된 영역으로 사고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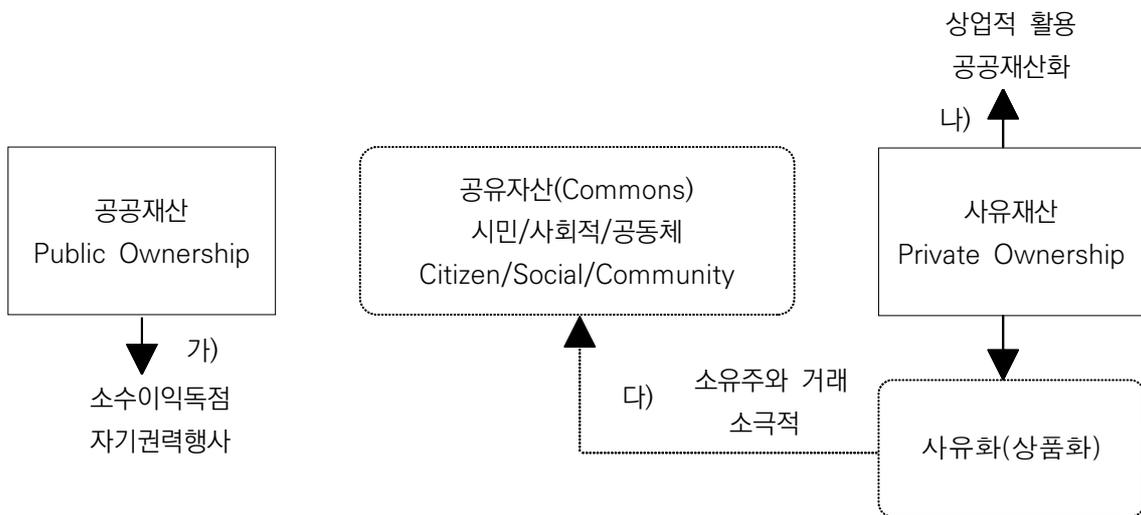


분석과 평가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

이와 같이 공유재(common)로서의 가치와 성격을 지닌 지역 내 공유재산(Public Ownership)과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을 놓고 인천시(장)과 일부 구(청장)이 포함된 지자체가 그 동안 어떻게 소유권과 처분권을 행사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가), 나), 다)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물론 발제자가 임의로 선정 및 소개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괜찮은 사례들도 없지 않으나 공유자산을 두고 인천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도시정책을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는데 나름의 준거가 되리라고 본다.

가)의 경우 공공재산(Public Ownership)을 지자체가 열린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누리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공유자산화(commoning)에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발을 통해 그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상품화에 앞장서거나, 자기 권력의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민간 소유의 사유재산(Private Ownership)을 공유자산화 할 수 있도록 매입을 하거나 지원을 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공유재적 가치와 성격을 박탈시키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빼앗아 오히려 공공재산으로 만드는(주로 주차장) 일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의 경우 사유재산의 소유주가 독점적 이익 확보를 위해 파괴 또는 훼손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나서야 그때 가서 움직이는 소극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경우는 나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닌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나 여전히 상업적인 차원으로 유도하거나 그러한 관점에서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림 2〉 공유자산을 대하는 인천시의 태도 분석

결국 지자체(장)이 해당 재산의 공유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을 행사하다 보니 인천의 도시공간은 공유자산의 비중과 비율이 감소하고 특정 소수의 권력과 이익을 위한 독점화와 사유화가 증대되고 있다. 물론 지자체(장)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차이는 자본주의 이익 논리에 얼마나 경도 내지는 매몰되어 있는가와, 해당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 공유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논의를 시민들과 함께 얼마나 벌여나가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지자체(장)의 성향과는 별개로 특정 자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이 지자체(장)에게 있지 않고 시민에게 있다는 점을 새삼 인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하고 행사할 수 있을까, 로 모아진다. 지자체(장)이 이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의 사고와 의지에만 기대하고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차원의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하여 직접 특정 자산을 매입 및 공유하고 공동체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민자산화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이 인천 지역 차원에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도시권에 대한 요구는 도시 공간의 형성 과정에 행사하는 권력,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고 뜯어고치는 방법을 지배하는 권력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을 말한다.”78)

“도시에 대한 권리는 참여의 권리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각 개인에게 아래로 분배되는 권리가 아니라, 도시 거주자들이 능동적·집합적으로 도시 정치에 관여하면서 스스로 규정해나가는 것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도시가 정치적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도시 정치 공간에 대한 권리이기도 하다.”79)

78)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지음,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8쪽.

79)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강현수 지음,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31쪽.

신자유주의 도시인클로저와 실존의 위기, 거주자원의 공유화⁸⁰⁾

김용창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1. 인클로저와 공유화의 이중운동으로서 도시 이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모든 재산소유(property)으로부터 노동자의 완전한 분리를 전제한다. 일단 자본주의 생산이 발을 내딛자마자 이러한 분리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된 규모로 이 분리를 재생산한다.”(Marx, 1954; 668).

The Mores

Each little tyrant with his little sign
Shows where man claims earth glows no more divine
On paths to freedom and to childhood dear
A board sticks up its notice "no road here"
By John Clare (1793-1864)

황무지

작은 폭군들 각자가 그의 작은 표지로 인간이 토지를
점유하는 곳은 더 이상 성스럽게 빛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와 소중한 유년시절로 가는 길 위에
판자 위로 "여긴 길 없음"이란 통지가 붙어있다.
(Johanne Clare; 1793~1864, 번역: 장성현, 2013)

새로이 땅에 경계를 표시하고 울타리를 치면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인클로저(enclosure) 과정은 얼핏 시골마을에서 이루어진 작은 과정처럼 보였지만 자본주의의와 거대 산업도시의 탄생을 이끈 동력이었다. 마르크스는 땅으로부터 이러한 분리와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을 자본주의 체제의 탄생과 지속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영국 시인 존 클레어(Johanne Clare; 1793~1864)는 나폴레옹 군대와 힘든 전쟁을 치루는 와중에 이루어진 토지로부터 축출과정 때문에 고향마을 헬프스톤(Helpston)이 해체되는 것을 우울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가축에게 풀을 뜯게 할 공유지와 삶의 거처를 빼앗아 고향을 뿔뿔이 떠나게 만든 인클로저 운동에 대해 독설에 가까운 항변과 강력한 저항시를 남긴다. 그에게 인클로저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하루 세끼 먹으면서 나름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던 삶의 터전을 강탈하고, 노예와 속박의 삶을 강요한 찬탈자이자 인간에 대한 배신이었다(오호진, 2015).

첨단 정보통신과 글로벌 공간통합의 시대인 오늘날, 흘러간 시대의 유물인 것 같은 인클로저라는 관점으로 현대의 도시를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인클로저는 과거처럼 농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도시를 비롯한 생활공간 전역에서 존 클레어가 읊었던 것처럼 땅과 공간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재산권 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생존과 거주에 위기를 낳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은 이윤창출과 축적을 멈추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해관계 안으로 포섭해야 할 대상과 영역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으며, 이것을 일컬어 자본의 혁신역량이자 창조적 파괴라고도 한다. 물론 그 과정은 IMF 금융위기나 일반적인 불황국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80) 본 원고는 서울연구원 역음, 『희망의 도시』(한울, 2017), 176-215에 게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이 커다란 대가와 고통을 치러야 한다. 자본의 이러한 포섭과정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지 않던 영역과 대상으로 그 이해관계를 새로이 펼치고, 이미 자리 잡은 이해관계는 더욱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미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작동하고 있는 도시공간이 다시금 자본의 중심적인 활동무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이 활력을 찾으려는 쇠퇴한 산업도시의 필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공간통합 시대에서 도시 공간 자체가 자본일반에게 이윤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종래의 공간은 사회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틀이나 하부구조라는 인식, 일종의 '담는 그릇'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품으로서 공간의 생산, 특히 자본집약도 높은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거대공간개발사업(mega project)은 이윤창출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출구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공간네트워크의 구축에서 도시시스템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자본에게는 도시공간의 생산이 일거양득을 안기는 영역인 것이다. 아울러 거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종래의 기업대출과 같은 조달방식으로는 어렵게 되었고, 이른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 방식을 활용하면서 도시공간의 생산은 금융자본주의 발달의 산물이자 금융상품의 혁신을 이끄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정책들이 계속해서 도시개발 지형을 전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으며, 도시공간의 생산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재생산하는 인큐베이터이자 생성적 거점(generative nodes)으로 기능하고 있다(Peck, et al, 2013).

이제 도시공간은 21세기 들어서 더욱 더 중요한 자본의 포섭대상으로서 떠올랐으며,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도시 인클로저를 활용하고 있다. 과거 농촌지역의 인클로저가 자본주의 시스템의 탄생과 산업도시의 발전을 이끈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는 도시 인클로저를 통해 과거 시초(원시적)축적기(primitive accumulation)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탈취를 통한 자본축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 명칭과는 달리 자유방임적 탈규제가 아니라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시장규범을 다시 만들고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개별 자본 스스로 발굴하지 못하거나 정당화 명분을 쌓지 못하는 영역과 대상에 상품논리와 시장논리, 국가를 등에 업은 시장화라는 모순 논리가 관철되도록 만든다(Birch and Siemiatycki, 2016). 국가와 시장의 얽히고설킨 거미줄이 도시공간은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지고, 인클로저가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도시공간의 생산에서 인클로저가 만연한다는 것은 국가와 시장 모두로부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영역도 배제당할 수 있다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인클로저는 기존의 공유자원(common)을 배타적인 사적소유대상으로 전환시키면서 그 자원에 대한 공유권(입회권, common right)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인클로저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 더해 주거의 상실처럼 기존에 향유하던 이해관계나 자원들을 탈취(dispossession)하여 재배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적 합리성으로 길들여진 행위주체를 만듦으로써 사람관계, 장소, 일상생활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경쟁의 논리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모든 것을 칸막이로 가두는 것을 포괄한다(Jeffrey, et. al., A., 2012; Hodkinson, 2012).

최근 들어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인클로저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 것은 인클로저와 자본축적 사이 관계를 다시 주목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경로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에 상응하여 공간구성방식(spatial formations)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이러한 이론적 규명을 토대로 대안적 공간실천 전략 또는 플랫폼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적 팽창은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은 공유화(commoning)로 모색하는 일종의 인클로저와 공유

화의 이중운동으로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다(Sevilla-Buitrago, 2015; Vasudevan, 2015; De Angelis 2007).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와 새로운 의미의 인클로저가 잘 드러나는 두 대상을 사례로 신자유주의 도시화를 인클로저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하나는 도시공간을 새로운 공간상품 영역으로 포섭하는 도시재생이다. 작금의 도시재생은 토지재산권의 재편성과 국가권력을 동원한 법제적 폭력, 시장효율성 기반으로 공익담론의 변경을 통해 거처와 생활터전의 상실을 수반한다. 다른 하나는 공간개발 및 주택의 생산에서 지배적인 수단으로 떠오른 금융의 증권화가 가져온 주택압류와 주거위기이다. 이는 과거의 저축과 미래의 노동성과를 모두 빼앗는 부채를 평생 짊어지는 삶과 탈취기반의 자원 재배분을 동반하며, 도시에서 기본 거주 자체를 상실케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삶의 터전과 주거위기의 대안으로 자율도시운동과 더불어 거주자원의 공유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로서 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을 살펴본다.

2.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

1) 현대 인클로저의 의미

전통적인 의미의 인클로저는 영국에서 15세기 이후 19세기에 걸쳐 공유지, 미개간지, 황무지, 개방경지, 교회 토지 등에 울타리를 치고 경계표시를 하여 사유지로 전환시키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농사짓고 살던 기존 농민들을 합의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내쫓은 과정을 말한다. 인클로저에서 일차적으로 이득을 본 집단은 젠트리(향신; 鄉紳, gentry)라 불리는 지주계층이었으며, 이들은 후에 의회 등으로 진출하고 상업·금융업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성장하였다.

인클로저는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로서 곡물가격 보다 양모가격이 급등하자 봉건영주들이 경작지를 목장지로 전환시키면서 일어났다. 민간부문의 비합법적 과정을 통해 토지의 사유화를 추구하였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수요가 급증하자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8세기~19세기에 걸쳐 의회의 입법과정(parliamentary enclosure)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를 민간 주도적 인클로저라고 한다면 2차는 국가의 정책개입을 통한 인클로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클로저, 특히 2차 인클로저를 통해 개방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과 토지의 사유재산 제도 확립, 토지병합과 대토지소유, 자본가적 농업경영,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근대적 임금노동자의 창출, 산업도시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초 축적의 기초를 이루었다(김용창, 2015a; Wordie, 1983; 田代正一, 2007).

인클로저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탄생과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형성과 지속에서 근간을 이루는 사유재산제도 형성과 유지, 생존근거지인 토지로부터 지속적 배제,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즉 잉여가치 생산과 전유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임금노동 기반의 사회관계 형성과 지속에서 인클로저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자본주의의 가치 및 잉여가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Marx, 1954).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사람의 분리, 즉 노동력 이외에는 달리 생존수단이 없는 인구집단을 끊임 없이 만들어야 한다. 토지 인클로저는 이러한 인구집단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생존

근거지로부터 축출당하는 이러한 과정은 사회나 개인에게 가장 냉혹한 변혁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클레어의 시는 이러한 야수적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Hodkinson, 2012; Perelman, 2000).

이와 같은 전통적 해석의 인클로저는 자본주의적 포섭(subsumption)의 구체적 실행과정이며,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영역들을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 흡수·통합함으로써 지속적 자본축적을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인클로저가 단지 지나간 시절의 자본주의 유물이 아니고, 여전히 자본주의의 탈바꿈과 공간편성 방식에 핵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관점이 인클로저의 현대적 해석이다. 새로운 해석들은 재산목록이나 사적소유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새로이 사적재산으로 전환시키는 과정, 사람들이나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공유자원이거나 재산으로부터 다시금 사람을 분리시키는 과정에 인클로저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현대 자본주의의 전환과정과 성격을 이해하려고 한다.⁸¹⁾

예컨대 하비(Harvey)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해 탈취를 통한 축적체제라고 부르면서 구체적인 작동방식으로 제시한 네 가지 방식은 현대 인클로저의 구체적인 작동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① 새로운 이윤창출 영역을 만들기 위한 민영화와 상품화 과정, ② 인수합병, 파생금융상품, 주식시장 등 자산가치의 재배분과 잠식을 위한 자본의 금융화 과정, ③ 경제적 부를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전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위기관리와 조작과정, ④ 복지국가 시스템을 개혁하고 상위계급에서 하위계급으로의 부의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재분배 과정 등이 그것이다(Harvey, 2003).

이러한 인클로저 작동영역과 대상은 대자본의 저개발국 토지수탈(land grabbing)이나 낙후 도시지역의 강제수용과 같은 고전적인 토지영역은 물론, 물, 자연경관, 에너지, 공적연금, 교육, 의료, 주택, 가사영역, 교통, 공개광장, 공원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에 따라 사유재산권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과 사회 사이 관계 설정 변화, 자연자원의 사유재산화, 자연의 탈자연화에 대한 논의도 인클로저와 탈취기반 축적으로 연결된다. 이때의 인클로저는 과거 시장거래에서 방패가 쳐져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가격을 매기지 않던 대상이 시장의 계산 대상으로 되고, 양도성과 교환성을 부여받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클로저의 공간적 차원을 보면, 신자유주의 도시화가 구역, 거리, 골목, 마을, 도심부, 도시, 국가, 세계 등 공간규모와 단위를 유연하게 재구성하거나 다시 짜기(re-scaling)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인클로저 역시 다양한 공간단위와 규모에서 울타리치기(new urban enclosures)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다양한 영역과 공간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율도시 운동이나 협동조합운동처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공유화 운동도 인클로저 반대의 차원에서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odkinson and Essen, 2015; Blomley, 2008).

이러한 새로운 인클로저 해석들은 자연자원을 비롯한 새로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상품화와 도시공간의 재편성 현상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용어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인클로저의 현대적 의미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 과거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 전 영역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 발달하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합법적 장치를 가장하여 새로운 사유화와 상품화, 재산권의 재편성을 꾀한

81) 이러한 시초축적과 자본축적, 인클로저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전통적인 해석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제조건을 탄생시킨 한번뿐인 빅뱅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과정으로 해석하며, 레닌이 대표적이다. 다른 해석은 로자 룩셈부르크 관점의 해석으로서 과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성숙자본주의에서도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즉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개념은 자본주의에서 일종의 선형성을 갖는 것이며, 시공간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지속적 과정으로 본다(김용창, 2015a).

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으로 현대적 인클로저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도시재생과정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사적편익이나 사적자본을 위해 국가기구를 이용하여 기존의 공간이용 이해관계를 새롭게 사유화하거나 자본 중심으로 재편성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둘째, 공유재산이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나 대상에서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를 도입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처분권을 확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기존의 공간이용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공성이나 공공영역을 해체하여 새로이 사적 이해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현대적 인클로저 과정은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의 작동 아래 비자본주의적 사회공간들을 포섭함으로써 공간의 추상화와 상품화 운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토대를 새로이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제도적·문화적·정신적 시스템을 결합하는 공간적 합리성 (spatial rationality)의 총체적 재구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공간편성의 핵심특성이자 과정이 인클로저인 것이다(김용창, 2015a; Sevilla-Buitrago, 2015).

2) 도시 인클로저의 양상

신자유주의의 놀라운 점은 시장경쟁과 성장 이데올로기의 촉진을 통해 탈취와 인클로저가 합법적인 동시에 합리적이며,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자연스런 결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Soja(2010)는 공적·사적 공간 모두에서 인클로저 현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거대 쇼핑공간의 생산에서 첨단 보안·경보장치, 레이저와이어 쓰레기통에 이르기까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통제와 공간적 통제를 위한 세세하고 정교한 기법들(microtechnologies)이 일상생활에 횡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현대 도시에서 인클로저의 기법들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공간이 이렇게 인클로저의 주 무대가 된 것은 도시공간 자체가 자본집약적이고 활동밀도가 높은 관계로 어느 누구의 개별적인 노력이나 투자가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 상권과 장소성 형성처럼 집단적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재화, 즉 공유자원이 도시에는 많기 때문이다. 이를 일컬어 도시재화(urban goods)라고 부르기도 하며, 도시는 공유자원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도시화는 개별적 기여를 쉽사리 구분하기 힘든 공유자원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과정인 동시에 특정 이해집단이나 자본분파들이 이들 공유자원이라는 신천지를 놓고 배타적으로 독점하고자 이해관계의 갈등을 촉발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Sheila and Iaione, 2016; Borch and Kornberger, 2015; Harvey, 2012).

새로운 자원의 사용과 그 재편성을 둘러싸고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이해관계 충돌로서 도시 인클로저 과정은 추상적으로 말하자면 구분하기와 담쌓기를 통해 현대 도시생활에서 배제와 소외, 폭력의 생산과 타자 만들기 과정이며, 그것을 공간상에서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시공간을 일컬어 모순적 관계의 산물, 충돌하는 이해관계의 결과물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결합한 집합체로서 도시, 이른바 도시 아상블라주(city as assemblage)라고도 표현한다(McFarlane, 2011).

1980년대 이후 도시공간의 변화를 도시 인클로저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한 것은 아나키스트 집단인 「한밤의 쪽지연대」(Midnight Notes Collective)이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통합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전개되는 경제위기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인클로저를 전지구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자연자원처럼 새로운 대상을 이윤창출을 위한 상품화와 사적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도시 재생이나 금융위기 등을 기회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소유 또는 재산 관계를 해체하여 새로운 자본축적 출구를 찾으려고 할 뿐만이 아니

라 축적과정 자체의 광범위한 재조직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현대의 인클로저는 고전적인 토지수탈에서부터 인간정서의 연대성 해체, 공적 생활서비스의 사적 공급, 비물질적 대상의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고 주장한다(Sevilla-Buitrago, 2015; Jeffrey, et al, 2012; Vasudevan et al, 2008;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⁸²⁾

자본축적 과정의 광범위한 재조직화 차원에서 인클로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Hodkinson(2012)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세 차원의 결합을 통해 도시 인클로저가 자본축적의 지속과 확대 재생산에 기능한다고 본다; ① 기존 재산과 자원에 대한 권리관계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사유화(privatisation), ② 접근성과 자원배분변동을 의미하는 탈취(dispossession) 및 영토탈환식의 장악과 개발(revanchist), ③ 신자유주의적 합리성과 자본주의적으로 길들여진 주체 만들기(capitalist subjectification).

오늘날 도시 인클로저는 우리 주변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도시공간이 새롭게 개발 또는 재생되면서 해당 공간의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총칭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적 의미로 본다면 공간의 교환가치적 상품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퇴락 주거지역 재개발을 통한 중상류층으로의 거주민 교체이다. 공공임대주택의 불하와 사유화 과정은 소유자사회의 구현을 명분으로 노동자 계급의 연대의식 균열을 위해 이루어졌다. 도로, 에너지 등 공공하부구조와 공공서비스 공급에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과 증권화 기반의 민간투자금융(PFI)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들은 자본의 새로운 출구와 공적 서비스의 사적공급을 잘 보여준다. 장소의 브랜드재구성(rebranding)을 통해서 기존의 장소정체성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에 해당 장소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주민과 이용자들을 교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 시민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이 보장되면서 다양한 집단이 이용할 수 있게 하던 기존 도심부 공간의 다양성을 해체하여 거대자본을 위한 동질적인 대규모 쇼핑몰로 개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집단의 지배적 이용으로 전환하는 지금의 도심 재생은 전 세계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흔한 도시 인클로저 과정이다. 사유재산가치 보호와 공통이익에 기초한 주거단지 개발(common-interest housing developments; CIDs)은 공간과 사회 측면 모두에서 또 다른 도시 인클로저의 대표적 사례이다. 거대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주거단지 개발은 다양한 고급 편의시설과 서비스 및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급증하여 2015년 현재 33만 8천개의 단지에 6천 8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공공적·민주적 절차에 근거한 통치가 작동하지 못하자 스스로 고품질의 거주와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역설을 보여준다. 이러한 주거지역은 조합주의적 형태를 띠면서 사적자치원리가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한 구성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적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 사적통치체제(private government)에 기초한 유토피아, 즉 프리바토피아(privatopia)를 추구한다(McKenzie, 2016).

3) 도시 인클로저와 재산권

82) 전통적 인클로저 해석과 구분되는 새로운 인클로저 해석들은 인클로저의 재출현을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려는 관점과 자본주의에 본래적인 항구적 특징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주기적 과잉축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국면으로 해석하는 대표적 입장은 Harvey를 들 수 있고,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는 De Angelis를 들 수 있다.

현대의 도시 인클로저 작동은 많은 경우 인종적·성적 분화 및 배제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고, 시장효율성 촉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장소전쟁'이라는 미명아래 민주적 의사결정을 우회하는 지배엘리트 중심의 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는 도시하층계급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축출·배제하면서 보다 많은 이윤을 낳을 수 있는 공간의 생산이다. 따라서 이들의 공간 점유나 이용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는 중요한 인클로저 쟁점이 된다.

앞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도시공간의 재편성과 인클로저의 핵심에는 늘 재산권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그 구체적 형태는 사회경제체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대규모 토지집중을 초래하는 토지수탈은 개발도상국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며, 거대도시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슬럼과 비공식 주거지의 급증, 연간 5백만 명이 처해 있는 강제철거 위험은 거주자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부족의 관습적 토지보유가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과 아동들의 토지접근권 박탈로 인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불안과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리고 체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는 중국의 집단적 토지분쟁(mass incidents, 群体性突发事件)처럼 재산권 체제의 개혁에 따른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도시재생, 경제개발촉진지역 정책은 국가개입과 공용수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유재산 박탈을 낳고 있다. 이처럼 재산과 소유, 특히 토지와 주택의 소유, 점유, 통제를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21세기 초반의 현재 시점에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당면한 글로벌 쟁점이자 현상이다(Jacobs, 2013).

재산권은 전통적으로 진보적 사고방식에서는 발전을 가로막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사적 재산권이 소수의 손에 생산수단의 집중을 촉진해왔을 뿐만 아니라 소수가 무제한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도록 만들었다는 인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직면한 재산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재산권을 인권차원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7조는 모든 사람은 혼자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2차대전 후 냉전시기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사이 타협의 산물인 이 조항은 재산의 소유 형태, 소유대상으로서 재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모호성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논의 당시에는 현재와는 다른 맥락을 갖고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작성에서 기본적인 초안역할을 했던 험프리(Humphrey) 초안의 재산권 조항은 "모든 사람은 품위 있는 삶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고, 개인과 가정의 존엄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며, 그 재산은 임의로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다. 아울러 이 초안은 국가의 부는 모든 국민에 속하며, 생업에 필요한 만큼 국민소득에 대한 공평한 몫의 권리를 갖는다는 일종의 재산권 형태로서 사회적 내용도 담고 있었다. 품위 있는 삶과 인간 존엄성에 필수적인 물질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으로 본 것이다(Morsink, 1999). 인권으로서 재산권 전략을 검토할 때 중요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논리이다.

현재 유엔은 안정적인 토지점유와 토지에 대한 접근권은 거주와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하며, 인권실현과 빈곤을 줄이는데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⁸³⁾ 모든 사람을 위한 토지재산(Land Right for All)이라는 실행전략이 성차별, 취약집단의 사회적 배제,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라는 3대 반인권적 현상을 해소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

83) 이러한 인식을 하는 이유는 저개발국에서 토지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가 주거상황 개선, 토지 및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며, 시민참여 확대, 공공서비스와 신용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 인권으로서 재산권 논의는 서구사회에 만연한 소유적 개인주의에 기반 한 재산권 개념과는 다르게 남녀, 인종, 민족 차별 없는 인권의 동등한 적용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뿌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UN-Habitat, 2008).

재산권과 사유재산 개념은 자연적이거나 초역사적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적 한계를 갖는 개념이다. 실무적으로도 사회적·법적 제도로서 재산과 소유개념은 늘 진화하고 있다. 한때는 사람도 재산과 소유의 대상이었으며, 고유의 지식이 사적재산으로서 보편적 거래대상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원래 재산권 개념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사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선언한 물건들의 사용·수익에서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재산권 개념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의미로 축소되었다(김서기, 2012). 오늘날 도시 인클로저와 그 기저를 이루는 재산권 갈등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인권으로서 재산권 맥락과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자본주의적 재산권 맥락 사이 거대한 충돌이라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3. 도시재생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인클로저

1) 도시재생에서 사적공용수용과 인클로저

오늘날 도시에 대한 연구와 정책 모두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는 말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 산업도시의 탈공업화와 교외화에 따라 발생한 도시 내 퇴락지역(blighted area)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접근성이 좋지만 과소이용 상태에 있는 도심부나 도시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증가한 가치를 사유화하는 도시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로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적 의미에서 퇴락지역은 탈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공지 또는 버려진 토지와 주택, 공업화 시대의 유산으로서 오염된 부지, 토지와 시설의 장기간 과소이용,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낙후된 공공서비스 환경 등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퇴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정부와 도시상황에 따라 매우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퇴락상태와 퇴락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작품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만큼 많은 논란과 이해관계 충돌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형적인 도시 인클로저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적인 절차인 토지정리 과정은 공적사용(공익, public use)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주권을 동원한 강제수용(공용수용, eminent domain) 방식으로 사유재산권 박탈과 이전을 수반하며, 실정법상으로는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일어난다. 실제로는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공용수용이며, 이를 일컬어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 사적공용수용(private-public tak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적공용수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로는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미국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오늘날 미국 도시개발과 재생 사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첨단연구개발시설을 짓기 위해 일반 가족의 집을 허물고, 카지노 호텔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미망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프로스포츠 팀의 경기장, 거대유통자본의 쇼펍몰, 대자본의 오피스빌딩을 위해 작은 가게와 주택을 강제 철거하는 일들이 공익사업이라는 명

분야에 강제매수(공용수용)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용창, 2012b).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러한 인클로저 과정은 행위양식 통제와 탈취라는 측면에서 시대와 대상을 달리한 시초축적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행위양식 통제 및 자본주의적 행위주체로 길들이기 측면에서 시초축적 시기의 토지 인클로저 시행과정은 법제적 정당성을 위해 토지 인클로저법(Land Enclosure Acts)을 제정하는 동시에 방랑자와 임노동자의 행동문화에 대한 통제규범을 만들었다. 18세기 영국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했던 것은 반인클로저와 공유경제(common-right economy) 주장에 대한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더불어 인클로저가 곧 국익이라는 담론을 널리 확산시킨 것이다. 반대로 공유경제 옹호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감과 불신을 드러냈으며, 국가경제성장과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였다. 그리고 공유지 점유자들(commoners)에 대해서는 후진성의 본보기, 추악한 집단, 게으르고 야만적이며 위험한 존재, 미개인,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었다(김용창, 2015a; Neeson, 1993; 25-33).

이러한 인클로저 이데올로기는 사적공용수용에 기초한 현대의 도시 재생정책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2002년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법에 서명하면서 해당 사업지구들에 대해 지역사회에 아무런 가치를 더하지 못하면서 문제만을 유발하는 수많은 흉물(eyesore)들로 규정하였다. 강제수용 관련 판결에서는 인종적·계층적 편견이 더해져 도시 재생 사업지역은 해당 거주민을 짐승의 상태로 만들어 정신을 질식사시키는 곳, 지역사회의 종기이자 병충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재생사업지구지정 자체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은 재산권의 강제박탈을 동반하는 공용수용의 정당화 기반인 공적사용 또는 공익논리의 변경이다. 공익에 기초한 공용수용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해당 재생사업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가 여부는 민간사업에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기존 거주민과 이용자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안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는 공공적 소유라는 좁은 의미의 공익개념을 버리고 경제적 공익개념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공익개념으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큼 자본의 공간지배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쉬워지고 있다. 전형적인 인클로저의 모습이다.

미국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익개념의 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가장 잘 보여준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주법원의 판례 역사를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세 범주의 공익개념이 나타나며, 20세기 중반 이후로 올수록 재산권의 강제박탈에 보다 넓은 공익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수용한 재산을 공공이 소유해야만 하는 '공공소유'(public ownership)가 공익이며, 가장 좁은 의미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관점은 19세기 초 이래 민영철도회사 등과 같은 사기업에게 공용수용권을 부여하면서 공적소유 기준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두 번째는 '공중에 의한 사용'(use by the public), 일반공중의 '공적 접근'(public access)을 공익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수용이후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가는 의미가 없고, 중요한 판단기준은 해당 재산이 권리의 차원에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가 여부가 된다. 공적 접근이 보장된다면 정부가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여 민간의 사적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기준 역시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좁은 의미의 공익개념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익을 '공적목적' 또는 '공적편익'(public purpose or benefit)으로 해석하는 입장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에 해당한다. 20세기 중반 이래 미연방대법원은 통상 이 관점을 지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가장 지배적인 관점이다. 경제개발 목적을 포함하여 공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당성이 있으면 어떤 목적으로라도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공용수용 권한의 행사에 제한이 없게 된다(김용창, 2012b).⁸⁴⁾

오늘날 이러한 공적편익으로 꼽는 대표적인 목록이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조세기반 강화 또는 조세수입 증가, 지방재정 확충 등이다. 즉 이러한 사업효과를 내세우면 공익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사적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인 개인 재산권 박탈도 합헌이고 정당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큰 문제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실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는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사업효과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약자의 강제적 재산권 박탈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공간은 고급 사무업무공간, 스펙타클 도시경관, 거대 쇼핑몰, 호텔, 거대 주상복합건물, 고급폐쇄주거단지 등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 도시경쟁력 확보의 상징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양상은 합법을 가장한 인클로저의 또 다른 측면인 탈취적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러한 탈취적 성격은 일차적으로는 공용수용 전후의 재산가치 변동과 향유주체의 불평등한 이익배분에서 나타난다. 공용수용의 대가는 통상 공정시장가격으로 산정한 보상액이다. 이를 정당보상이라고 하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의 재산권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시장가격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시장환경 하에서 시장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래 가능한 재산만을 보상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재산권자가 해당 재산에 부여하고 있는 비시장거래 가치나 재산권 이전 후의 사후적인 다양한 비용과 손실을 포괄할 수 없어 늘 과소보상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격개념 기반의 보상개념은 앞서 살펴본 좁은 의미의 재산권 개념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공간과 생활공간 대체에 따른 다양한 사항들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보상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은 공권력을 매개로 강제로 재산권 이전이 이루어진 후의 사적 개발 주체가 갖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개발사업에서 재산가치는 통상 소유권 이전 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적공용수용의 상황에서는 마지막 소유자가 되려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태를 유발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개발사업에서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개발업자, 건설업자, 최초의 아파트 수분양자의 손에 들어간다. 이처럼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이익의 호혜성 측면에서도 큰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Cohen, 2006).

문제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공익개념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도시재생지역에서 사적자본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려는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공용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있다. 이는 사적이익으로 뒤얽힌(private tangled) 사회적 규범들이 공적공간과 공간의 공공성, 자원의 공유성을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maral, 2015).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처럼 매우 넓은 의미의 공익개념에 근거하면 자본투자를 많이 하거나 토지이용 집약도를 높이는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모조리 공익사업에 해당하기에 언제 어디서 평범한 소유자의 재산권이 강제로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정부가 공용수용 권한을 행사하여 한 개인의 재산을 다른 개인에게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조차 사적이익을 위한 강제몰수(condemnation)의 유령이 모든 재산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클로저의 수혜자들은 평범한 소유자들을 희생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부자이고, 강력한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해당 재산이 생활수단의 대부분인 약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공용수용은 거주와 생활 모두에서 기초적 생존권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사유재산제도 확립의 토대를 놓은 인클로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의 도시 인클로저 상황에서 사

84)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3대 판결이 1954년 *Berman* 사건, 1984년 *Hawaii Housing Authority* 사건, 2005년 *Kelo* 사건 판결이다.

회적 약자의 사유재산은 더 이상 신성불가침(sanctity and inviolability)의 권리가 아닌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공용수용을 매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유재산권의 차별, 사익을 위한 공용수용 남용, 공적 사인수용(public-private taking), 사칭수용(pretextual taking), ‘뒤집어진 로빈 훔’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김용창, 2012a, b; Coughlin, 2005).

한국에서도 공용수용을 규정한 100개의 개별 법률 중 민간에게 수용권을 허용한 법률은 49개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사적자본을 위한 수용판례 역시 미국과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아산시 당정면 삼성전자 산업단지 판례(2009. 9. 24. 2007헌바114 전원재판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 바 있다. “산업입지가 원활히 공급된다면 산업단지의 건설이 용이해 질 수 있고, 따라서 산업단지의 건설을 통하여 효과적인 경제적 발전 내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경제적 발전은, 그간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발전에서도 큰 초석이 되어왔다. 그와 같은 경제의 발전이 해당 국가공동체에서 영위되는 삶의 문명사적 수준을 신장시킨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이 사건 수용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출처: Dwight Merriam, Kelo v. New London(2005)

〈그림 1〉 New London시에서 이루어진 거대 제약회사 Pfizer의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2) 글로벌 금융위기, 부채자본주의와 인클로저

도시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금융의 증권화 방식에 더욱 더 의존하면서 도시공간과 생활은 글로벌 금융자본의 논리에 그만큼 포섭되고, 특히 위험을 분산시키고자 만들었던 파생금융 상품이 역설적이게도 위험과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도시공간이 금융자본에 얽히면서 자국 또는 도시자체의 경제논리가 아닌 외부의 충격에 취약해졌고, 위기의 글로벌 동조현상, 즉 위기의 전염효과 또한 심화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를 매개로 하여 도시에서 생활터전과 주거의 상실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근한 예로 2007년 미국 주택금융 부문에서 초래된 금융위기는 은행위기, 신용경색,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붕괴를 동반한 대형위기로 전 지구적 경기침체와 주거불안정을 낳았다. IMF가 21개 선진국 경제를 대상으로 지난 50년간의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122개 경기침체를 분석한 것을 보면, 글로벌 경기침체는 선진국, 신흥성장국, 개발도상국 등을 가리지 않고 서로 서로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들 사이 동조현상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부도, 투자은행의 부도, 환율

위기, 자산가격 급락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금융스트레스는 지구화된 금융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일 사태로 변지는 경향을 보인다(IMF, 2009). 지구공간의 이름도 모르는 어느 한 동네의 개별 거주 장소와 가족의 삶이 자신들이 제공하지 않은 원인으로 위협받고 있는 시대이다. 그만큼 거주지의 실존을 위협하는 금융위기가 지구환경 전체 차원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들어 주거부분이 더욱 취약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주택이라는 상품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와 거래구조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산층 생활과 성공의 핵심요소로서 주택의 소유를 꼽고 있으며,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건설 자본의 회전율을 높이면서 보다 많은 이윤을 실현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택상품의 빠른 소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주택은 아주 비싼 상품이기에 때문에 개인의 저축만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신용시스템과 다양한 세제지원정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활성화와 거래촉진을 위해 주택금융의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대출받기 어려운 계층에게도 약탈적 대출을 감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동시에 은행자본의 회전을 제고와 대출확대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담보로 잡고 돈을 조달하는 다양한 증권화 방식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금융자본주의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부채자본주의의'와 그 위기의 핵심에 주택소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임차인, 잠재적 자가소유자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소유를 둘러싼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특히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에서 주택에 대한 소유자사회(ownership society) 모델은 이러한 부채자본주의적 주거소비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 모델은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와 국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보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커지고 정치참여가 활성화된다는 모델이다. 이러한 주택정책 모델에서는 부채자본을 활용한 주택소유를 더욱 더 장려하게 된다. 그에 따라 거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점유의 안정성으로서 주택정책이 아니라 금융위험을 감수하는 주택소유 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사람들의 주거고민을 '고위험 금융모험'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에서도 점유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보다는 주거용 담보대출의 채무재조정과 같은 금융대책이 주택시장 안정화 계획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Dyal-Chand, 2011; Dickerson, 2009).

그러나 이러한 부채자본주의에 근거한 주택소유정책 모델은 저성장과 고용불안정 시대에서는 매우 취약한 모델임이 드러났다. 주택소비자 입장에서 기회비용이 크고, 더 이상 유용한 선택 대안이 아니다. 2007년 미국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대규모 주택압류(foreclosures)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융위기는 주택소유와 주택의 존재이유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즉 주택시장의 붕괴와 주거의 상실을 유발하면서 인간의 실존성과 생활세계를 일거에 무너뜨린다. 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불어 닥친 인위적인 경제재난과 금융재난이 만드는 생활공간의 박탈과 봉쇄이며, 경제난민·주거난민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부채를 권장하는 주택금융정책과 금융위기를 매개로 한 사실상의 강제적인 재산이전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압류는 오늘날 가장 강렬한 축출 사례를 보여준다. 주택구입에 들어간 평생 노동의 성과가 한순간에 날아 가버리는 것은 물론, 대출금을 갚지 못함에 따라 종종 무주거 상태로 빠지게 되고, 야영상태, 이동주거, 차량주거, 텐트촌 거주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된다. 주거불안정은 일차적으로 상수도, 에너지,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접근에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신용등급 강등과 결합하여 고용불안정과 다양한 시민참여를 어렵게 만든

다. 임대주거를 마련하는 경우도 강제적인 주거이전에 따른 생활불안정과 불충분한 조건들을 감내하게 만든다. 가족과 개인의 지역사회 기반과 사회적 네트워크 해체를 수반하며, 어린이의 정서불안과 학업성취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마디로 주택압류를 통한 주거박탈은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거주자의 본성을 급격하게 해체시키는 것이고, 생활의 해체를 의미한다. 나아가 압류주택의 증가는 지역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부동산가치하락,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압박은 물론, ‘깨진 창(Broken Windows)’ 이론의 주장처럼 범죄, 방화, 기물파손, 빈곤 등의 증가로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성과 사회적 유대감을 해치고, 지역사회의 퇴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Immergluck, 2016; Parr, 2015; Kenna, 2011).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경기침체로 텐트촌에 거주하는 하층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모여 있는 노숙자들의 텐트

집값이 비싼 영국 런던에서 중하층 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보트. 이들을 ‘하우스보트(houseboat)족(族)’이라고 부름

〈그림 2〉 금융위기에 따른 실존으로서 거주자의 위기

그리고 이러한 압류위기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차원에서 막대한 재정투입을 해야 겨우 진정시킬 수 있고, 진정 후에도 치유하기 힘든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산물로 남긴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미국의 2007년 주택금융 위기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은 물론, 깡통주택(negative equity)의 양산, 대규모 주택압류를 가져왔고, 수많은 주택들이 미점유방기(vacancy and abandonment) 상태로 버려졌다.⁸⁵⁾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연방주택저당공사(Fannie Mae)와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Freddie Mac)의 긴급구제를 위해 총 1,875억 달러(약 210조원)를 투입하였고, 이어서 7,000억 달러(약 780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을 마련해야 했다. 주택압류와 방기지역의 회생을 위해 「근린지역안정화 프로그램(NSP)」으로만 200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70억 달러(약 7조 3천억 원)의 연방 자금을 투입하였다(김용창, 2015b).

오늘날 글로벌 경제체제와 금융위기의 상존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주거난민을 지구적 공통현상으로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미국의 주택압류와 텐트촌, 이동주거, 영국의 보

85) 미국의 주택금융위기 때 2008년 한 해 동안 120만 호의 주택압류가 발생했고, 2009년 초에는 이미 방기 주택의 수가 1,400만 호에 이르렀다.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연방의회는 2008년 「주택경기 및 경제회복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 HERA), 2009년 「미국경제회복 및 재투자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잇달아 제정하였다. 아울러 압류당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법으로 2014년 만료의 기한부 「압류주택의 임차인보호법」(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을 제정하였다.

트족 등이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고도성장을 지속한 중국도 마찬가지다. 푸얼다이(富二代, 부를 물려받은 사람), 빈얼다이(貧二代, 가난을 대물림한 세대), 이쭈(蟻族, 개미족), 팡누(房奴, 집의 노예)라는 용어가 일상적이다. 주택구입에 과도한 부채를 짊어지면서 나타나는 팡누는 중국 판 하우스 푸어로서 일생에 걸쳐 대출금을 갚으면서 집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오지도 않은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현재의 삶을 꾸리기 위해 돈을 빌려야만 하고, 그 빚을 갚는 것으로 일생을 허덕대며 사는 평생 부채인생과 주거상실 위기가 지구자본주의 시대 일반인 삶의 양식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은 미국과 같은 대규모 주택압류와 거처의 상실을 동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는 글로벌 전염성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주택과 얽힌 과도한 가계부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의 이른바 하우스푸어(house poor) 논란도 이러한 부채자본주의의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2016년 1분기 말 현재 총 가계부채 규모는 1,223조 7천억 원이다. 하우스푸어 규모는 대부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에 따라 정의와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소 3만에서 최대 157만 가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 위험집단은 40대~50대, 대졸자,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 비교적 높은 고소득·고자산 비중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중산층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논의가 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추정과 부동산시장의 붕괴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치우쳐 있지만 부채자본주의 기반의 주택정책 모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표 1. 한국의 하우스푸어 관련 추계연구

연구기관	추계방법	추계규모(가구)	주요 특징
새누리당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순부채 상태,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완제 어려움 •중위험군: 순자산 상태, 소득기준 현상유지불가,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상환가능 •잠재위험군: 순자산상태, 소득으로 원리금상환가능, 거주주택처분으로 부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군: 3.2만 •중위험군: 7.0만 •잠재위험군: 18.2만 •상기합계(하우스푸어): 28.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의 분석자료 이용 •잠재적 위험군중 거주주택 처분해야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가구, 중위험군 중 거주주택 처분해야 하는 가구, 고위험군의 자가가구(20%)를 하우스푸어 대상으로 간주
현대경제연구원(이준협·김동빈,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 부채로 산 주택보유자, 원리금상환 부담과 가계지출 축소가구 •협의: 부채를 진 1주택가구, 상환부담과 가계지출축소, DSR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의: 156.9만(549.1만 명), 상환가능 12.7만 •협의: 108.4만(374.4만 명), 상환가능 9.1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파트를 가진 30-40대의 중산층 •자산 대부분을 거주주택에 투자, 대졸이상이 높음
KB금융경영연구소 (김진성,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군: 총자산>총부채, 상환여력 충분 •중위험(하우스푸어): 광의는 부채상환가능, 협의는 주택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고위험: 총자산<총부채, 상환여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군: 30.7만 •중위험(하우스푸어): 광의 7.9만, 협의 7.1만 •고위험: 15.9만 •부실군: 3.4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주택가격이 증가할수록 부채보유가구 비율이 상승 •잠재위험군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부채보유(주택구입레버리지 활용) •고위험군은 대부분 무주택자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외,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DSR<60% •고위험가구1: 금융대출/부동산평가액 × 0.6+금융자산 •고위험가구2: 금융대출/부동산평가액+금융자산 •고위험가구3: 순자산<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56.9만 •고위험가구1: 10.1만 •고위험가구2: 2.4만 •고위험가구3: 3.0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위험가구 40대~50대, 자영업자, 수도권에 집중 •주택가격과 소득이 동시에 20% 하락 시 고위험가구는 유형별로 6.0~19.7만 가구까지 증가

임진(2015)	•상동	•잠재위험가구: 74만 •고위험가구1: 9.1만	•주택가격 및 소득이 동시에 20% 하락 시 고위험 가구1유형은 17.2만으로 증가
김준형 (2013)	•상환부담가구: DTI 30%이상 60%미만 •상환위험가구(하우스푸어): DTI ≥ 60%	•상환부담가구: 25.7만 •하우스푸어: 7.2만	•하우스푸어는 저량(자산)이 아닌 유량(소득)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 •50대, 아파트, 수도권, 고소득층 비중이 높 음
이창무 임미화 (2013)	•광의 부채위험가구: DSR 30%, LTI 200%, LTV 70% •협의 부채위험가구: DSR 50%, LTI 300%, LTV 90%	•광의와 협의 부채위험 가구: 16.4만, 5.5만 •광의와 협의 재무위험 가구: 114만, 66만 •자산위험가구: 14.5만	•부채위험가구 비율이 높으나 시장을 통한 자발적 부채조정과정으로 해소가능 •투매 가능성 가구는 8.3만 가구에 불과
서울연구원 (박은철· 홍인옥, 2013)	•하우스푸어: DTI > 30%, 1주택가구 •렌트푸어1: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 보증 금마련대출 원리금상환액 30% 초과 •렌트푸어2: 잔여소득 ≤ 최저생계비	•하우스푸어: 서울 1.8 만, 수도권 6.3만 •렌트푸어1: 서울 26.7 만, 수도권 46.3만 •렌트푸어2: 서울 31.1 만, 수도권 67.0만	•하우스푸어는 대졸이상, 아파트거주, 주거상 향이동 대출, 소득대비 비싼 주거 특성 •렌트푸어는 40대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학 력 특성
토지주택 연구원 (이종권의, 2014)	•하우스푸어1: DSR ≥ 40%, LTA > 100%, 주택평가액 60%, 1주택보유 •하우스푸어2: DSR ≥ 40%, LTA > 100%, 주택평가액 100%, 1주택보유	•하우스푸어1: 9.8만 •하우스푸어2: 1.6만 •1주택보유, DSR ≥ 40%: 73.7만 •위험가구(DSR ≥ 40%, LTA > 100%): 29.5 만	•소득5분위이면서 자산5분위 가구, 고등학교 졸업, 아파트거주가구의 비중이 높음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가구가 60% 내 외로 가장 높은 비중
한국은행 (2015)	•한계가구: DSR > 40%, 순금융자산 0 •고위험가구: HDRI > 100, DSR > 40%, DTA > 100% •고DSR가구: HDRI > 100, DSR > 40%, DTA ≤ 100% •고DTA가구: HDRI > 100, DSR ≤ 40%, DTA > 100%	•한계가구: 150.0만 •고위험가구: 28.9만 •고DSR가구: 32.3만 •고DTA가구: 51.0만 •HDRI 기준 위험가구 합계: 112.2만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판정 지표 개발·적용 •위험부채 중 고소득·고자산계층 비중이 높 음 •고자산보유 가구가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충격에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함

4. 도시공유화 운동과 거주자원의 공유

1) 자유포지 전략의 도시공유화 운동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자유주의 도시 인클로저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대안전략 연구와 실천운동 차원의 논의들 또한 자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주의, 도시자원의 공유화(urban common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안적 관점에서는 공간의 인클로저와 사유화 또는 독점화는 전체 지역사회의 공통적 이해에 반하는 일종의 폭력(violence) 행위로 간주한다. 담론 차원에서는 기존의 자본주의 부르주아적 협소한 재산권의 의미를 새로이 설정하려고 한다. 예컨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접근과 권리를 갖는 공유자원 집합체로서 도시, 상호의존 및 협동에 기초하는 비배제적 생활양식, 장소와 지역에 기초한 집합적 관리, 도시공간을 점유하고 향유할 권리 확립 등을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김용창, 2015a; 이계수, 2014; 강현수, 2010; Mackenzie, 2013;

Mansfield, 2008).

최근 구체적인 실천운동의 한 전략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에 기초한 자율도시(autonomous city) 전략을 꼽을 수 있다. 이 전략은 공간에 대한 접근과 통제에서 기존의 규범과 인식을 뒤집고, 공통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공간 누리기 개념의 이른바 창조적 재전유를 구사하고 있다. 창조적 재전유 차원에서 거주문제를 점거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하고 있다. 점거운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서구정부가 전개한 긴축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응 가운데 하나이다. 이 운동은 새로운 ‘대안적 도시화’의 중요한 특성을 공간의 점거와 수복(reclaim) 층동에서 찾으며,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공간의 점령(seizure)에서부터 즉흥적인 시위대의 집결과 시위캠프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전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거기반실천(occupation-based practices) 운동을 자율도시 전략의 중요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도시거주의 자율적(자주적) 형태, 하부구조 생산과 이용의 급진정치화, 정치적 행동을 위한 공유공간의 생산 등을 통해 점거행위가 수행할 수 있는 사회 구성적 역할(공간의 적극적 구성), 나아가 대안적 도시화 방법으로서 자율도시 가능성을 찾는다(Vasudevan, 2015).

점거행위가 만드는 공간적 구성능력과 지리적 생성(generative) 역량을 중시하는 대표적인 움직임이 도시 활동의 비공식성을 강조하는 무단점유운동이다. 예컨대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소유보다는 점유에 기초한 무허가정착지 권리 주장의 근거로 로마의 우수카피오(사용취득, usucapio)⁸⁶⁾ 개념을 불러낸다. 아울러 최근 유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무단점유도 주거자율성 개념을 확산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로 간주한다. 무단점유 공간이 급진적 도시공유지의 만들기 그 행위 주체 형성의 핵심지점이라고 적극적 의미를 부여한다(Vasudevan, 2015). 이러한 관점에서 플로리다(Florida)가 생각하는 도시 창조계층론은 자본주의적 상상력에서만 작동하는 것, 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끄는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며, 정치사회적 전환에 대한 주체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플로리다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점거라고 말한다.”라는 주장은 점거운동을 대안적 도시화의 주체성 형성으로 간주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Rosler, 2012).

그러나 이러한 점거운동은 규모와 지속적 가능성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공유화 운동이 기존 공유자원의 소극적 방어보다는 팽창하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의 확대 재생산으로 방향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주의적으로 도시공간과 하부구조를 다시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자조·자율주의 실천(이른바 DIY 실천)이나 소규모의 도시공간 점거와 같은 반란(insurgent) 형태는 지속성과 확장성에서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비공식적 도시생활 전술들이 제도화 되고, 앞서 살펴본 미국의 공통이익 개발 주거단지처럼 신자유주의적 도시재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됨에 따라 초기 의도와는 반대로 도시 공간 상품화의 주요 메커니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Balaban, 2011).

도시공유자원의 생산과 유지, 탈상품화를 위한 또 다른 실천전략으로서 협동조합주택을 포함하는 협동조합운동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적이라는 미국에서도 위스콘신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국에 걸

86) 로마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정기간 계속된 점유에 따라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제도가 있었다. 시민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속주(屬州)에서는 장기점유의 항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용취득제도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불가능한 증명의 부담을 없애주거나 현실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로마법상의 취득시효제도를 이어받아 취득기간의 장단에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 민법 제245조의 취득시효제도와 같은 형태의 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다(민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바20).

쳐 약 3만여 개의 주요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공공서비스 부문 협동조합으로 분류되는 주택협동조합도 약 9천 5백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덴마크를 비롯한 서구의 선진국에서 주택은 일종의 도시공유자원으로 인식되면서 협동조합원리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Borch and Kornberger, 2015; Deller et. al., 2009).

2) 실존으로서 거주성의 실현과 토지주택은행⁸⁷⁾

신자유주의 도시재생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인클로저의 만연은 현대 도시에 대한 어떠한 성장전략이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생활과 거주 위기가 일상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스에게 협력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마틴 하이데거(Heidegger)는 거주(Wohnen, Dwelling)를 인간 실존의 근본 출발점이자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중시하였다. 하이데거의 사유방식으로 볼 때, '세계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거주 또는 머무름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세계, 장소와 공간의 형성은 삶의 과정으로서 거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룬다. 특히 1951년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인간과 공간'을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했던 「건축, 거주, 사유(Bauen Wohnen Denken)」라는 제목의 강연에서는 세계를 구성하는 하늘, 대지, 신, 그리고 유한한 삶의 인간이라는 네 가지 요소(사방; Geviert, Fourfold)를 소중히 보살피고, 연결(관계)하면서 그 조화의 터전을 만드는 인간 실천과정으로서 거주를 설정한다. 그만큼 거주는 삶과 생활의 기초이고, 인간존재 양식의 핵심이다. 거주 없다면 세계도 장소도 없는 것이다(Heidegger, 2001; 서도식, 2010).

거주의 실존적 의미로 보자면 주거공간의 생산은 앞의 네 가지 요소를 한데 모아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터전을 만드는 과정이지 단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수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 사물로서 주택은 거주라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인간적 의미부여를 통해 그 쓰임새와 쓰일 자리를 비로소 찾으며, 세계와 장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즉 물리적 사물로서 주택과 주택건축 자체가 세계를 만드는 거주(삶의 과정)의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주택은 다양한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개인차원에서조차 그 의미가 충돌하기도 한다. 우선 물리적 거처와 안식처로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삶을 제공하는 공간과 가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주택은 사회경제적 관계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가정의 토대이며, 생활양식과 생활경험의 기초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그리고 인권으로서 주거권과 거주 안정성은 품위 있는 생활과 인간존엄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적 권리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배적인 관념은 자산 및 투자대상으로서 주택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이때는 자본이나 개인 모두에게 부(wealth)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가장 두드러진다.

주택을 둘러싼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는 결국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거주성으로서 주택과 부의 축적으로서 주택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세계 속의 존재로서 인간실존을 우위에 두는 것이고, 후자는 도구성(수단성)이 실존을 압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 공익이데올로기에 입각한 도시재생과 사적이익을 위한 강제수용, 경제의 세계화와 금융화, 부동산금융의 발달은 실존으로서 거주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거주 위기를 만성화하고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 체제에 거주 운명이 놓여 있는 것이다.

87) 이하의 본 항의 내용은 김용창(2015b)을 수정·축약한 것이다.

이러한 거주의 본질적 의미가 심각히 퇴색하고, 거주의 상실에 따른 생활과 생존의 위기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앞서의 자율도시 전략에 따른 점거운동과 협동조합주의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주거에서 공유자원을 보다 많이 비축할 수 있는 토지주택은행체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토지주택은행체제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형태의 계층혼합적 주택정책(inclusionary housing) 및 사회적 약자의 보조금 지원 정책과 결합하면 공간적 격리가 아닌 형태이면서 기회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주거입지에서 기초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Jacobus, 2015).

기존의 토지은행 제도는 통상 미래 토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적으로 토지를 비축하였다가 공익사업, 특정목적사업, 도시성장관리, 시장조절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토지은행제도는 매우 다양하지만 고도성장기 토지비축모델, 금융위기와 부동산가격 하락기 대응모델, 체제전환기 토지자원 배분모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지정리 모델 등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토지은행 모델가운데 금융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주거자원 공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모델로는 미국 토지은행 제도를 준거로 삼을 수 있다. 위기관리형으로서 미국의 토지은행제도는 이름과는 달리 토지주택은행이며,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한 산업도시에서 발생한 조세체납, 압류, 미점유, 방기 부동산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1971년 세인트루이스를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루이빌, 애틀랜타에서 20세기 후반 지방정부 조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주택 압류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미국 토지은행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주 정부의 수권 법률 제정, 지역사회 주도적 운영과 같은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토지은행의 일반적 기능은 조세체납, 압류, 방기 부동산이 야기하는 각종 해악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시장성을 회복시키고, 다시 생산적 용도로 문제 부동산을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기반의 안정을 꾀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것이 토지은행의 주요 목적이다. 토지은행은 증여, 이전, 교환, 구매, 기부 등을 통해서 미점유, 방기 및 조세체납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특히 과세당국과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에 앞서 우선적으로 문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은행의 운용 측면에서도 보유재산의 활용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한다.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방정부와 조세공유협정(tax recapture agreement)⁸⁸⁾을 통해서 토지은행이 정상 시장으로 복구시킨 부동산들에 대해서 최대 5년 동안 50%의 재산세를 공유하여 토지은행 운용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토지은행은 경제금융위기 대응에는 부적합한 모델이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 토지비축계획 수립지원, 토지수급조사 등 토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 계정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한 모델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은행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모델처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주택은행 체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로는 토지은행 목적을 다시 설정하여 기존의 공익사업용지 사전 비축 중심의 목적을 벗어나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를 포괄하고, 미국처럼 문제지역이나

88) 조세공유협정의 핵심전제는 재산세 수입이 발생하지 않던 조세체납부동산을 토지은행이 정상화시켜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면 그 부동산은 다시 과세대장(tax rolls)에 등재되고, 일정기간 동안 토지은행과 지방정부가 재산세 수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시간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침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토지에 대해서는 금융자본 논리 중심의 일반적인 부실채권처리방식을 벗어나야 하고, 거주성 회복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 경제금융위기의 상존시대, 장기적 저성장시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전제로 한 현재의 토지은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주택을 포함하는 토지주택은행 개념으로 전환하고, 공공임대주택 리츠 개념도 포괄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취득, 보유, 운용, 처분, 조세 등 제도운용과정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국면이라고 하더라도 각 지역마다 직면하는 토지주택 문제가 다르고, 도시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토지주택은행제도를 운용하게 하거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다 개방적인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철학은 거주자원의 공유성을 확보하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토지주택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맺음말 : 거주성 회복

다시 하이데거의 ‘실존으로서 거주’라는 철학적 사유로 돌아가자면, 실존으로서 거주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상품과 물신성의 화신으로서 주택이라는 단순 관념을 반드시 우리가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거주성의 의미를 부차적으로 만드는 현재의 주거와 주택개념은 세계와 도시 생활공간의 부조화, 도시 인클로저의 만연을 만드는 일차적 원인이다. 이러한 거주성 회복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주택은행체제는 무엇보다도 거주성으로서 주택의 본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세계 내 존재로서 인간의 실천과 조화로운 세계형성이 이루어진다. 거주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주택의 의미와 주택정책, 도시정책은 인간의 세계 내 존재로서 실존성을 망각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주택과 주택건설자본, 금융자본 스스로의 존립근거도 소멸시킬 것이다. 하이데거의 다음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김용창, 2015b; Heidegger, 2001, 158-159).

“도처에서 주택부족을 말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려고 행동한다.....그러나 주택의 부족을 위협하는 것은 그대로 쓰라리게 남는다. 거주성의 진짜 역경은 단지 주택의 부족에 있지 않다.....진짜 역경은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들이 거주성의 본성을 도대체 새로이 찾으려 들지 않는다는데 있으며, 거주성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데 있다.....인간이 거주성의 진짜 역경을 역경으로서 여전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인간의 고향상실(Heimatlosigkeit, 존재의 진리 망각)이 있다.”

Hardt and Negri(2009)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형태를 생성시키는 이상적인 것으로서 공유적인 것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것도 같음의 범주가 아니라 특이성들의 긍정(affirmation of singularities), 즉 다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위정치로부터 더욱 전진하기 위해 특이성에 기초한 공유적인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인클로저와 공유화의 변증법적 관계는 오늘날 실존으로서 거주성의 문제를 사유하고 해결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접근법을 제공한다.

참고문헌

-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책세상.
- 김서기, 2012, “재산권 개념의 변화 -백퍼센트의 이해를 중심으로,” 법조, 61(6), 189-224.
- 김용창, 2012a, “미국 도시재생사업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차별: 법제지리학의 관점,” 대한지리학회지, 47(2), 245-267.
- 김용창, 2012b, “미국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적이익을 위한 공용수용: 연방 및 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74, 127-148.
- 김용창, 2015a, “신자유주의 도시화와 도시 인클로저(I): 이론적 검토,” 대한지리학회지, 50(4), 431-449.
- 김용창, 2015b, “불확실성시대, 실존으로서 거주(Wohnen)와 토지주택은행정책”, 부동산시장조사 분석, 11, 60-68.
- 서도식, 2010, “존재의 토폴로지: M. 하이데거의 공간 이론,” 시대와 철학, 21(4), 221-249.
- 오호진, 2015, “존 클레어의 엘레지(Elegy) 연구 : 인클로저와 헬프스톤,” 영어영문학, 20(3), 139-163.
- 이계수, 2014,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법학, 56, 137-178.
- 장성현, 2013, “존 클레어의 ‘푸른 언어’와 그 한계: 클레어의 인클로저 저항시 읽기,” 문학과 환경, 12(2), 195-217.
-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21(3), 5-38.
- 田代正一, 2007, イギリスにおける土地所有の近代化と地主制の形成, 鹿兒島大學農學部學術報告, 57, 37-47.
- Amaral, C., 2015, Urban enclosure: Contemporary strategies of dispossession and reification in London's spatial production, <http://www.enhr.net/pastwinners.php>
- Balaban, U., 2011, The enclosure of urban space and consolidation of the capitalist land regime, *Urban Studies*, 48(10), 2162-2179.
- Birch, K. and Siemiatycki, M., 2016, Neoliberalism and the geographies of marketization: The entangling of state and market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2), 177-198.
- Blomley, N., 2008,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property of the poor, *Social and Legal Studies*, 17(3), 311-331.
- Borch, C. and Kornberger, M., 2015, *Urban Commons: Rethinking the City*, Routledge.
- Cohen, C. E., 2006, Eminent domain after Kelo v. City of New London: An argument for banning economic development takings, *Harvard Journal of Law and Public Policy*, 29(2), 491-568.
- Coughlin, M. J., 2005, Absolute deference leads to unconstitutional governance: the need for a new public use rul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54(3), 1001-1038.
- De Angelis, M.,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Value Struggles and Global Capital*, Pluto Press, London.

- De Peuter, G. and Dyer-Witheford, N., 2010, Commons and cooperatives, *Affinities: A Journal of Radical Theory, Culture, and Action*, 4(1), 30-56.
- Deller, S., Hoyt, A. and Sundaram-Stukel, B., 2009, *Research on the Economic Impact of Cooperatives*,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Cooperatives.
- Dickerson, A. M., 2009, 'The myth of home ownership and why home ownership is not always a good thing', *Indiana Law Journal*, 84(1), 189-237.
- Dyal-Chand, R., 2011, Home as ownership, dispossession as foreclosure: The impact of the current crisis on the American model of 'home', in Fox O'Mahony, L. and Sweeney, J.(eds.), *The Idea of Home in Law: Displacement and Dispossession*, Ashgate, 41-54.
- Hardt, M. and Negri, A., 2009, *Commonwealth*, Harvard University Press;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정남영·윤영광 옮김), 2014, *공통체*, 사월의 책.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Verso.
- Heidegger, M., 2001, Building, dwelling, thinking, in *Poetry, Language, Thought*,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141-159.
- Hodkinson, S. 2012, The new urban enclosures, *City*, 16(5), 500-518.
- Hodkinson, S. and Essen, C., 2015, Grounding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in everyday life: The unjust geographies of urban regeneration under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in the Built Environment*, 7(1), 72-91.
- IMF, 2009, From Recession to Recovery: How Soon and How Strong?, *World Economic Outlook: Crisis and Recovery*.
- Immergluck, D., 2016, Foreclosures and neighborhoods: The shape and impacts of the U.S. mortgage crisis, in McCarthy, G. W., Ingram, G. K. and Moody, S. A.(eds), 2016, *Land and the City*, Lincoln Land Institute, 203-231.
- Jacobs, H. M., 2013, Private property and human rights: A mismatch in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2(1), 85-101.
- Jacobus, R., 2015, *Inclusionary Housing: Creating and Maintaining Equitable Communiti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 Jeffrey, A., McFarlane, C. and Vasudevan, A., 2012, Rethinking enclosure: Space, subjectivity and the commons, *Antipode*, 44(4), 1247-1267.
- Kenna, P., 2011, Can international housing rights based on public international law really impact on contemporary housing systems?, in Fox O'Mahony, L. and Sweeney, J.(eds.), *The Idea of Home in Law: Displacement and Dispossession*, Ashgate, 133-164.
- Mackenzie, A. F. D., 2013,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Wiley-Blackwell, Oxford.
- Mansfield, B., 2008, *Privatization: Property and the Remaking of Nature-Society Relations*, Blackwell Publishing, New York.

- Marx, K., 1954, *Capital: Vol. 1*, Progress Publishers.
- McFarlane, C., 2011, The city as assemblage: Dwelling and urban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29(4), 649-671.
- McKenzie, 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se of private communities and increasing socioeconomic stratification, in McCarthy, G. W., Ingram, G. K. and Moody, S. A.(eds), 2016, *Land and the City*, Lincoln Land Institute, 361-389.
- Midnight Notes Collective, 1990, Introduction to the new enclosures, *Midnight Notes*, 10, 1-9, <http://www.midnightnotes.org/mnpublic.html>
- Morsink, J., 1999,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Neeson, J. M., 1993, *Commoners: Common Right, Enclosure and Social Change in England, 1700-18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Parr, A., 2015, Urban debt, neo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 *Theory, Culture & Society*, 32(3), 69-91.
- Peck, J., Theodore, N. and Brenner, N., 2013, Neoliberal urbanism redux?,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7(3), 1091-1099.
- Perelman, M., 2000, *The Invention of Capitalism: Classical Political Economy and the Secret History of Primitive Accumulation*,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 Sevilla-Buitrago, A., 2015, Capitalist formations of enclosure: Space and the extinction of the commons, *Antipode*, doi: 10.1111/anti.12143, 1-22.
- Sheila, F. and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and Policy Review*, 34(2), 1-64.
- Soja, E.,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UN-Habitat, 2008, *Secure Land Right for All*, UN-Habitat.
- Vasudevan, A., 2015, The autonomous city: Towards a critical geography of occup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9(3), 316-337.
- Vasudevan, A., McFarlane, C. and Jeffrey, A., 2008, Spaces of enclosure, *Geoforum*, 39(5), 1641-1646.
- Wordie, J. R., 1983, The chronology of English enclosure, 1500-1914, *Economic History Review*, 36(4), 483-505.

상생도시를 위한 커먼즈의 의미와 유형별 모델⁸⁹⁾

-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을 중심으로

조성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센터,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

1. 들어가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9월 20일, “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사적 소유로 치우친 경제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의 핵심 내용은,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 정보, 공간 등을 공유(share)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유’를 “각자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같이 소비하는 것, 폐쇄되어 있는 공간은 개방해 같이 사용하는 것, 사장되어 있는 자원의 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했다.⁹⁰⁾ 위키백과에서는 ‘공유’를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등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이들과 함께 사용 내지 소비하자는 것이 서울시가 제시한 공유 개념의 핵심이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의 핵심 내용과 ‘공유’의 정의 및 제시된 사업 유형들은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 share로 번역된 공유(共有)의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니, 우리가 쉽게 ‘공유’를 ‘share’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만약 ‘공유’와 ‘share’가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면 어떻게 될까? 영어 표현 ‘share’는 사실 ‘공유’의 개념보다는 ‘향유’의 개념에 가깝다. 그런데 ‘공유’개념은 그야말로 ‘공동 소유’의 개념이다. 영어로 ownership(소유권)의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 사업들은 ‘share’에는 부합하지만, ‘ownership’의 개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민법에서 공동소유를 명확하게 공유(共有), 총유(總有), 합유(合有)로 구분하고 있어, 서울시가 표방하고 있는 공유 개념이 현행법 개념과 혼동을 초래한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실험을 가볍고 즐겁게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공유경제라는 인식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유도시 서울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다면 공유경제는 ‘공유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서울시가 지향하

89) 본 발표문은 다음 원고를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였음 : 조성찬,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입법·정책』, 서울특별시의회, 제14호 2016년 6월, 107-132.

90)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2012.9.20.). 공유도시 서울 선언.

는 공유경제 내지 공유도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성과 진화의 방향을 서울시 도시재생에서 찾아보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은 원래 공유자원인 토지와, 공유재인 기반시설, 공적 자금의 투입, 정부 및 공동체의 정신노동 투입, 다양한 시민들과 경제 주체들이 어울려 형성되는 경제활동,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형성 내지 상승하는 토지가치(개발이익 또는 경제학 용어로 지대地代)와 각종 사회자본 및 도시경관 등이 어우러진 도시생태계의 회복이다. 이러한 도시생태계는 공유경제 내지 공유도시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즉, 공유 속에 사유가 있었던 것이지, 사유 속에 공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단계의 진화 방향은 선언에서 제시된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의 공유”에서 더 나아가 ‘원래 공유의 대상이지만 사유화된 것의 복원’에 있다.⁹¹⁾

그런데 아쉽게도 “공유도시 서울 선언” 및 이어지는 노력들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다. 게다가 서울형 도시재생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⁹²⁾ 서울시가 표방하는 도시재생의 포커스는 ‘물리적·비물리적인 다양한 처방’과 ‘민·관의 협력적 노력’에 맞추어져 있어, 공유경제의 지향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기존 도시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사업의 핵심 문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바로 ‘사회 공동체가 창출한 가치를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로 돌리는’ 공유경제의 회복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중단시키자는 것이다. 그 중심에 토지 및 토지가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관건이다.

본 내용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보완적인 도시재생 방법론으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과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복원되어야 할 공유의 핵심으로 토지가치를 지목하고, 이를 지역자산화 전략을 통해 회복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자산화 전략은 서울시가 2015년 11월 23일에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도 담겨 있던 것으로, 기존 사유재산이나 공공재산을 민과 관이 함께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령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보였던 임대세입자가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 토지가치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공유경제 실현에 한계를 보인 기존 도시재생 방식

1) 현행 공유경제의 개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등의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상징하는 소유의 시대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소득이 낮아진 시민들이 개인 단위의 소유 대신 공유하고 함께 소비함으로써 낮아진 소득수준에 부합한 삶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자원의 낭비를 막고 친환경적인 소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확대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91) ‘복원’의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다음 책 참고: 마이클 루이스-팻 코너티. (2015).『전환의 키워드, 회복력』.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역. 따비.

9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관련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living>).

변화를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고 명명하고,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과 루 로저스(Roo Rogers)는 『10년 그들의 책』(What mine is yours)에서 공유경제와 유사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개념을 소개했다. 공유경제에 기초를 제공하는 협력적 소비 개념은 2011년 타임지에 의해 세상을 바꿀 10개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리고 SNS의 확산과 IT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달로 인해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공유경제보고서, 2013: 13-19).⁹³⁾

다음으로 공유경제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자. 먼저 공유경제의 참여 주체로 대여자와 이용자 및 공유경제 업체의 3주체가 나온다. 여기서 공유경제 업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대여자와 이용자간 직거래가 이뤄진다. 직거래 방식은 크게 공유, 교환, 임대, 활용 이라는 4가지 방식으로 협력적 소비가 이뤄진다. 재화의 특성 및 대여자·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특정 방식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에서는 임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협력적 소비가 이뤄지는 대상(자원)은 크게 유형적 소모자산, 유형적 비소모자산, 무형적 자산으로 구분된다. 유형적 소모 자산에 공산품이나 건물이 있다. 유형적 비소모자산으로는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다. 무형적 자산에는 지식과 정보가 대표적이다(공유경제보고서, 2013: 20-23).

2) ‘공유지의 비극’에 빠진 우리의 생활공간들

특이하게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은 유형적 소모자산과 유형적 비소모자산이 결합된 형태다. 게다가 상가 세입자들의 창의성과 지식 및 예술성 등이 강하게 결합될 경우 무형적 자산이 추가로 결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들이 들어선 일정 지역은 지역 문화를 형성하면서 공유경제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유형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도시 생태계를 이루게 된다. 기존 공유경제의 대상(자원)이 비교적 소규모였다면, 도시공간은 보다 큰 규모의 공유경제 대상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유 대상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의 인식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지역에서 공동의 노력으로 창출되는 가치는 보이지도 않아, 건물 소유주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세입자 외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러한 가치들은 임대료 및 지가 형식으로 재산권자에게 귀속되어 왔다. 여기에서 현행 법질서가 소유자의 재산권을 유독 강하게 지켜주는 대신 세입자의 정당한 재산권은 무시하려는 법 현실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공유경제가 다른 의미의 ‘공유지의 비극’에 빠지는 지점이다.

‘공유지의 비극’의 원래 의미가 공유지(목초지)가 한계 용량을 초과하는 남용으로 인해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현대에 있어서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형성된 공유자원인 토지가치가 재산권자 및 지대추구자들에 의해 독식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대추구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될 때 발생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세입자들을 내쫓는 한국식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⁹⁴⁾ 한국식

93) 크라우드산업연구소. (2013.4.). 『공유경제보고서』
<http://www.slideshare.net/cckslide/201304-26090238>

94) 영국에서 시작된 젠트리피케이션의 고전적 정의는 영국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노동자들이 주택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세련되고 비싼 주택으로 탈바꿈되는 현상을 Ruth Glass가 처음으로 명명하였다. 다음 자료 참고: 신현방. (2015).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재생은 가능한가: 외국사례와 한국에의 함의. <제1회 도시정책포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아시아도시연구단(SSK) 등 주관.

젠트리피케이션은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당시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목장으로 전환하면서 농민들을 내쫓던 인클로저(enclosure) 현상에 다름 아니다. 정리하면, [지대추구 → 젠트리피케이션 → 공유지의 비극]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3) 공유경제 패러다임에서 서울시 현행 도시재생사업이 보여준 한계

서울시 공유경제가 ‘공유지의 비극’에 빠졌다는 점은 곧바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물론 대안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한계를 설명해준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00년대 초반 서울시에서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개발이익을 향한 주택 소유자와 건설회사 및 정치인들의 욕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중단되자 특히 상가 세입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는 가운데 5명의 상가 세입자와 1명의 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2009)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공유자원에 해당하는 개발이익, 즉 토지가치를 사유화하려던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연구가 정의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조성찬, 2012: 200-201).

‘공유지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선회하여 도시재생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지만 ‘공유지의 비극’을 피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수립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15)에서도 토지가치 공유 및 가치순환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기존 도시정책의 한계 중 하나로 민간주도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을 언급하고 있고(37쪽),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면서 재원 확충방안으로 재산세와 과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재원조달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178쪽). 오히려 도시재생 제도지원 방안으로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서(183쪽) 역행하는 길을 터주고 있다.

요즘 서울시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유지의 비극’의 대표적인 증상은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이 용어를 한국 맥락에서 번역하자면 ‘내쫓김’ 현상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의해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이 내몰린 것도 오늘날의 화법으로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한 마을만들기 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몰리는 것도 젠트리피케이션에 해당한다. 가령, 서울시 최초의 마을만들기 사례로 유명해진 성북구 장수마을의 경우, 서울시가 30억을 투입하고, 연구자들과 운동가들 및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후 건물주들이 전월세를 인상하려는 바람에 노후한 주거환경이지만 나름 안정적으로 거주해 오던 장기 세입자들은 쫓겨날 불안감에 빠지게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장수마을 만들기를 이끄는 대표가 마을 소식지 및 시사잡지에서 임대료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올렸다.⁹⁵⁾ 서울시는 2013년 10월 2일에 집수리 지원을 위한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558호)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수리비 및 신축비를 지원하는 대신 혜택을 받는 건물주는 세입자보호에 대한 주민협정안(4년 장기계약 체결 및 임대료 인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하는 접근법을 보였다(조성찬, 2015: 166-170).

민과 시장 주도의 영역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유명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있는 작은나무 카페는 갑자기 나가라는 건물주의 통보에 마을공동체가 싸워 겨우 2년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유명한

95) 박학용. (2013.11.). <장수마을 이야기>; 박학용. (2013.1.3.). 장수마을 세입자들이 위태롭다. <시사인>. 276호(<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8>).

홍대 거리에 있는 ‘삼통치킨’은 2015년 11월 17일 내부 시설을 모두 드러내려는 강제집행이 있었으나, ‘맘상모’라는 세입자 조직 및 시민들의 연대로 막아냈다. 우리 주위에는 세입자들을 내쫓으려는 토지소유권자 및 자본의 폭력과, 반대로 내쫓기지 않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면 이들과 지역 주민이 일구어 놓은 마을까지 내쫓게 된다.

한국 맥락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각종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거나, 예술가들의 활동에 의해 사람과 활동이 집중되면서, 2) 결과적으로 지가 및 임대료가 급등하여, 3)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 장사 및 예술 활동을 하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현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쫓겨나기도 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하는 키워드로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가 있다. 모두 돈이다. 그런데 더 중요하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공통점이 또 있다. 바로 토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것이다. 더 높은 용적률로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주로 사회경제적·지역적 입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금, 상가 임대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분 임대료. 모두 위치라는 속성을 가진 도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화폐적 양태인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지대추구’라는 근사한 용어로 지칭하지만, 토지가치는 무릇 사회 및 마을공동체의 소산이다. 지대추구는 실은 도시 공동체가 이뤄낸 가치를 소유권자가 가로채는 일에 다름 아니다. 그 결과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것이다. 문제의 근원에 생존권을 압박하는 강력한 토지 소유권이 자리하고 있다.

4)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의 필요성

먼저, ‘지역자산화’를 정의하면, 지역자산화 운동으로 유명한 영국의 단체 Locality가 정의하는 지역자산(community asset)의 정의는 “토지와 건물로서, 커뮤니티 조직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이다. Locality 구성원들은 자산을 사용하여 장기간의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local neighbourhoods)을 변화시키는 것”이다.⁹⁶⁾ 그리고 지역자산의 예로 시청, 커뮤니티 센터, 스포츠 시설, 저렴한 주택 및 도서관을 제시했다. 따라서 지역자산이 아닌 개인 또는 정부 소유의 자산(토지와 건물)을 커뮤니티(마을 공동체)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지역자산화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모든 토지와 건물을 지역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에 재투자될 수 있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로 한정하고 있다.⁹⁷⁾

사실, 지역자산의 범주에는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같은 다양한 동산 성격의 자산을 포함할 수 있다. 심지어 지식과 정보, 특히 등 무형의 자산들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Locality가 내린 정의에서 지역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한정된 것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지역자산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자산화의 성격과 목적을 보다 분명히 부각시키기 위해 ‘토지가치 공유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역자산의 핵심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유형의 자산을 넘어 그 유형자산이 최종적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결국은 지역이 함께 창출한 무형의 가치, 대표적으로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96) <http://locality.org.uk/our-work/assets/>(2016년 5월 2일 검색함).

97) <http://locality.org.uk/our-work/assets/what-are-community-assets/>.(2016년 5월 2일 검색함).

다. 이제 본 장에서 제시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해답이 명확해진다. 본 연구자는 그 필요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자산화 전략은 이론에 부합한다(이론 차원). 이론적인 설명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도시 및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창출한 사회적·공동체적 가치인 토지가치를 사회적·공동체적으로 소유 및 사용하자는 것이다.⁹⁸⁾

둘째, 지역자산화 전략은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및 민관 협력이라는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정책 차원). 서울시는 2015년 11월 23일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크게 ‘자산화 전략’, ‘젠트리피케이션 법제화’, ‘상생협약 체결’을 제시했다. 여기서 자산화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1)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재임대, 2) 소상공인 상가 매입비 지원, 3) 민관 합자 방식으로 지역별 지역자산관리회사 설립, 4) ‘장기안심상가’ 추진, 5)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런 입장을 자체 보고서를 통해 분명하게 밝혔다. 서울시가 제시한 자산화 전략이 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영국 Locality가 제시한 정의와 맥락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커뮤니티가 아닌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자산화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양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 전략은 사회적 경제 및 협동조합을 증시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셋째, 지역자산화 전략은 재산권자와 사용자의 욕구를 절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욕구 차원). 서울시 신촌상가에서 볼 수 있듯이 상권이 약화되면서 건물 소유자들이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역의 건물 소유자 9명(13개 건물 소유, 점포수는 60여 곳)이 상가 세입자들과 협약을 맺어 대처하려는 전략을 취했다. 2014년 2월 28일, 서대문구청이 중재하여 계약기간 5년 동안 월세와 보증금 동결하는 대신 임차인은 호객행위, 바가지 상술, 보도에 물건 적채 금지 등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조성찬, 2015: 173-174). 이러한 협약 내용이 역시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자산화 전략에 비추어 볼 때 한계가 많지만, 지역 상인과 재산권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촌상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가 합의한 곳이라면, 이곳과 가까운 홍대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너무 빨라 세입자들이 대응하기 어렵고, 사회적·제도적 기반도 약해서 임대료가 오르면 세입자들이 버틸 수가 없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재산권자의 욕구를 넘어서 욕망을 제어하며,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자산화 전략 및 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 마을 공동체가 해결 주체로 나서서 자기 지역에 적합한 전략을 도출 및 구사해야 한다. 영국의 지역자산 운동 전문가인 스티브 클레어(Steve Clare)가 이야기했듯이, “단지 투쟁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으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현실의 모델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⁹⁹⁾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주체에게도 지역자산화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중랑구의 증곡제일시장이다. 1970년대 초반에 개설된 증곡제일시장의

98) 다음 논문 참고: 조성찬. (2013). 지대공유형 도시재생사업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토지임대제의 정당성 연구. <도시인문학연구>. 제5권 2호: 57~88; 조성찬·성승현. (2014). 공공토지임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및 전통시장 적용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 1~33.

99) 스티브 클레어. (2015.11.17.).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자산화 전략-영국 로컬리티 사례로부터 영감받기. <성미산 젠트리피케이션 전략 컨퍼런스>. 마포구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주관.

전체 시장 면적은 8,788㎡이며, 총 42동의 건물에서 140개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다(2014년 기준). 2000년에 설립된 상인회가 2003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아케이드 설치 공사, 전국 최초 공용쿠폰 도입, 서울시 최초 상인대학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떠올랐다. 매출액이 증가한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상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재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들이 늘어난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곳 상인협동조합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다가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여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는 전략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은 재원이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등 지자체의 재원을 많이 받았다는 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상인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전통시장을 하나의 지역자산으로 보고 상인, 지자체, 지역 주민, 지역의 사회적 자본, 심지어 건물주 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접근법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조성찬·성승현, 2014).

이상으로, 지역자산화 전략의 필요성으로 이론 차원, 정책 차원 및 개인의 욕구 차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역자산화 전략은 어찌 보면 사유 중심의 자본주의의 한계 및 공유자산을 제대로 주민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소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민(주민, 상공인, 소비자 등)이 주도하면서 관(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협력모델 성격도 강하다. 이러한 접근법이 실제로 적용되어 효과가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공유도시 서울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3.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체계

1) 상생도시를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론의 원칙¹⁰⁰⁾

새로운 도시재생론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 대규모 건설자본의 이익, 금융권의 이익만을 주로 대변해 왔던 기존 도시재정비 사업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요구한다. 즉, 개발이익 확대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통한 재생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도시재생론은 자본주의적 재생의 대안으로 현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재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회적경제를 통한 재생은 토지가치 공유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적인 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재생이 갖는 한계를 모두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가치 공유라는 원칙을 실제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존 재산권자의 '정당한' 권리와 주택 및 상가 세입자의 보호받지 못했던 권리가 상생하며,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착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엘 코트킨(2007)이 제시한 '신성함', '안전함', '변화함'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더해 '토지가치 공유'라는 원칙을 추가해야 한다.

상생도시를 정의하면, '상생도시'란 상생을 지향하며, 토지가치를 공유하여 상생도시의 기초를 형성하며, 재산의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지키며, 그러면서도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도시공간이다. 이러한 상생도시의 정의를 기초로 '토지가치 공유형 도시재생'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0) 조성찬, 『상생도시: 토지가치 공유와 도시 재생』, 알트, 2015, 86-87.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상생도시'를 지향한다.
- 토지가치 공유 :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상생도시의 기초를 형성한다.
- 안전함
 - 재산 소유의 안전함 : 원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한다.
 - 재산 사용의 안전함 : 주거 및 상가 세입자의 사용권을 보호한다.
 - 지역 공동체의 안전함 :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변화함 : 사회적 경제를 원동력으로 삼아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2) 지역자산화 모델 체계의 이론적 기초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주창했던 이유는 협력적 소비에 기초하는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그 당시 경제위기로 인한 중·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및 소비능력 저하를 해결하는 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접근하는 공유경제는 맥락이 다르다. 원래 공유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공유하자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회, 조직, 개인이나 생존 및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들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자원들이 사유재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토지, 바람, 물, 전파, 지하자원 등은 인간이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생존 및 생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동의 자원들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한 국가 영토 내의 일반 대중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자원들을 공유자원(Communs)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유자원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생산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자원의 특성에 따라 국공유 내지 사유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공유자원의 유형화

범주		핵심 개념	예시	특성
기초	공유자원 (Communs)	한 국가 영토 내의 일반 대중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자원들	토지, 바람, 물, 전파, 지하자원	포괄적
	공유재(공유자산) (Public Properties)	천연자원 중에서 정부가 소유하는 재산	국공유지	물질
분화	공공재(Public Goods)	정부가 만든 인공시설들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공동재(Common Pool Properties)	천연자원 중에서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 공동자원 개념의 재산화 개념.	지역자산, 마을목장, 공동어로	
	사유재(Private Properties)	사적 소유로 전환된 부동산	토지, 건물	물질
개인이나 기업이 천연자원(원료)에 자기 노동을 투입하여 만든 것		컴퓨터, 자동차		
	사회재(Social Properties) (註)	정부와 공동체 및 개인이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들	지대, 화폐, 도시경관	비물질

주 : 위의 표는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 및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여기에 더해 본 연구자는 지대와 화폐 등을 새롭게 '사회재'로 분류했음.

〈표 1〉을 보면 인간의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의 공유자원은 생산 과정에 투입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한다. 대표적인 것들로, 먼저 국공유지와 같이 천연자원 중에서 정부가 소유하는 공유재 또는 공유자산(Public Properties)이 있다. 언뜻 공유자원과 공유재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가나 정부를 특수 법인체로 본다면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두 개념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부가 만든 인공시설들로,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지칭하는 공공재(Public Goods)가 있다. 공유재와 공공재의 소유 주체는 정부로 같다. 이와는 달리, 마을목장, 공동어로와 같이 천연자원 중에서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들로 공동재(Common Pool Properties)가 있다.¹⁰¹⁾ 다음으로 사유재가 있다. 이는 공유자원이었던 것이 사적 소유로 전환된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토지가 대표적이다.

이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공유자원의 유형화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새로운 유형화는 바로 ‘사회재’이다. 이미 앞서서 토지가치(지대, 개발이익 등)는 정부와 공동체 및 개인이 함께 만든 사회적 가치라고 했는데, 사회재라는 유형화는 바로 이런 성격의 재산을 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적 소유로 전환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 역시 사회재라는 점이다. 자연이 비옥도 및 입지 형태로 부여했으며, 이에 더해 인구증가, 기반시설의 설치 및 도시화 등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상승하는 토지가치는 경제 이론상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George, 1997). 이러한 토지가치는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으로, 공유자원의 요체이다.

토지가치 외에 도시경관과 화폐도 하나의 사회재로 볼 수 있다. 화폐를 사회재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의해 최초의 화폐인 본원통화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유통된다는 점, 둘째, 화폐는 끊임없이 시장거래를 통해 여러 주체들 사이에서 유통된다는 점, 셋째, 화폐의 기초인 신용은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적 가치인 토지 지대가 자본화되어 지가를 형성한 후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신용화폐로 창조된다는 점, 다섯째, 토지 외의 다른 천연자원에서 획득된 경제 지대 역시 화폐화된다는 점, 여섯째, 화폐 형태를 띠는 막대한 정부 예산은 명백히 공유자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표 1〉이 제시하는 공유자원의 유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지역자산화의 길을 안내해 준다는 점이다. 즉, ‘왜’, ‘무엇을’, ‘어떻게’ 지역자산화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론적 기초에 따라 당연히 지역자산화가 필요한 것으로, 토지가치, 화폐와 같은 사회재이다. 그리고 지역자산화가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공유재, 공공재 및 심지어 사유재도 해당된다. 지금까지 공유재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으로 분양되어 왔으며, 사유재는 정부 개발사업 필요시 공유재로 전환되어 왔다. 공유재와 사유재가 그 중간 지점인 공동재(지역자산)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공유자원의 유형화가 가져오는 보다 큰 틀의 기대효과는,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유자원 사유화 메커니즘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유제에 기초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구조적으로, 경제의 최하층에서 사용가치를 갖는 토지, 천연자원, 수자원, 바람 등 ‘천연 공유자원’이 사유화 및 상품화하여 교환가치가 발생하게 되면, 경제의 최상층에서 화폐 시스템이 이러한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조성찬 외, 2012). 그리고 지역자산화는 이러한 토지가치와 화폐의 사유화에 의해 형성되는 지배 구조를 깰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101) 지역자산은 바로 공동재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유권이 법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이를 그의 책 『공유의 비극을 넘어』(2010)에서 ‘common pool resources’라고 불렀으며, 최현(2013)은 이를 ‘공동자원’으로 번역했다.

3) 지역자산화 모델의 3계층 체계

공유자원의 유형화에 기초하여, 지역자산화 모델은 크게 [기초 계층(조세) + 중간 계층(재산권) + 상위 계층(사회투자금융)] 이라는 3계층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기초 계층에서는 사회재인 토지가치를 조세로 환수한다. 이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부담금 역시 기초 계층으로 본다. 기초 계층은 공간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지역자산화의 기초가 된다. 기초 계층에서는 재산권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중간 계층에서는 공유재, 공공재 및 사유재의 재산권에 변동을 가져와 공동재로 전환한다. 지역자산화 모델의 핵심 계층이 바로 이 계층이다. 상위 계층에서는 사회재인 화폐를 지역자산화한다. 화폐를 지역자산화한다는 것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크게 사회투자금융과 지역화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위 계층에서도 재산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유자원의 지역자산화 모델 체계

계층	대상 공유자원 유형	방식	구체 모델
기초 계층	토지가치(사회재)	조세, 부담금 등	재산세, TIF 등
중간 계층	공유재, 공공재, 사유재	공동재로 전환 (재산권 변동)	공공토지임대제, 토지협동조합, 마을협약, CLT,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상위 계층	화폐(사회재)	사회투자금융, 지역화폐 등	
3계층 통합모델		공간 접근법 : 지역자산화 특구	

가. 기초 계층에서의 지역자산화 모델 (조세 및 부담금 등)

가) 서울시 및 자치구 단위의 세제, 부담금 및 기타 방식들

아래 <표 3>에서 지방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수단으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와, 간주취득세가 있다. 이전에는 다른 유형의 세제가 있었으나 폐지 내지 다른 세제로 통합되었다.¹⁰²⁾ 지자체가 환수하는 대표적인 세제는 재산세이다. 서울의 경우 재산세는 구(區)세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구의 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로, 조세 형식 외에도 부담금 방식과 다양한 유형의 기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허점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각종 부담금을 폐지 내지 폐지 예정이어서 제도상의 한계가 많다(김수현 2008; 조성찬, 2015, 30-40).

102)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로 통합), 도시계획세(재산세로 통합), 공동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법인세특별부가세(법인세로 통합), 등록세(취득세로 통합), 자산재평가세(폐지), 토지초과이득세(폐지).

표 3. 토지 관련 세제 유형

행위	과세표준(징수액 산정 기준)		
	지대	지가	지가차액
취득	-	취득세(도) 증여세(국)	-
보유	-	종합부동산세(국) 지역자원시설세(도) 재산세(시군구)	간주취득세(도)
처분	-	상속세(국)	양도소득세(국)
사용	종합소득세(국) 법인세(국)	-	-

자료 : 김윤상. (2002). 『토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163쪽 <표 5.3>을 갱신함.

주 : 괄호 안의 (국)은 국세, (도)는 도세, (시군구)는 시군구세를 의미함.

조세 및 부담금을 통한 기초 계층에서의 지역자산화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등 토지가치를 조세나 부담금 등을 통해 '제대로' 환수하여 중간 계층의 세부적인 지역자산화 모델의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아래에서 살펴볼 TIF이다.

나) 개발지역 단위의 '조세담보금융제도'(TIF, Tax Increment Financing)

조세담보금융제도는 공공 재원조달 수단으로, 특정 지역에서 향후에 증가할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경제 발전 프로젝트나 공공 개선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후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채권의 원리금을 충당하게 된다. TIF와 유사한 가치 포착 전략들이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초의 TIF는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다.¹⁰³⁾ 그리고 2004년에 이르러 미국의 50개 주 전체가 TIF의 사용을 승인하였다.¹⁰⁴⁾ 이 제도는 미국의 주정부들이 연방정부에서 지급 받던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새로운 재원조달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TIF가 겨냥하는 주된 목적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원조달, 난개발 방지 및 무임승차 차단 등이다. 운영방법은 크게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 [TIF 구역 지정 → 조세수입을 담보로 채권발행 → 기반시설 정비 및 토지용도 변경 → 종전보다 증가된 조세징수 가능 → 채권상환].¹⁰⁵⁾

사실 TIF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나 각종 부담금 등과 유사한 성격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재산세나 부담금 등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반면, TIF는 부동산 가치가 오를

103) 미국이 TIF 방식을 적용한 사례는 19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해에 그레이트 마이애미 강, 리틀 마이애미 강, 매드 강 유역에서 대홍수가 발생하여 데이톤(Dayton)과 오하이오(Ohio) 남서부 지역에서 수 백 명이 목숨을 잃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수해 재발을 막기 위해 댐 건설을 비롯한 종합적인 수해방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로 수해를 받는 지역의 재산권자들에게서 지대를 징수하였다. 징수 규모는 필요 경비의 3배에 달했다(전강수·한동근, 2000: 137-138).

104) https://en.wikipedia.org/wiki/Tax_increment_financing (2016년 5월 3일 검색함)

105) <http://cafe.naver.com/urbanprofessional/1389> (2016년 5월 3일 검색함)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미실현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공간 범위에 있어서는 자치구 단위의 재산세와 사업부지 단위의 부담금의 중간 정도인 커뮤니티 단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자산화 전략에 부합하는 접근법이다. 다만 한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국회가 재산권의 세율과 과세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 중간 계층에서의 지역자산화 모델 (재산권 전환)

가) 국공유지 지역자산화 모델 : 공공토지임대제

공공토지임대제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과 기업 및 정부 기관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주고 대신 토지임대료를 받는 제도로(조성찬, 2011: 318), 한국에 전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2009년 군포에서 시범 실시되었으며 2011년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공급된 토지임대형 주택이 모두 공공토지임대제에 속한다.¹⁰⁶⁾ 공공토지임대제는 공유재산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토지를 개별 사용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공공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하도록 토지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국공유지 지역자산화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조성찬, 2014에서 제시한 모델 재구성).

- [핵심 원칙] 어떠한 개인과 기업(후세대 포함)도 평등한 토지사용권을 갖는다.
- [토지사용권 분배] 경매, 입찰 등 시장경쟁방식을 통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사용자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체인 경우 감정평가 지대에 기초하여 토지임대료 협상 및 토지사용권 양도를 할 수 있다.
- [토지사용권 처분] 토지사용권은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토지사용자는 자신의 토지사용권과 지상개량물을 양도, 재임대, 저당, 증여, 상속할 수 있다.
- [재산권 보호] 공공이익 또는 도시계획의 필요를 제외하고, 개인 및 기업의 합법적인 토지사용권을 보호한다. 불가피하게 회수하게 되는 경우, 남은 사용권 기간과 건축물의 가치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
- [토지사용권 기간] 토지사용권 기간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설정한다. 가령 20년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사용권 기간은 20년, 40년, 60년이 될 수 있다.
- [토지사용권 연장] 기존 토지사용자가 계속해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평가되었거나 재조정된 감정평가 지대를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매년 지대납부] 도시경영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거품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지대 또는 감정평가 지대에 기초하여 매년 지대를 납부한다.
- [조세대체] 토지사용자가 매년 납부한 지대에서 각종 세제와 부담금 등을 공제한다.
- [지대 정기평가] 지대는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년도에는 생계비지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중 최적의 지표를 연동시켜 재조정한다.

106) 정부가 2009년 2월 6일 공포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과, 같은 해 10월 19일에 공포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공토지임대제의 근거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었다.

공공토지임대제 시행 관련 현행 법적 체계도를 살펴보면 아래 <표 4>와 같다. 개략적으로만 보면, 헌법에서부터 구체적인 실행법 수준까지 어느 정도 법적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다만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못해 공공토지임대제를 지원하는 헌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못했다는 점,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기본법 성격의 <공공토지임대기본법>(가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은 보완 방향이다.¹⁰⁷⁾

표 4. 공공토지임대제 시행 관련 현행 법적 체계도

구 분	주요 법률
최고법	• 헌법
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국유재산법
지원법 I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원법 II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 행 법	주택분야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법 • 임대주택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분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업분야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농업분야 • 농지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 농어촌정비법
대안경제 지원	• 협동조합기본법

나) 공공재 지역자산화 모델 : ‘서울 7017 프로젝트’에 적용

이 모델은 도로, 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들을 마을공동체가 소유·운영하는 지역자산으로 전환 하자는 것이다. 사실, 어떤 공공재이냐에 따라서 지역자산화의 필요성과 기대수익 보장 능력은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역 7017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새로운 각도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대신 녹지를 조성하여 사람이 오가고, 서울역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로 전환한다고 밝혔

107) 토지+자유연구소, 「사용자 중심의 토지와 주택을 위한 정책과제」,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과제, 2012.

다.¹⁰⁸⁾ 그런데 도시재생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진보한 것은 분명하나 가치순환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진전은 없어 보인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가치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환수하느냐의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가치순환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비와 관리비는 시 재정과, 도로상의 공간을 임차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젝트로 인해 오가는 이들의 효용도 증가하지만 주변 지역의 상권 및 빌딩의 효용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TIF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주변 상권 및 빌딩이 누리게 될 효용을 어떻게 환수(Value Capture)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런데 행정 주체는 여전히 이 지점에서 문제의식이 약하다. 이해(利害)가 이해(理解)를 결정한다. 시민들을 이해관계의 새로운 건강한 주체로 설정하고 주변 상권의 이해(利害)관계와 연결고리를 맺어주면 주인이 된 시민들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용(증가하는 지역의 토지가치)을 새롭게 이해(理解)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가도로의 지역자산화 내지 시민자산화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시민투자를 받아서 고가도로를 시민자산화 하고, 민과 관이 합자하여 '지역자산관리회사'를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도로 공간상의 임차 상인 및 프로젝트 효과를 누리는 주변 상권 및 빌딩 등으로부터 각각 임대료 및 세금으로 그 가치를 환수하는 일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용과 효용의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가치순환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자산(또는 시민자산)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투자처이면서 새로운 의미의 은행이 될 수 있다.

다) 사유재 지역자산화 모델 : 마을협약, 토지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CLT)

① 마을협약

마을협약은 이미 앞에서 장수마을 및 신촌상가에서 살펴본 것으로, 순수하게 마을 주민들 즉 재산권자와 세입자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지역의 필요에 맞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정책 프로그램 및 재원을 통해 마을협약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주민들 스스로 협약을 맺어 자체적으로 구속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 폭이 훨씬 넓다(조성찬, 2015: 160-175).

마을협약 방식은 사유재를 공동체의 지역자산으로 그 소유권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 자산이 준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될 때, 자체적인 협약으로 자산의 소유·사용·관리 등을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임대료 인상 억제 등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활용될 수 있다.

② 토지협동조합

토지협동조합은 지방정부는 물론 기존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 사회적 자본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민간 토지를 지역자산으로 전환한 후 지분에 따라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 토지협동조합을 정의하면,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획득과 사용을

108) 서울특별시. (2015).『서울역 7017 프로젝트』.

협동으로 운영하여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 자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토지의 소유와 사용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조성찬·성승현, 2014). 토지협동조합이 주택과 결합할 경우는 ‘토지주택협동조합’이 되며, 상가와 결합할 경우 ‘토지상가협동조합’이 된다. 토지협동조합은 세부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①항의 재산 관리 및 처분 방법을 기초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5. 토지 소유 및 이용 방식에 따른 토지협동조합 모델 분류

토지이용 방식 토지소유 주체	매입(私有)	임대차	신탁	출자
토지사유제 기반	민간토지매입형	민간토지임차형	민간토지신탁형	민간토지출자형
공공토지임대제 기반	공공토지매입형	공공토지임차형	공공토지신탁형	공공토지출자형

자료 : 조성찬·성승현. (2014). 공공토지임대제의 한계 극복을 위한 토지협동조합 모델 및 전통시장 적용 연구. <도시행정학보>. 제27집 제1호: 10쪽.

위의 <표 4>에서 사유재 지역자산화 모델은 민간토지매입형, 민간토지임차형, 민간토지신탁형, 민간토지출자형의 4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토지 매입부담과 재산권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민간토지매입형과 민간토지출자형 및 이 둘을 결합한 모델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성찬 외(2014)는 이러한 결합모델에 기초하여 서울시 중랑구 중곡제일시장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결합모델 외에도 지역 및 자산의 특성에 따라 8가지 세부 모델을 선택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다양한 결합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공공토지임대제 기반에서는 공공토지임차형과 공공토지출자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공동체토지신탁(CLT)

공동체토지신탁이란 비영리 조직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관리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지역 내에서 저장/공유하는 모델로,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지역공동체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방식은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87)가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으며, 전원도시 주창자인 에베네저 하워드(Ebenzer Howard, 1850-1928)가 실제로 레치워스 및 웰윈 전원도시를 만들면서 중심 모델로 삼았다. 이후 이 방식은 영국(80여 개)과 미국(250여 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전은호, 2012).

영국의 ‘주택 및 지역개발법’(SEC. 213.,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92.)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체토지신탁의 정의를 보면 그 개념과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CLT는 지역주택개발조직(CHDO)의 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며 토지를 확보하여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장기간 양도한다. 임대된 토지 위의 개량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저소득층에게 영구적인 지불가능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매권과 재판매가격 결정방식을 보유한다. CLT 멤버는 조례로 정한 CLT 주변지역의 성인이면 누구

나 가능하다. 위원회 구성은 CLT 멤버들에 의해 선출된다. 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동등한 수로 구성된다. i) CLT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ii) 주민이지만 CLT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iii) 조례로 정한 특정 분야의 사람(전은호, 2012).

이 방식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지방정부의 신탁 또는 개인 토지소유자의 신탁이라는 점에서 <표 4>의 ‘민간토지신탁형’ 및 ‘공공토지신탁형’ 토지협동조합과 만난다. 공동체토지신탁은 경우에 따라서 매입을 통해 토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 및 건물의 공동체적인 소유와 이용을 통해 지역의 거주 안정성과 건강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풍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리고 그 핵심 철학과 원리는 지역자산화와 맞닿아 있다.

④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의 기본 개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공공토지 임대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다만 그 성격이 주거가 아닌 상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바로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보다는 ‘공정’이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주거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사회적으로 개인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는 접근법이 설득력이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며, 개인이 창출한 가치를 개인이 향유하되, 대신 지역이 창출한 가치는 지역에게 귀속되도록 한다는 필요성에서 본다면 상가의 경우는 공정한(fair) 시장경제 규칙(rule)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의 토지 확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처럼 지방정부(혹은 산하 공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매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주도하면서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로 매입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 즉, 시민자산화 접근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안 1. SH공사를 통한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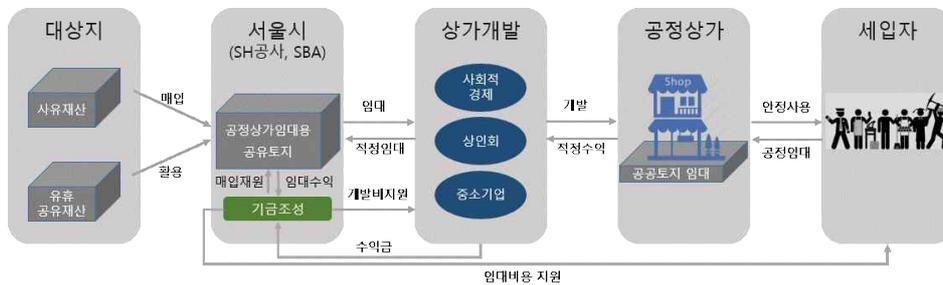
방안 2. 지역자산관리조직을 통한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공급

위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토지지분 전체를 소유하느냐(방안 1), 아니면 지자체와 민간이 토지지분 공동소유 구조(방안 2)로 가느냐 이다. 현재 공유재산법상 민과 관의 토지지분 공동소유는 허용이 안 되고 있으나, 지주공동사업처럼 토지매입시에 민과 관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방안 1을 기초로 시작하되, 향후 활성화 단계에서 방안 2를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방안 1> SH공사를 통한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의 기본 구조

구분	내용	비고
기본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사업자가 매물을 확보한 후 SH공사에 매입 요청. 또는 국공유 토지 활용.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빌려주고 민간 사업자는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확보(적절) 	상가건물은 법률상 일반건물로서 토지와 건물 구분등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국공유 토지가 있는 경우 매입 불필요) • 민간 사업자가 사회적 경제 주체나 상인회 등일 경우 최종 사용자인 상인들에게 재임대 방식으로 공급 • 민간 사업자가 개별 상인일 경우는 직접적으로 토지사용권과 건물 소유권 확보 	
공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지자체 • 건물 : 사회적경제 주체(상인협동조합 등), 상인회, 개별 상인 	
공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임차 상인, 창업 희망자 	
임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권 30년 	재계약 가능
토지임대료(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가의 3~5% 	공시지가 매년 재평가
권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금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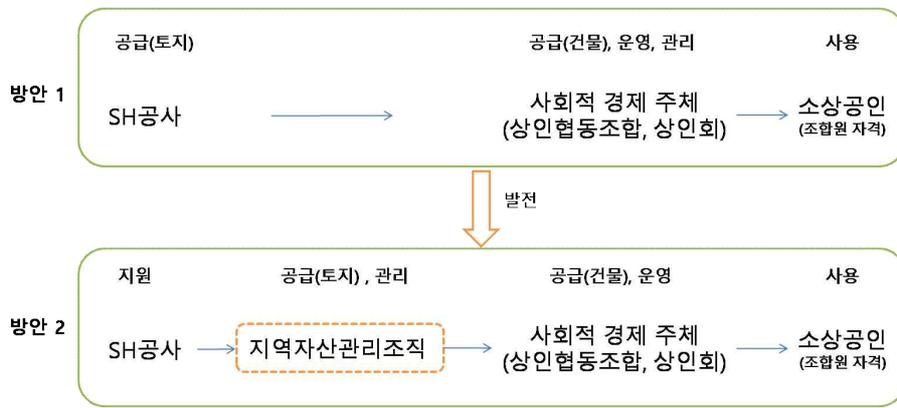


〈그림 1〉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모델

〈방안 2〉 지역자산관리조직을 통한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 공급

방안 1에 따른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한 공급 방식이 확산될 경우 자연스럽게 민관 합작의 지역자산관리조직이 공급 및 관리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가 지역자산관리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공급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이 민관 합작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 경제 주체는 운영에 집중할 수도 있다.

지역자산관리조직이란 시민자산을 추진하는 관리주체로서, 법적인 형식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재단 등의 형태를 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민과 관의 합작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점이며, 주된 역할은 토지의 확보 및 공급(임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즉, 토지를 사회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이 때 국공유지를 임차받거나 출자받아서 확보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출자 및 정부 출자 등으로 민간 토지를 매입하여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토지협동조합 모델(조성찬, 2013)과 유사하다. 그리고 토지가치를 환수하여 지역내 발전을 위해 재투자 하며 일부는 외부와 토지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공공토지임대형 공정상가의 공급 구조 및 발전 방향

다. 상위 계층에서의 지역자산화 모델 (사회투자금융)

토지와 관련하여 금융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금융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하면 지역과 자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이다. 조성찬(2012: 79-106)은 그의 연구에서 우리 사회를 ‘토지+금융 매트릭스’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 시사하는 바는 경제의 최하층에서 토지사유제에 기초하는 토지가치의 사유화와, 경제의 최상층에서 신용화폐에 기초하는 채무 노예화가 우리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책은 당연히 두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자산화 모델에 대한 접근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대안적인 사회투자금융 기법들과, 여기에 더해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화폐 실험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기초 계층 및 중간 계층의 지역자산화 모델과 결합되어야만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가령,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기초로 하여 이를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아래 〈표 6〉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¹⁰⁹⁾

표 6. ‘공유자원소득 + 지역화폐’ 연계 모델 핵심 변수

핵심 변수		내용
공유자원 유형	예산	(1) 기금
		(2) 재산세 증세
	토지	(3) 공유자원세 신설
		(4) 지방교부금(종합부동산세 강화 또는 국토보유세 신설)
		(5)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시행
		(6) 공유자산 임대 소득
	사회자본	(7) 사회신용
		(8) 기타 : 빅데이터

109)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연구 참고 : 조성찬, 「공유자원에 기초한 기본소득+지역화폐 연계모델 연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 발주, 2017 ; 공저(조성찬), 『기본소득 별별 이야기』, 녹색전환연구소 엮음, 2018.

공유자원소득 지급 방식	(1) 일괄분배 방식 (2) 보험 방식
지역화폐 운영 주체 및 역할	(1) 지방공공은행 설립 (2) 지역화폐 발행 및 공유자원소득 지급 (3) 서울시 금고 역할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출사업 (5) 기타

라. 통합 모델 : 지역자산화 특구

이상 3개의 계층별 지역자산화 전략 및 세부 모델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공유자원의 유형화에 따른 접근법이다. 그런데 지역자산화에서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점(點) 및 선(線) 접근만으로는 한계를 내포한다. '면(面)' 접근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 공간 내지 지역 위에서 3계층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모델을 추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을 특구 모델이라고 한다면 특구 모델은 하나의 '지역자산 생태계'이다. '특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에 기초하는 실험을 전개하자는 취지다. 지자체 또는 대도시의 자치구는 특정 지역을 이러한 특구로 지정하여 재원을 지원하면서 실험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4. 지역자산화 영국 사례 요약¹¹⁰⁾

1) 잉글랜드 민와일 스페이스(Meanwhile Space)

- 2009년 설립, 정부나 지자체, 민간으로부터 비어 있는 공간을 빌려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운영기간 한시적
- '커밍순 클럽' 프로젝트
 - 세입자를 찾지 못해 10년간 비어 있던 공간 공짜로 임대. 전기요금과 난방비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됨.
 - 무료 임대 가능 이유 : (1) 세금 절감(60평, 세금이 1년에 34000만 원. 공동체 이익회사가 빌리면 80%까지 감면. (2) 사용자들로 땅값 하락 방지.

2) 굿윈 개발신탁

- 지자체, 민간으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이전받아 공동체를 위해 활용
- 보증책임 유한회사 : 공동체 이익회사(CIC)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위한 수익활동을 하며, 이 수익은 투자자들과 나누지 않고 회사에 재투자,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
- 2013년 2월 기준, 건물 22개 소유, 연매출 약 146억 5000만원

110) 책, 『마을의 귀환』에 나오는 잉글랜드 자산화 사례를 요약함.

- 2차 대전으로 폐허. 잘못 진행된 도시재개발. 도시 쇠퇴. 버려진 자산을 이전받아 활용하기 시작.
- 영국에 가장 빈곤하고 사회적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 가장 좋은 보육시설 보유
- 그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중.

3)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회사(HCD)

- 1979년 시작된 주거협동조합의 연합체
- 2차 세계대전 폐허, 빈 공간 활용. 일부 건물은 구청이 기증, 저렴하게 매입
- 사회적 가치 혹은 커뮤니티 정신을 실현하는 회사에 임대
- HCD는 해크니를 위한 사회적 경제를 꿈꾸고 있음.

4) 로컬리티

- 마을만들기 사업체 연합
- 정부, 지자체, 기업의 빈 공간을 장기적으로 빌려 공동체 활동에 이용
- 마을활동의 제약요소 3가지 : 책임감 없는 소유권, 관료제, 기부자들
- 마을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어떻게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만들 것인가
- Localism Act(지역주권법) : 2011년 잉글랜드에서 제정. 지역공동체에 가치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 토지 소유자는 6개월 동안 공동체가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

5) 스티븐 클레어 (로컬리티 디렉터)

- 마을만들기가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 사회적 기업 형태를 취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것이 필요.
- 독립성을 갖게 되어 구청과 '갑을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필요. 하지만 구청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지원받는 파트너십도 중요.

5. 결론

북한산 둘레길 제10길(내시묘역길)을 걷다 보면 영국의 걷기 문화를 소개한 안내판을 만나게 된다. 그 안내판에 따르면, 사유재산인 시골 보리밭의 경계선이 오랜 기간 밟혀서 산책용 길이 되면 정부가 이를 Public Foot Path(공공산책로)로 지정하여 주인에게는 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행자들에게는 통행권을 부여한다. 그 핵심 이유가 푸른 자연과 신선한 공기 및 고요함은 만인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자산화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다. 어느 곳 하나 맘 편히 밟 디딜 곳이 없게 되어버린 사유재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경제적 약자들과 청년들 및 후세대들을 위한 '숨통'을 띄우게 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아닌, 원래의 공유자원의 본질과 목적을 시장경제 방식으로 회복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수단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은 전에 없던 새로운 공유경제 실험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미래를 지금 다시 회복하는데 의미가 있다.

경의선공유지운동과 대안공유지계획

- 하늘·땅·물·햇살은 우리 모두의 것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우리가 현재 생활하는 토지는 인간의 집단적 노동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2012.>

요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도시문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땅의 문제이고, 지가(地價)의 문제이며, 사유화(私有化)의 문제이다. 땅은 공기와 같이 지구에 주어진 기본적인 조건이며, 땅은 공기와 같이 인간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땅은 인간의 집단적 노동에 의해 밭으로, 논으로, 대지로, 도시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땅과 도시는 모두가 함께 일구어 만든 것으로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도입이후 땅은 상품화되고, 사유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지리적불균등 발전을 통해 토지의 교환가치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며 토지의 상품화를 가속시켰다. 이는 곧 토지를 자본축적의 도구로 만들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인간 삶의 기본재인 토지는 자본가의 사유물이 되고, 토지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을 자본에 복속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토지를 소유한 자본가는 토지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 등을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고, 임대료를 높이며 자본을 축적한다. 이런 자본축적은 원주민이 생활 터전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당연한 귀결을 만들어 낸다. 즉, 시민들이 토지를 어떻게 사유(思惟)하고 있느냐에 따라 도시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만들어진다. 토지의 사유화 등 자본주의 체제를 온전히 인정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는 토지 자본권력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이 사회안전망은 도로, 공원, 광장 등의 공유지의 확보이며, 공유지를 통해 공유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시민주체의 발굴이다.

“대도시에서 민주주의적 (도시)사회운동은 공공재(공유지)를 생산하고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2012.>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사회안전망은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도시는 대자본에 의해 대형개발 위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건물을 소유한 자본가들은 임대료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지역 상권을 재편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정부 소유의 공유지까지도 대기업, 자본가에 의해 개발되고,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경우도 많다. 공유지는 정부가 소유한 사유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부에 맡겨둔 시민들의 자산임에도 말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민들은 시민들의 자산인 공유지를 보호해야만 한다. 지금 시민들에게는 크고,

멋있는 대기업의 빌딩보다 작고, 소박하더라도 시민들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공유지가 더욱 절실하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공유지인 '경의선 공유지'는 대형개발과 관 주도형 공원조성에 의해 주변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변지역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용산에서 마포까지 6.3km 구간의 경의선 공유지를 대자본에 팔아넘기는 행위에 반대하는 '공유지 시민 자산화 운동'이고, 시민들의 자산인 공유지의 공공성을 되찾고자 하는 '도시에 대한 권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의선 공유지에서 나타나는 도시문제는 최소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할 공유지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다. 즉, 우리 사회의 공유지 개념의 부재로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유지'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로 통용된다. 따라서 공유지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유지 개념에 대한 확장과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경의선공유지운동

경의선공유지는 경의선의 지하화로 만들어진 지상부에 시민주체들이 모여 공유지의 활용방안을 제안했고, '늘장협동조합'을 만들어 2013-15년까지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며 지역경제생태계 활성화와 공유지의 공공성을 확보해 온 곳이다. 하지만 2016년 5월 21일에 서울시는 경의선 숲길 6.3km 전 구간 개통을 발표했다. 공원 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은 아파트로 개발되었으며, 지가의 급등으로 내몰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해 경의선 구간 중 4개 부지에 복합역사 건립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미 공덕역에는 부지 15,868㎡에 지상24층 규모, 390실 규모의 호텔과 업무시설을 갖춘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가 완공 되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개 부지의 개발사업, 공원화에 따라 연간 300억 이상의 수익가치를 창출은 물론 부동산 가치상승 등을 감안해 1조483억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는 검토단계에서 지가의 상승과 부동산 투기에 의한 내몰림 현상을 예견하고 있던 것이다. 이에 '늘장협동조합'은 2015년 말에 마포구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여러 시민주체가 '늘장협동조합'과 결합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시민주체가 직접 계획하고·만들고·활용하는 시민주도의 주체적 공유지 활용을 모색하며 현재 까지 활동하고 있다.

대안공유지계획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문제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최근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유권과 처분권 등의 사적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토지 소유권 방식은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의 공동자산인 국·공유지 또한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기업 등에 매각되고, 난개발되고 있다. 이에 공유지를 시민력을 통한 지식과 예술의 융합과 새로운 도시 녹지의 관리 모델 창출로 시민, 사회적가치, 점유(공개념), 사용가치등 공유자원 기반으로 협력형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안한다.

1)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리서치커먼즈’

경의선 주변에는 많은 대학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 주변 대학자원의 연계와 다양한 시민연구 주제에 대한 실용적, 실천적 연구를 진행하는 플랫폼을 제안한다. 플랫폼은 시민들의 현실적 문제해결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공간이다. 리서치커먼즈는 첫째, 지식의 공유를 통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시민대학, 시민연구센터로 ‘지식의 공유’ 둘째, 지식공유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강연장, 세미나실, 연구실 등의 ‘공간의 공유’ 셋째, 협동조합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간 건설 및 관리 등의 ‘자원의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2) 경의선 숲길을 커머닝하는 ‘도시커먼즈시민센터’

설치 시설 중심의 경의선숲길을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를 통해서 도시의 커먼즈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시민활동 거점을 제안한다. 현재 경의선숲길은 구간별로 조성 컨셉과 조성 업체가 다른 조각보 같은 공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공원관리 규정에 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 사용에 대해 제약이 존재한다. 도시의 공원은 인접성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용이 보장되는 공간인 ‘커먼즈’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공간의 운영뿐만 아니라 수목 등 식생의 관리와 이식까지도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공원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시설관리 중심에서 시민들의 공원 활용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거주자의 앞마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의 공동공간이 되는 도시 커먼즈로서 도시공원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3) 일시적 사용,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의선광장’

도시의 공공공간은 개별적인 소유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배타적 공간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적이 서로 섞이면서 공존하는 다양성의 공간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국·공유지 관리 원칙 역시 사용 목적을 정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의선 커먼즈 공간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실험적 장소이자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만드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시민들의 자기 문제해결을 위한 ‘일시적 사용’ 공간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제안계획에 대한 방법은 현행 국토교통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근거하여 첫째, 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 활용협약을 체결 둘째, 서울시는 경의선 부지에 공유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 셋째,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파트너로 경의선 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와 장기점용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공유지운동과 시민공동체 확장 전략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2018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 발표문

2018.04

이승원

경희대학교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1. 지난 촛불의 '광장정치'는 대의제 정치의 환상을 깨뜨리는 '탈구적 사건'에 대한 대중의 원초적 정치
- cf. 포퓰리즘

1. 그렇다면, 깨어진 환상의 틈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일까?

“불안” 에 대한 대중의 자율적, 즉각적 대응

- 불안: 아직 해석되지 않은, 무언가 '나' 에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공포영화의 플롯

- 1단계: 불안 -> 2단계; 불안의 원인에 대한 대응

광장으로 모임

불안과 분노의 '공유'

기존 '의존체(정당, 정치인, 시민사회운동 단체)'에 호소하고 싶으나, 그 의존체가 불안, 분노의 원인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 사회를 정신분열증적 상태로 빠뜨림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무너짐

대의제 기반 정치적 관계의 흔들림

사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현대정치사의 특징

대의제라는 기표에서 이탈되어온(실망해온) 기의 혹은 또 다른 기표들(가치, 다양한 집단들 등)이 다른 결절점/기표를 찾지 못해 다시 기존 기표(대의제, 제도권 정당, 비판적 지지)로 돌아와 순응하고 접합되어야 하는 비극의 반복

이 상황은 언제나 자신의 정치적 권위/권리를 위임해야 하는 시민들이 언제나 불안함, 불만족, 불편함을 가지도록 함

결선투표제, 연동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의 필요성 대두

결국 대의제 정치만으로는 시민들의 모든(일상을 포함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남

그러나 '시국선언'이 공감/연대/충돌/갈등하면서 다양한 '권리선언'으로 광장에서 토론되고 진화하기보다는 '탄핵'으로 집중됨

공론화의 공간을 만드려는 시도들

- 온라인 의회
-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 다양한 플랫폼 운동

그러나 의제가 많이 나오고 논쟁을 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차이와 의견이 인정되고 사실상 공감되고, 실험되어야 함

유럽 중세 카니발과 사육제

현대 정치에서의 봉기와 선거의 관계

결국 대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논의가 확산되지 못함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

- 1) 다양성과 차이의 인정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인가?
- 2) 무엇이든 하나를 정하고 그 다음 순서를 확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인가?

- 2)는 과연 직접 민주주의인가 (배제된 자들에 대한 태도)

대의제의 한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출범 1년이 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 포용적 경제성장
- 혁신 성장
- 사회적 가치와 인권

이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 1) 전폭적이고 끊임없는 새로운 개혁정부에 대한 지지와 함께
- 2) 중앙 대의제 권력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시민들의 자율적인 정치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

- 정부의 한계가 위기 아닌, 시민의 자율성으로 채워져야 함

대중

->

시민

- 공화제의 자원(공공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관리'해야하는 의무 주체
- 향유만은 독재, 관리만은 노예

불평등

양극화

젠트리피케이션, 세모녀 사건, 혐오범죄, 영세 상공업자, 이주 노동자, 청년실업, 인구절벽, 소비 증가 등

기후온난화 및 생태계 파괴

- OECD 최고의 자살률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희생
- 혐오·보복형 범죄의 확산
- 공적 영역의 사영화(privatization)에 따른 공공성 및 사회안전망의 붕괴
- 경쟁 중심 교육과 기업형 자기계발이 만든 인간성 파괴와 공동체적 가치의 붕괴
- 소비주의 심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생애주기의 악화
- 성장주의가 초래한 생태적 위기
- 극단적 민족주의·국가주의나 테러 담론화된 전쟁과 평화 문제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정된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이동할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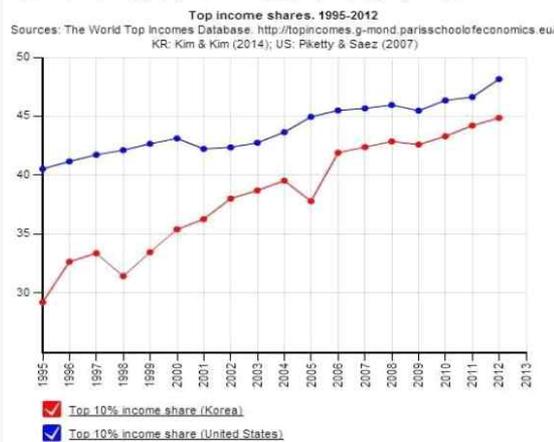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존엄하고 평등할 권리,

그리고 사회의 위기

추정되는 전 지구적 지니계수 (1820~2001)

연도	지니GINI
1820	43.0
1850	53.2
1870	56.0
1913	61.0
1929	61.6
1950	64.0
1960	63.5
1980	65.7
2002	70.7

한국의 상위10% 소득비중추이(1995~2012)



UN의 목표 변화

새천년개발목표 (MDGs, 빈곤퇴치목표)의 한계와 실패

UN SDGs : 제3세계 빈곤문제에서 전지구적 사회경제 양극화와 민주주의 악화에 대한 대응

- 나쁜 주인으로서의 금융자본 / 부채사회
- 나쁜 노동의 확산 / 빈곤의 확산
- 표준화된 질 낮은 공공서비스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약화
- 공교육 기능의 상실 / 미래에 대한 불안감
- 죽은 자가 산자를 대신하는 약한 민주주의 / 대안의 상실, 주체의 부재

(로베르토 응거)

21세기 글로벌 사회의 위기 (2017 WEF 세계 위기 보고서)

- 소득불균형
- 기후변화위기
- 사회양극화 심화
- 사이버 의존성 상승
- 인구고령화

‘포용적 성장과 발전(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을 중요한 화두이자 과제로 제시

시민/주민/권리적 정체성 집단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각종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고 스스로 존엄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그 자원은 현 정부에 대한 지지 뿐인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기다림', '요구'만이 사회운동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의 전부인가?

불만을 정제하고, 정책적 의제를 만들고, 이를 정부와 의회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만이 대의제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치/운동의 전부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원은 과연 우리의 자원인가?

'좋은' 정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가?

정권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롭게, 향후 어떤 정권이 선거 민주주의의 결과로 우리를 대표하더라도 우리의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자원/커먼즈(communs)**는 무엇인가?

자살과 혐오범죄, 불안한 생애주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동료시민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 자산(**철학적, 사회관계적, 정치경제학적**)은 무엇인가?

여기서 자기 자산 혹은 자원은 **'사유/사적 소유'**라는 패러다임에 머물러야 하는가?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한 근대정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사적 소유권'의 보호이며, '대의제 관료제'를 기본 통치구조로 받아들임

즉 **사적 소유권이 유지되는 전제** 아래에서 **'공적 영역'** 또는 **'공공성'**이 분리되어 제시

공적 영역 또한 사용하는 주체인 시민/주민들의 자기결정과 자율성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이 또한 중앙관료에 의해 관리됨

신자유주의 이후 공공부문 민영화로 결국 자기 자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배제/낙오됨
(소비무능력자)

대의제 정치,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정치가 새롭게 변화해야 함

운동정치는 공공성 확장 및 공공성의 유지를 대의제 기반 관료제를 넘어선 시민 관리로 확산시켜야 함

우선적으로

기존 사영화된 공적 영역, 공적 자원은 커먼즈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져야 함

- 공적 사유화 방지 (진주의료원, 한전, 서울대 등)
- 탈민영화와, 공공재를 관리하던 기존 낡은 체제의 복귀와는 구분되어야 함

커먼즈를 지역, 마을에서 시민들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싱 바로 일사으이 정치이자 직접 민주주의의 영역임
(자원제공 없는 결정권의 한계)

커먼즈의 일상정치 : 정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동정치가 확장되어야 하는 지점

정당정치의 역할과 운동정치의 역할의 구분
- 커먼즈의 정치

양자가 근대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존 역할을 넘어서, 시민들이 자율성과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되어야 함

커먼즈의 정치란?

불안을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원초적, 그리고 본질적인 정치 (포퓰리즘의 미래)

자원이 있는 모든 곳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 '자원': 특정한 패러다임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또는 구성요소
- '지식': 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고 연결하는 담론들의 집합 (자원 생산, 가공, 활용 등)
- 왜 **만 자원이고 %%은 쓰레기인가? 어떤 미래인가?
-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원 : '개발', '투자' 와 함께 사유화, 인클로즈드화, 독점화 됨

커먼즈의 정치 / 정치적인 것의 커머닝

- 자원을 둘러싼 현재 권력관계에 대한 저항이자
-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자원들을 창조하는 행위이며
- 전문가/엘리트/관료적 대의제를 넘어선 다양성 가치 기반 심의/직접/급진 민주주의
- 대상에 대한 지식담론, 대상을 둘러싼 사회, 윤리적 관계에 대한 재구성 (노동의 재구성)
- 대안적 삶, 대안적 윤리, 대안적 정치
- Commons of power, commons of decision process
- 전환 전략으로서의 '커먼즈의 정치'

그러나, 커머닝 또한 '자원'에 대한 또 다른 담론적 접근

즉, 커머닝 = 또 다른 권력관계의 재구성, '커먼즈'

자원을 둘러싼 기존 권력관계 = 타자의 욕망이 강력히 지배하는 불평등과 차별, 고통의 악순환

커먼즈 권력관계 = 타자의 욕망에 종속된 분열증적 상황, 불평등, 차별, 고통의 감소

- > 유토피아가 아니다. 커먼즈 상태는 자원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끊임없이 질문, 비판, 성찰, 재구성하는 과정이 민주적인 상태일 수 있다

어떤 커먼즈를 중심으로, 어떤 문화, 어떤 윤리,
어떤 제의적 신뢰 기반을 형성할 것인가?

그 시간은 어떻게 보장되고,
누가 참여하게 되는가?

다시 커먼즈의 정치 / 정치적인 것의 커머닝

1. 자원을 둘러싼 현 권력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무의미하게 하는 전략 (윤리의 재구성)
2. 현 권력관계에 연결된/접합된 각 주체위치, 정체성들의 실질적 의미들의 기원에 계보학적 질문을 던지고, 해체시키고 재구성하기

다시 커먼즈의 정치 / 정치적인 것의 커머닝

3. 주체의 주체화/정체화에 대한 자유와 평등
4. 개개인의 시민역량강화에 집중
5. 탈중앙화/분권화 (지구->지역, 국가->도시, 독점->공유)

다시 커먼즈의 정치 / 정치적인 것의 커머닝

6. 대의제와 자기결정/직접 민주주의의 균형
7. 파트너 국가 Partner State (Michael Bauwens)
8. 자율성과 존엄성의 토대

전환 전략으로서의 커먼즈의 정치

1. 비용보다는 희생의 최소화
2. 근대적 시간, 노동, 교육, 교환, 생애주기로부터의 탈출 -> 새롭고 다양한 연결을 통한 (권력)관계의 재구성
3. 노동의 소외에서 쉼의 소외로 문제의식의 전환
4. 민주적 실험주의(전문가를 넘은 다양한 주체들의 자기결정 과정)
5. 틈새전략 : 징가게임 (무너뜨리지 않는 조각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는 조각 찾기. 이는 곳 그 구조와 공학을 이해해야 함)

자율성과 존엄성 회복으로서의 '커먼즈의 정치'

1. 센 - 자유로서의 발전, 누스바움 - '역량capabilities' 접근법
2. 타자에 의한 자원의 제공 (언제나 '좋은 ' 에 대한 질문과 기대를 갖게 됨. 의존성) - '가만히 있어라 '
3. 인도 서북부 구자라트 주 대도시 아흐메다바드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 바산티 - '여성자영업자조합Self-Employed Women's Organization SEWA'의 지원으로 삶의 변화. '지원으로', '지원으로'
4. 그녀에게 그것이 **처음부터 커먼즈였다면...**
5. 희생이 강요되는 과정과 절차가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서의 정치

|| 경의선커먼즈 발족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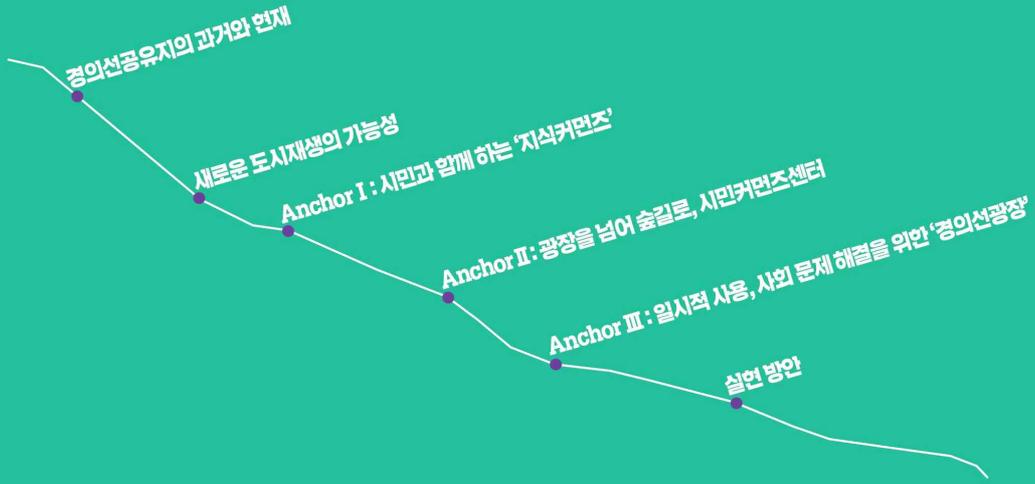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커먼즈추진위 준비팀



CONTENTS



경의선 연혁



역세권 개발이 한계에 직면한 공유지

이랜드공덕역 개발사업 현황

- 2011년 사업주관자 모집
- 2012년 사업추진협약 체결, 출자회사 설립(이랜드공덕역)(30년+α)
- 2013년 지구단위계획(안) 접수(이랜드공덕역)
- 2016년 사업제안서(안) 접수 사전협의
도시계획변경 사업제안서 접수(이랜드공덕역)→ 마포구청
- 2018년 사업추진 정체

현행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

- ◆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과정
- ◆ 도시의 다양성보다는 표절하고 모방하는 내용
- ◆ 거주를 넘어서는 도시성의 부재
- ◆ Top-Down 방식의 사업 추진
- ◆ 시민이 아니라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 방식

공시지가 마포구 열리동 168-10



자식, 공유, 시민의 공헌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제표

공유자원 기반, 협력형의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필요성

소유자/주민	요구와 의무에서 책임과 권리로	시민
경제적 가치	가격으로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가치	사회적 가치
소유(사개념)	누구의 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가로	점유(공개념)
소비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쳐서 쓰는 것으로	사용
자원 기반	현상 유지가 아니라 미래 변화	가치 기반
public	누구에게나 열린 곳에서 누구에게나 속하는 곳으로	common



도시공간의 '일시적 사용'을 강조하는 흐름
Temporary City

소셜펀딩을 기반으로 하는 런던 스페이스 하이브의 프로젝트



지역,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대안공유지 계획의 가치 : 행동, 내용, 목표의 차원

행동의 차원

공유, 생태

일시적 사용을 통한
공간의 새로운 공유

이용하는 광장과 도시 공원 모델

자원순환형 공간 운영 모델
동본위회폐 화장실, 도시폐기물 재활용

내용의 차원

지식, 문화, 예술

대학담장을 넘어선
지식 생산모델

지식커먼즈혁신센터

도시재생의 문화적 개입
공공예술 실험실, 시민을 위한 디자인

목표의 차원

융합, 혁신

학문지식-시민문제의 융합

시민연구지원

도시공원의 대안적 관리방안 모색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원 커먼즈

지역,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사업명 : 공유지식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경의선커먼즈 계획>

기본 방향 : 시민력을 통한 지식과 예술의 융합과 새로운 도시 녹지의 관리 모델 창출

기본 방향의 근거

- ① 산업/기술이 정부나 기업주도의 하향식 혁신이라면 지식과 예술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혁신이 자연스러운 영역이다.
- ② 기존의 공원 개념은 도시 내 녹지가 가지고 있는 인공적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담는데 한계가 있다.
- ③ 도시의 변방이 아니라 도시의 중심에 새로운 공유지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도시 혁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사업추진: 기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포함하여 교수연구단체, 도시 커먼즈 전문단체 등이 구성한 '공덕커먼즈 추진위원회'
- 사업비의 조성: 민간자체 조성(51%) + 공공재원 조성(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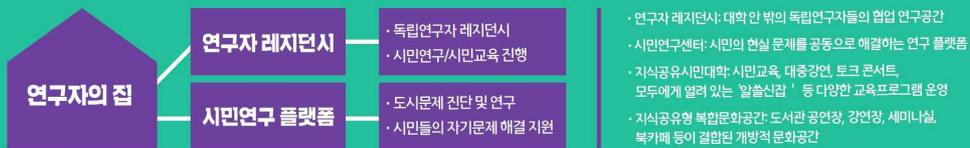
* 해당 사업은 5년 간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조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재정계획 역시 개별 시설, 공간 조성 단계별로 설정한다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Anchor I : 시민과 함께 하는 '지식커먼즈'

대학 안 밖의 독립연구자들을 위한 연구공간과 시민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 경의선 주변 대학자원의 연계와 다양한 시민연구 주제에 대한 실용적, 실천적 연구 중심
- 시민들의 현실적 문제해결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공간



프랑스 마르세유의 Les Têtes de l' Art (TDA)가 시행하는 '예술의 장소' 프로젝트: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반퍼니처를 제작하고, 공공공간 계획 과정에 시민들을 참여 시켜 민주주의 과정을 실험하는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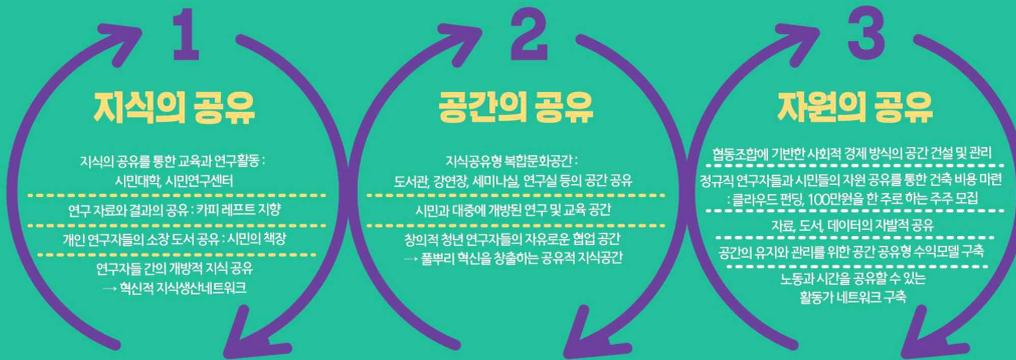


프로 보노 : <공익을 위한>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로, 경제적 이유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Anchor I : 시민과 함께 하는 '지식커먼즈'

리서치 커먼즈 구성의 3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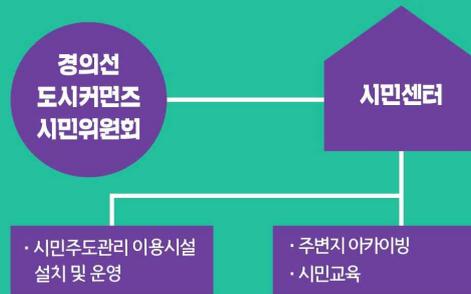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Anchor II : 광장을 넘어 숲길로 '시민커먼즈센터'

설치 시설 중심의 경의선숲길을 시민들의 새로운 참여를 통해서 도시의 커먼즈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시민활동 거점

- 시설관리 중심에서 시민들의 공원 활용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
- 거주자의 앞마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의 공동 공간이 되는 도시 커먼즈로서 도시공원 모델



사이언스 월든 프로젝트: 울산과학기술대 미래부로부터 5년간 100억원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동분위 화폐 공동체 조성연구>. 양변기에 설치된 건조기로 대변을 가루로 만들고 이를 다시 메탄가스로 전환시켜 연료로 사용한다.

일본의 도립공원 중 하나인 사이마구릉공원은 2006년부터 도입된 '지정관리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공원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리 주체인 <세이부 사이마구릉 파트너스>는 5개의 전단체의 연합체로 구성되었다.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Anchor II : 광장을 넘어 숲길로 ‘시민커먼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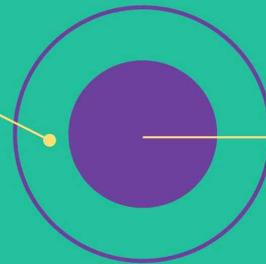


- 경의선숲길은 구간별로 조성 컨셉과 조성 업체가 다른 조각보 같은 공원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인 공원관리 규정에 의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사용에 대해 제약이 존재함.
- 도시의 공원은 인접성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시민들의 이용이 보장되는 공간인 '커먼즈' 로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공간의 운영 뿐만 아니라 수목 등 식생의 관리와 이식까지도 함께 참여해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공원 실험을 진행함.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단계획

Anchor III : 일시적 사용,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의선광장’

아무 것도 채우지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워놓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기 문제해결을 위한
<일시적 사용> 공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시난민' 들의 일시적 사용공간· 시민센터, 다양한 마켓, 공연과 학술대회, 회의와 토론회가 함께 열리는 개방적이고 누구의 것이기도 한 광장



<포럼 캠퍼>이라는 주제로 공간의 독점을 막기 위한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다. 프랑스 파리, 2017.



영국 사우스월에 설치된 임시이용 설치물. 2008.



파리 시내 생마르탱 운하 주변의 노숙인 텐트촌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단계획

Anchor Ⅲ : 일시적 사용,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경의선광장’

도시의 공공공간은 개별적인 소유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배타적 공간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적이 서로 섞이면서
공존하는 다양성의 공간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특히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공간이 필요하지만
이런 공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공공유지 관리 원칙 역시
사용 목적을 정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경의선 커먼즈의 공간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실험적 장소이자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연대를 만드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유지함.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방법론 : 현행 <활용지침>에 근거하여

제8조

활용사업의 계획수립 및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할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제안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 2015.]

1

철도시설공단(국토부)가
서울시와 활용협약을
체결한다.

3

도시재생사업의
민간 파트너로
경의선 혁신클러스터
추진위원회와
장기점용 협약을 맺는다.

2

서울시는
경의선 부지에
공유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범사업을 지정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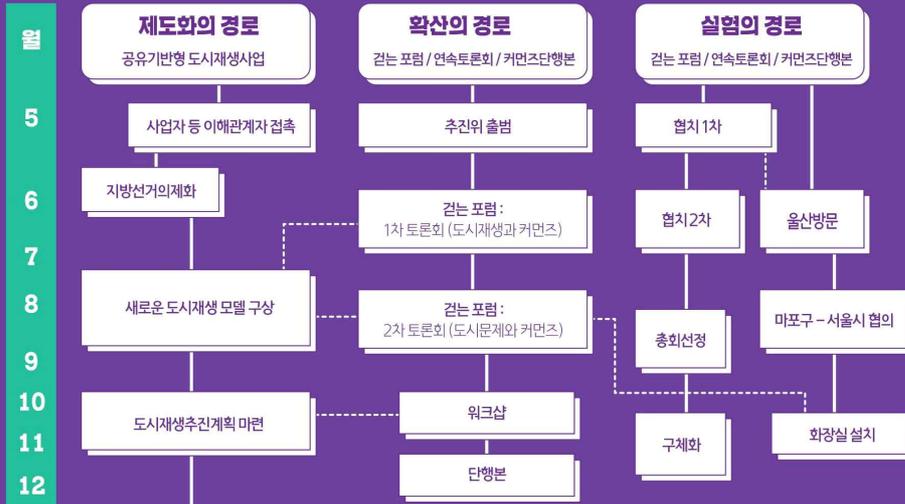


지식, 공유, 시민의 공간을 위해. 경의선 커먼즈 대안계획

2018년, 경의선공유지 추진위는 이렇게 활동합니다

<경의선공유지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발족하면서 이후 어떤 경로를 지나가며 경의선공유지라는 형태를 만들어갈지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제도화의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확산(사회화)의 경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실험의 경로입니다. 각각의 경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경의선공유지라는 가보지 못한 장소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18년
활동
계획(안)



경의선공유지 추진위 발기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공유지의 상상과 실천을 만들어 나갈 민간협의위원회인 <경의선공유지 추진위>가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안적 도시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함께 해주실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기인 신청방법

전화 | 010.9973.2307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사무국장 박선영)

이메일 | publicspaceforcitizen@gmail.com

페이스북 | @publicspaceforcitizen

발기금 모금액 | 10만원 (개인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기금 모금계좌 | 우리은행 1002-942-140140 김성은



경의선공유지추진위를 발족하며

사적 소유와 사회적 위기

‘촛불혁명’과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것을 일부 권력자들이 독점하여 사유화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낡은 질서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화의 문제가 일상의 차원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바로 도시공간이다. 도시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이 펼쳐지고 온갖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인 동시에, 그 공간을 이용하고 전유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만들어낸 공동의 생산물이자 작품이다. 하지만, 투기적 욕망에 기댄 도시개발과정은 이윤 추구를 위한 공간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초래하여, 도시를 자유로운 소통과 만남의 공간으로 자리 잡는 것을 막고 모두의 작품이어야 할 도시를 소수의 독점물로 만들고 있다. 투기적 개발과 공간의 사유화로 인해 도시공간에는 수많은 인클로저들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임대료 상승, 내쫓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불행과 재난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파괴적인 도시화 과정을 낯의 삶 속에서 겪으면서, 경쟁과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투기적 개발과정은 무엇보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유권과 처분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사적 소유권 제도에 의해 증폭된다. 사적소유권을 절대시하는 토지 소유 방식은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도 똑 같이 적용되어, 모두의 공동자산이어야 하는 국·공유지가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매각되어 난개발 되고 있다. 그 결과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개헌 논의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비록 때늦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안적 실천으로서의 공유화 운동

결국 ‘사회적인 것’의 사유화를 절대시하는 기존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실천적 사회혁신운동을 이곳 경의선공유지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치적 공유화를 지향하는 사회운동이 자본주의와 국가주의의 적폐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적 실천운동으로 널리 각광받고 있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양한 방식의 공유화 운동 또는 시민자산화운동이 맹아적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들의 아래로부터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원, 공간, 관계를 공유하는 개방적

자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의 집합적 생산물을 공유하는 대안적 실천은 사유화에 기반한 독식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경로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곳 공덕역 옆 경의선 부지는 이러한 공유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에 속한다. 서울에서 경의선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2005년 경의선 일부 구간이 지하화되면서 그 지상구간에 대한 공원화와 대규모 상업적 재개발이 실시되었고, 이는 인근 지역에서 극심한 임대료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다행히도 경의선 부지 중 공덕역 바로 옆 공간은 아직 미개발된 채로 남아있어, 우리는 이곳을 투기적 개발세력에 의해 사유화되고 상업화된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경의선공유지는 경의선의 지하화로 만들어진 지상부에 시민주체들이 모여 공유지의 활용방안을 제안했고, '늘장협동조합'을 만들어 2013-15년까지 플리마켓 등을 운영하며 지역경제생태계 활성화와 공유지의 공공성을 확보해 온 곳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늘장협동조합'은 2015년 말에 마포구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았다. 이에 여러 시민주체가 '늘장협동조합'과 결합해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은 시민주체가 직접 계획하고·만들고·활용하는 시민주도의 자치적 공유지 활용을 모색하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경의선공유지, 대안적 도시재생의 실험실

경의선공유지에서 우리가 하려는 실천은 단순한 공간의 공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보려는 것이다. 부동산의 사유화와 투기적 이윤을 지향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은 임대료의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우리는 공간을 사유화하여 소유하기 보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 모두가 공유해 사용하기를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가치는 다음과 같다.

- (1) 공유와 생태의 가치를 지향하는 실천적 행위를 추구한다.
- (2) 이러한 시민적 실천 행위들은 지식, 문화, 예술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물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 (3)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식, 문화, 예술의 창조적 융합을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혁신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공유지식 기반형 도시재생' 방안을 구현하고자 한다. 경의선 철길 주변에는 서강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들이 포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으로 서울의 여타 대학들의 접근성도 매우 좋은 편이다. 우리는 서울의 이러한 지식과 문화, 예술의 생산거점들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생산물들이 이곳에서 모이고 공유되며, 시민들의 자발적 힘과 결합되어 사회혁신과 도시재생의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이러한 시민적 공유 실천들이 추진되는 이곳을 '경의선공유지'라고 명명하고, 이 자치적 공유지의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오늘 '경의선공유지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자 한다. '경의선

공유지 추진위는 공덕역 옆 경의선 부지를 공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하여, 자유롭고 해방적인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안적 도시공간을 만들고 나아가 한국 사회 전체가 권력과 자원의 사유화와 독식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년 5월 3일

공유와 상생의 공간을 위하여
경의선공유지 추진위 발기인 일동

물품공유를 통해 바라본 공유와 도시

신호근
(은평공유센터)



은평공유센터
EUNPYEONG SHARING CENTER

1.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2. 현재 국내 물품공유 사례
3. 자원(물품)공유에 대한 시사점
4. 자원(물품)공유의 우려와 기대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공유”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를 포함하여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세계 속 공유경제

- 로렌츠 레식 교수 「한번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빌려 쓰고, 빌려 주는)하는 협력적 소비경제」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도시에서의 협업 : 공유에서 ‘공유경제’ 中 「공유경제란 무엇인가?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아직 보편적 합의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손대지 않은 “잉여” 혹은 “유휴” 자산을 주로 어떤 유형의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를 통해 타인과 교환하는 조직화된 상호 작용을 말한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

한번 더 정리해 보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한번 생산된 유·무형의 자산 중 '임여', '유휴' 상태 자산을 어떤 유형의 대금, 서비스 등을 통해 타인과 교환하여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개인과 비영리·영리 단체들의 경제 또는 활동.

현재 국내 물품공유 사례

차량공유

- 쏘카, 그린카, 플러스, 렉시

SOCAR

대한민국 No.1
Green Car

의류공유

- 열린옷장, 키플

THE OPEN CLOSET.NET
열린옷장

Kiple

공간공유

- 코자자, 스쿨쉐어링

KOZAZA

SCWOL
SHARING

물품공유 (공구, 캠핑용품 등)

- 은평공유센터, 오버더펜스, 쏘시오

은평공유센터
EUNPYEONG SHARING CENTER

OVER THE FENCE

SSOCIO
SHALL WE SHARE?

현재 국내 물품공유 사례

은평공유센터 EUNPYEONG SHARING CENTER



3%의 물품 대여료의 수익
28,229,800원 (17년 8월 기준)



물품공유 : 8,548건 발생
(2017. 8월 마감기준)

생활용품, 캠핑용품, 공구용품 300여종
구매가격의 3%가격으로 이용(일사용 기준)

실제 구매가격으로 환산 시
931,583,400원, 중복 대여 고려
6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 발생

현재 국내 물품공유 사례

2016. 공유허브 자료

1. 서울시 공유정책(추진실적)

서울시 공동 이용 센터 (17년 8월말 기준) 회원수 약 124,256명 방문객 4,057명 이용 운영지점 1,386개소 차량 4,156대	서울시 공공장점별 대여허브 (17년 8월말 기준) 누계 170만 회차 450대 차량 5,000대 설치 131만건 대여	공공시장 (17년 8월말 기준) 방문객 2만 9천여명 이용 94개 운영	공공대여소 (17년 8월말 기준) 방문객 2만 4천여명 이용 215개 지점
아이웃-장난감 공유 (17년 8월말 기준) 누계 등록 회원 1만 2천 1만여 회차 5,212건 방문객 9만 5천 여명	주최장 공유(무엇집어주기) (17년 8월말 기준) 약 1,980건 음식, 장난, 장동 관련 등 13개구 총 4 9개구 운영개점	주최장 공유(무엇집어주기 등) (17년 8월말 기준) 누계 36.5개소 9,140건	공공시설 공유공간 공유 (17년 8월말 기준) 누계 31만 여명 이용 206년 기준 1,300개소
행차분 최대 공공 프로젝트 (17년 8월말 기준) 총 428명 차량 참여 총 3347구	공공대여소 열방 (17년 8월말 기준) 4,527대(1911대)	서울 시청은행 (17년 8월말 기준) 총 2,784건 사진 1,563건 영상 92건 방문 1,291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17년 8월말 기준)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 단체 82개 공유특산사업에 7개 사업 지원예산액 7억원

2.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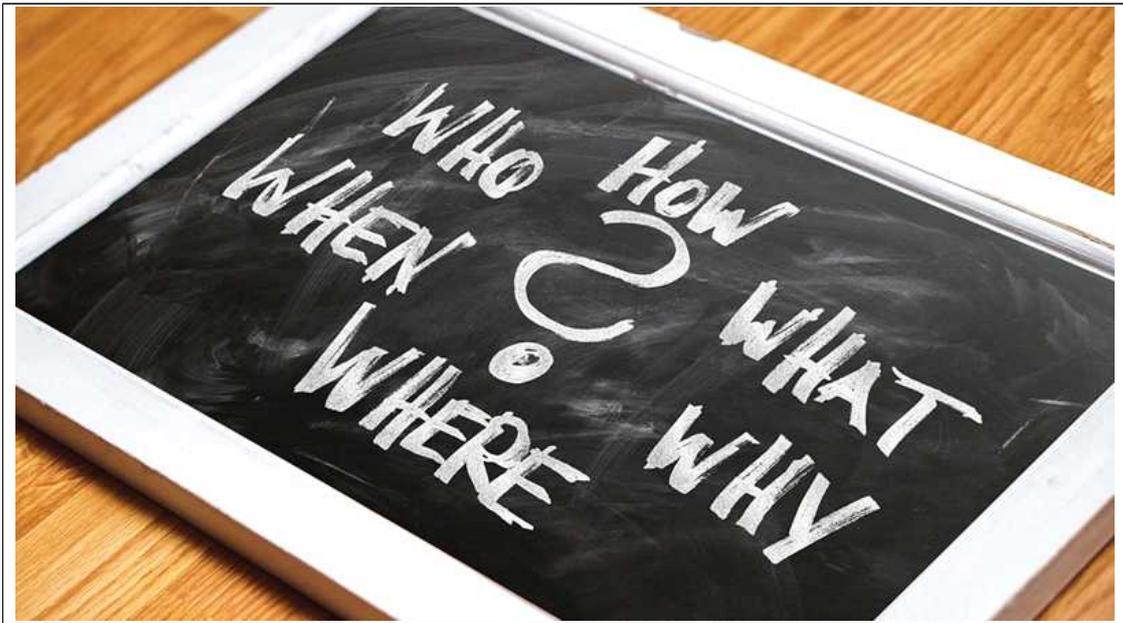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쏘카, 한국키셰어링, 앤스페이스 등 공유기업 940억원 투자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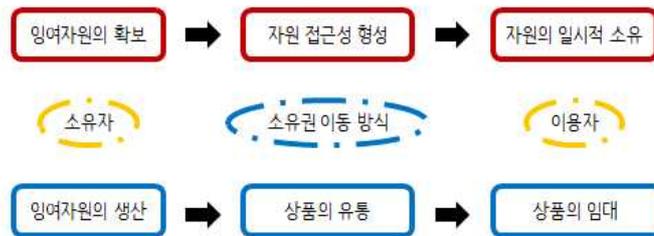


※쏘카, 한국키셰어링, 앤스페이스는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 기업이다. (전년도에 지정받은 공유기업은 제외함)



자원(물품)공유에 대한 시사점

1. 물품공유의 작동



자원(물품)공유에 대한 시사점

2. 공유 작동의 의미

-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공유경제

비경제의 자본화

새로운 플랫폼 사업

생산체계의 변화

- 사회문제 해결과 공유경제

지속가능성

환경오염의 감소

적정생산, 적정소비

상품접근성의 완화

자원(물품)공유의 우려와 기대

잉여자원 활용

새로운 사업

관계 형성의 도구

지속가능한 사회

VS

비경제의 자본화

기존업계의 상품미학

사회관계의 변화

사회 구조의 유지

마치면서..

공유경제센터
GUNPEONG SHARING CENTER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

공유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균형

공유되어야 하는 사회 그리고 환경

당장의 내일이 그리고 미래가 공유될 수 있기를...

새로운 공유지의 창출

- 협동조합의 실험

염찬희

(iCOOP 협동조합연구소)

새로운 공유지의 창출:

협동조합의 실험

염찬희

(iCOOP 협동조합연구소)



구례 자연드림 파크(2017년 전경 사진)

도입

- 한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공유 공간 조성 사례.
 - 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이쿱(이하 아이쿱생협). 78개 지역조합의 15만명 이상의 조합원. 안전하고 적절한 식품 공급 받고자. 전남 구례에 '자연드림파크' 조성.
 - 2014. 4. 개장.
 - 지역사회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

-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공유재산인 구례자연드림파크
- 애당초, 물류센터로 계획되었던 공간.
- 조합원, 구례군의 요청이 반영. 라면공장, 만두공장, 김치공장 등의 가공공장들과 카페, 영화관, 식당 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는 작은 규모의 클러스터 형태로 모습을 갖추.
- 아이쿱의 사유지.
- 2014년 개장과 함께 일반에게 개방.
- 영화관, 식당 이용과 체험프로그램 신청을 포함한 유료 방문자가 35만명(2014.4 ~ 2016.12)
- 월평균 1만3천명 (2016), 개장 당시인 2014년과 비교할 때 2배로 급증.
- 직원수 511명(2016).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지역사회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 인구유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 견인.

군이 아이쿱생협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자연드림파크를 식품 가공 공장과 영화관, 체험관 등의 문화·휴식시설을 갖춘 6차산업모델로 가능하게 했다. 자연드림파크가 구례에 새 동지를 들면서부터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 연간 18만 명의 유료 방문객과 전국 자치단체 등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찾고 있다. 근로자 평균 연령이 38세로 젊은 층이 지역에 많이 돌아왔다. 지역이 활력을 찾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인구가 확보되어, 인구 감소지역이던 구례군이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구례에서 실현되고 있다.(구례군수, 2017.3.8)

연구 목적

- 목적:
 - 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공유지(communs)를 창출하고 운영하는지를 설명. 그 과정을 설명.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례.
- 연구를 추동한 질문들:
 -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아이쿱 협동조합이 만들어낸 커먼즈라 할 수 있지 않은가?
 - 구례파크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아이쿱과 지역사회,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에 의한 “공유하기 do commoning”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전국 네트워크를 갖는 하나의 커뮤니티인) 협동조합이 지방 지역에서 '커먼즈'(공동소유 common property resources)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역에 개방했는데, 이것은 협동조합 체제에서만 가능한 일.
- 그 결과, 공유재산은 지역의 공동 자원 common pool resources이 될 수 있었다.
-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협동조합이었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토지 구입 비용(45억), 그리고 건축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조합원 규모의 협동조합.
- 협동조합에 의한 커먼즈 창출 과정을 설명하는 이 연구 작업은 지방정부에게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방법들 중 하나로 커먼즈를 고려하게 해주는 실천적 개입이라 할 수 있겠다.

이론적 자원

- Hardin- 관리되지 않는 자원.(*The tragedy of the Commons*)
- Ostrom- 사회적 제도.(*Governing the Commons*)
- Massimo De Angelis- 공유지를 만들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
- Linebaugh - 자원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들의 투쟁을 통해 생산되는 것.
- Bollier - 커먼즈의 구성요소: 자원, 자원을 관리하는 커뮤니티, 규칙/전통/가치.

구례자연드림파크라는 커먼즈

- 아이쿱생협 소개:
 - 소비자협동조합
 - 1997년 설립. 1998년 창립 총회.
 - 친환경, 유기농 식품 공동구매.
 - 윤리적 소비와 생산 실천코자.
 - 2017년 12월 현재 조합원 262,507명, 95개 지역조합

전국 15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전남 구례에 공유 공간을 갖게 된 과정

- 2000년대 말부터 조합원수 급증. 순천에 위치한 전남 중부 권역 물류센터 공간 부족해짐. 순천에서 멀지 않은 위치의 부지 물색 중. 구례군이 농공단지 조성 중이라는 정보.
- 인근에 고속도로, 매입 가격 할인, 구례군의 지원 약속이라는 장점.
- 파크 조성 비용은 내부유보금과 조합원 출자 및 차입금으로 충당. 조합원은 조합과의 소통 외에 출자나 차입을 통해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조성에 대해 인지하고, 그리고 자연드림파크에 대한 소유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공유하기Do commoning”

- 아이쿱생협은 2014년 4월에 공식적으로 구례자연드림파크를 개장.
- 그 공간에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은 물류센터와 식품 가공 공장.
- 그 후에, 숙박시설, 체험관, 영화관, 식당, 연못, 잔디광장, 카페, 그리고 맥주집 등의 문화시설이 속속 지어져서, 현재의 자연드림파크 형태로 완성.
- 아이쿱이 사적으로 소유한 공간이지만, 조합원 뿐 아니라 일반 누구라도 이 공간의 이용 가능.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공유하기 Do comm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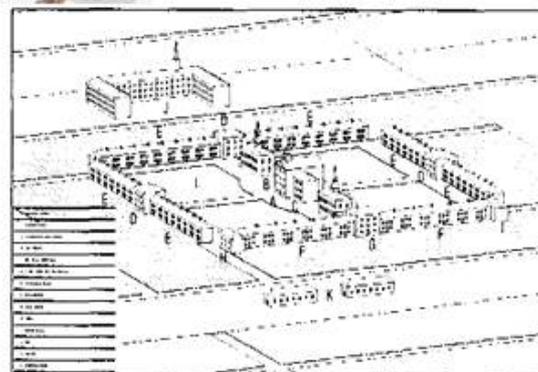
- 만들 수 있던 데에는 아이쿱, 파크의 직원들, 구례군, 그리고 지역의 조직들, 주민들이 함께 협동했다는 점에서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커먼즈'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
- 구례자연드림파크에 관계하는 이들 다양한 행위자들은 다양한 사안에서 다양한 관계맺음을 이루면서 합의를 이끌고 협동. 이들의 협동이 이 공간을 지역사회의 공동자원 common pool resources으로 만들었다. 그들에게는 이 공간이 누구의 소유 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 구례 파크의 공간 구조와 건축물들의 특성도 이 공간을 '커먼즈'가 될 수 있게 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



구례자연드림파크 지도
- 부지전체의 형태: 사각형
- 개방적, 외향적 커뮤니티

Owen의 협동촌 복원도

- 사각형
- 자기충족적, 닫힌 커뮤니티



구례파크는 공간 구조상 커먼즈가 되는데 역할

- 구례파크의 진입은 동쪽과 남쪽의 두 길. 진입로에 경비나 차단기 없음. 통과를 위한 어떤 의무도 없음. 즉,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을 드나들 수 있다"
- 모든 시설은, 심지어 공장조차도 개방되어 있다. 입장료 받지 않는다. 누구나 원하면 이 공간에 들어와 연못을 즐기고, 잔디광장에서 공을 차거나 소풍 도시락을 준비해서 시간을 보내거나, 영화관과 식당, 카페, 매장, 맥주집 등이 있는 거리를 거닐 수 있다. 영화관, 식당, 카페, 매장, 맥주집 등은 상품을 구매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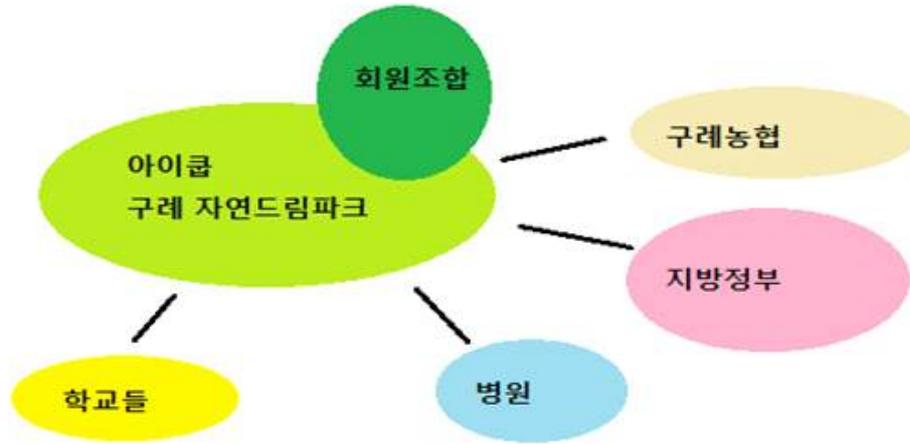


맥주집, 연못, 매장, 카페, 식당 등.

영화관



구례자연드림파크의 “공유하기 Do commoning”



- 구례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아이쿱생협은 지방정부, 파크의 직원들, 다른 지역조합들, 몇몇 지역 조직들과 단단하게 연결.
- 구례파크는 구례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고, 공동자원으로서의 커먼즈가 되었다.

구례 락 페스티벌: “공유하기”의 일예(一例)

- 구례군이 아이쿱에게 음악축제 개최해줄 것을 의뢰.
- 축제 조직을 위한 몇 차례의 회의. 군청 공무원과 아이쿱 홍보팀, 구례 파크 직원 등.
- 일방적 요구가 아닌 회의를 통한 합의 도출- 젊은이를 위해서 락페스티벌을 개최하자. 구례파크 내의 페스티벌 장소로 쓰일 잔디광장을 자원으로 삼아, 그것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규칙을 마련.
- 합의된 것에 따라, 구례파크의 직원들을 포함하여 아이쿱 직원들은 페스티벌 관련된 업무에 헌신적으로 지원. 구례군과 아이쿱 양자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행사에 임함.
- 2015년 8월부터 매년 개최.



나가면서

- 구례자연드림파크 조성을 추진할 수 있던 데에는 아이쿱과 구례군 양자의 경제적 필요가 맞닿았기 때문.
- 그들은 구례 파크를 상품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접근하지 않음. 하나의 공유지 탄생 가능. 협동조합 조직과 지방정부의 합작.
- 아이쿱, 구례군, 구례 파크의 직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지역 조직들은 공유자(commoners)로서 스스로 자연드림파크라는 자원의 이용에 대한 관리에 참여하고 있다.
- De Angelis에 따르면, 커뮤니티는 공유자들의 모임. 커뮤니티들은 지리적인 지역에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고, 지리적인 지역과 무관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 아이쿱, 구례군, 지역주민, 구례파크 직원들, 그리고 새로운 협동조합들이라는 공유자들은 구례파크라는 공동자원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생성.

- 이 글은 구례파크가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출된 공유지라는 것을 주장한다.
- 새로운 공유지를 창출할 수 있던 조건 중 핵심은 주행위자인 아이쿱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일반 주식회사라면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며, 상품으로 만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
-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만들어냄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이 글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이 글은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커뮤니티에 의한 커먼즈관리체계라는 개념으로 탐구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가 있다. 협동조합의 7원칙인 지역사회 관여를 “커먼즈 이론”으로 접근한 연구는 한국 협동조합 연구 진영에서는 없었던 일.

박탈된 커먼즈를 되살려내는 방식에 대하여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엄문희

(강정평화기행단, 강정마을미술관 활동가)

건설 개발 가속이 붙은 이곳 '제주'에선 자연환경의 훼손이 일상적 광경처럼 돼 버렸다. 마을의 경관은 관광지가 되거나 국책사업 등으로 위협받는 상태다. 이 과정에 외부 자본과 방식이 유입되어 운영되는바 마을 공동체는 단지 '자원 곁에 거주하는 이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강정마을은 커먼즈(communs)라는 개념으로 사고하지 않더라도 총체적 난국이요 위기 상태다. 강정 해안과 구름비 일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복 불능의 상태로 훼손되었고 돌고래가 놀던 바다에 미군의 핵 추진 잠수함이 드나든다. 이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가 조각났다. 국가 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의 내상은 치유되기 어렵다. 이 글 제목에 '박탈'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다. 아마도 우리 사회의 대다수 자연 커먼즈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1. 그 봄부터 4,000일

2007년 4월의 일이다. 제주도정은 애초에 해군기지 후보지가 아니었던 강정마을을 여론조사 3일 전에 후보지로 등록했다. 4월 26일 마을 임시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 찬성 결과가 나온 18일 만인 5월 14일에 해군기지 건설 대상지로 결정했다. 입지 타당성 검토나 사전환경성 검토도 거치지 않고 지역주민 찬성만으로 국책사업이 결정됐다. 해군이 반대여론에 떠밀려 대상지 결정을 못 하고 사업이 철회될 위기에 처하자 사전 공작을 통해 마을주민 일부와 당시 마을회장을 포섭해 대상지를 만들어냈다는 의혹이 짙었다. 마을회 투표권을 가진 1,900명 주민 가운데 89명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2007년 5월 18일에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운동이 시작됐다. 봄 한 달 사이 일어난 일이다. 그 봄으로부터 11번째 봄, 며칠 전 4월 29일은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4,0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해군기지가 마을에 건설되는 과정에서 직면해야 했던 것은 해군과 경찰의 폭력보다 그런 폭력이 가능했던 이 사회의 모순과 희생의 구조였다. 그 구조에 저항하면서 같은 형식으로 싸울 수는 없었다. 문제를 푸는 궁극적인 방법은 해군이나 정부만큼의 힘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내는 태도, 그렇게 미래를 바꿔 가는 방식에 있었다. 평화, 인권, 생태, 문화, 공동체에 관한 문제들은 생계가 해결된 자들의 여가가 아니다. 경제발전 혹은 안보 논리에 간혀 소외되거나 희생되었던 문제들을 고민하는 지금의 강정은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운동의 시작이다. 이런 연유로 강정의 운동은 해군기지 준공이라는 사건으로 성공과 실패를 단정할 수 없게 됐다.

2. 사라진 것들의 이름

한 사회 혹은 공동체에서 어떤 말이 '이름'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그 이름이 가진 가치와 상징을 가져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 이름에 관한 문제의식이 놓일 수밖에 없다. 강정마을의 많은 장소와 행위의 이름이 되는 '평화'라는 말이 그렇고 '구럼비'가 그렇다. 결핍 혹은 상실이 만든 의식화 같은 것으로, 공동재(communs)를 토대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공동체(communitiy)의 파괴를 실감하는 문제의식이 강정에 있다. 더욱이 박탈된 커먼즈를 되살려낸다는 것은 '물질적, 정신적 '폐허'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이란 점에서, 생산이나 창조에 가까운 일이다. 그것의 기능을 가진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

강정에선 그 일이 빼앗긴 것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미래에 박탈을 재경험 하지 않으려는 장치로서 박탈 경험을 전승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평화라는 건 애초에 이름을 갖지 않는다. 그것이 깨어진 후에야 이름이 갖는 것이 평화의 속성이다. 여기서 구럼비란, 잃어버린 모든 것의 이름이자 파괴된 것의 이름으로 여전히 지도에 해군기지 대신 표기된 그 이름이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이었고,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되면 안 되는 것의 이름이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구럼비를 파괴한 희생의 시스템과 국가 폭력의 작동 기제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평화를 짓는 일'과 '그 일이 일어나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강정이 이미 시작한 일이며, 미래에 대해 상상했던 첫 장면이다. 구럼비라는 상징적 존재를 박탈당한 강정의 되살림 작업은 공간이나 프로그램만을 지칭하지 않는 일상의 정치적 장치와 태도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다.

3. 그곳에 구럼비가 있었네

1)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이토록 강정마을이 비통해하는 구럼비는 대체 무엇이었는데? 우선 물질로써 구럼비는 강정 해안에 있었던 길이 1.2Km 너비 250m에 이르는 거대한 현무암 너럭바위였다. 용천 샘이 많아 독특한 해안 민물 습지를 형성했던 곳이다. 부드러운 바위지대에 제주 새뱅이, 붉은발말뚝게 등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했고 제주도가 절대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했던 곳이다. 구럼비 앞바다는 세계적인 규모의 연산호 서식지로 유네스코와 환경부, 문화재청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이다. 4.3 당시는 이 바위 지형을 잘 아는 강정 주민들이 숨어 화를 면하기도 했다 한다. 구럼비에는 할망물이라는 용천 샘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하고 부녀자의 임신을 돕는다는 설이 있어서 제사나 환자의 약을 달일 물 때문에 오기도 했다. 이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 때문에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2011년 9월 2일 구럼비 둘레를 빙 둘러막은 정부는 이듬해 봄 3월 7일에 폭파를 감행했다.

강정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었던 구럼비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로 완전히 사라졌다. 마을 삼촌들에게 듣는 어린 시절의 구럼비는 물일 나간 엄마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이것저것 잡아먹고 뜯어먹고 쉬고 놀던 놀이터였다. 자라서는 이따금 와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던 곳이었다. 갈라진

바위틈으로 꽃이 많았다. 생각해보니 4월이 다르고 5월이 다르고 여름꽃이 다르고 가을빛이 달랐다. 그러다 깨달았다. 구럼비는 무엇보다 '일상의 장소'였던 것이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사는 내내 가까이 있었다. 큰맘 먹을 필요도 없이 손 닿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쉬울 것 없으니 그때는 아름답다고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빼앗긴 다음에야 그 자리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해군기지가 주민에게서 빼앗은 건 다름 아닌 지극히 당연한 그 일상이다. 구럼비가 사라지자 마을이 함께 사라졌다. 강정 사람들은 이제 구럼비를 빼앗긴 성소로 기억하게 되었다.

2) 비통과 희망의 공존

구럼비가 폭파되자 오히려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자연과 지역 사회를 파괴하는 강정 사태를 통해 시민사회가 드디어 안보 논리와 정면 대결을 시작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분단 현실로 인해서 '안보'가 국시 이상의 국시, 절대적 가치가 돼버린 상황에서는, 병영국가 남한의 시민운동은 비록 군사독재와는 투쟁해도 오랫동안 안보주의 논리와 직접 투쟁할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었다. 범죄적인 베트남 파병을 함석헌·리영희 선생 등 일부 지사들이 반대해도 야당은 소리 높여 반대하지 못했다. 1970~80년대에 대학 교련수업 반대운동과 전방입소 반대투쟁 등이 있었지만 미국의 패권전략과 민중 억압의 도구가 된 군대에 아예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운동가는 없었다. 운동권에서조차도 '국가안보는 신성하다'는 명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자 운동은 본격화됐지만, 아직도 대체복무제도도 쟁취하지 못할 정도로 안보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에서 그 운동의 세력은 약하다. 그러나 이번에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한반도와 그 주변 민중들의 공익을 해치려는 안보주의 논리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¹¹¹⁾

기실 강정의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힘의 근원엔 구럼비 폭파라는 무지막지한 억압의 반동이 있다. 또 마을을 사랑하게 된 지킴이들이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아감으로써 운동을 멈출 수 없게 된 이유도 있다. 사람들은 구럼비라 불리던 바위 그 자체의 폭파라는 사건 하나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다. 구럼비가 폭파되는 과정의 문제, 구럼비 폭파가 가능했던 개발주의, 안보주의, 국가주의를 응시하게 된 것이다. 구럼비 폭파로 학살당한 무수한 생명과 미래의 위협과 정치적 희생에 대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자각이 일게 된 것이다. 이제 투쟁의 상대는 단지 저 해안에 들어선 해군기지만이 아니게 되었다. 깨어져 사라진 것이 단지 구럼비 바위만이 아닌 것처럼. 구럼비라는 바위의 파괴는 구럼비라 부르게 될 어떤 미래를 가져왔다.

4. 강정을 살다 구럼비로 살다

마을에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미 파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커먼즈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 커먼즈의 물질적 외형이 아닌 그 커먼즈가 만들어냈던 관계와 생태지형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강정에선 반군사주의 운동, 생태 운동, 공동체 문화 운동, 기억 운동이 일어나는 곳곳에 그 이름을 쓰게 됐다. 이것은 마치 평택 대추리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터전을 잃고 다

111) 강정마을에서 보이는 희망 2012.03.15. 한겨레

른 곳으로 이주한 뒤에도 그곳을 대추리라 부르고 행정명칭 투쟁을 하는 것과 닮아있다. 2007년, 행정명칭 약속 합의를 믿고 대추리 사람들은 고향을 떠났다. 하지만 10년 넘게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추리 사람들은 대추리 행정명칭을 찾기 위해 법정소송 중이다. 정부에 합의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월 3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¹¹²⁾이다. 5월 3일이라는 날짜에도 이유가 있다. 2006년 5월 4일 대추리 행정 대집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5월 4일은 기자들이 모두 휴가라서 3일을 기자회견 날로 정했다고 한다. 누군가는 지우고 싶은 이름이고 누군가는 끝까지 기억해 부르고 불러야 할 이름을 가지게 됐다. 빼앗긴 사람들은 그 일과 그 날을 잊지 않는다.

1) 해군기지 앞 구럼비 광장

2016년 2월 말 해군기지가 완공되고 공사 펜스가 열렸다. 펜스가 열리자 상상 밖의 광경이 나타났다. 구럼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해군기지에서부터 마을 이어도로를 잇는 큰 길이 나 있었다. 정문 앞 사거리에 만들어진 원형 교차로 일대를 <구럼비 광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곳에서 구럼비가 있던 시절부터 이어온 매일의 저항 문화제를 진행한다. 아침 7시엔 해군기지 정문과 일대에서 <생명 평화 백배>를 하고 구럼비 광장에서 강정천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있는 길바닥 성당에서 평화 미사를 한다. 그 광장에서 해군기지로 들어가는 길에 서서 매일 인간 띠 행진을 한다. 인간 띠가 끝나면 구럼비 광장에서 해군기지 방향으로 가다 오른편 길로 <할망물 식당>에 함께 가 밥을 먹는다. 이 길 역시 사라진 장소의 이름을 따서 <할망물길> 이라고 부르고 있다. 할망물 식당이란 이름은 펜스로 막히기 전 구럼비 용천샘 할망물에서 물 떠서 밥 지어 먹던 것에서 유래했다. 그런 날이 있었다. 공사 차량을 저지하다 허기진 배로 건너와 그릇에 국, 찬, 밥 다 담아 숟가락 꽃고 구럼비 여기저기 걸터앉아 바다를 보며 밥을 먹던 그 잠깐의 휴식이 있었다. 그 할망물 곁에 작은 움막을 지어 그릇과 쌀을 보관하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비 안 맞는 식당을 만들었다. 매일 정오에 구럼비 광장에서 인간 띠 잇기 문화제를 하고 이곳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는다. 매일 함께 밥을 먹는 밥상공동체, 식구들인 셈이다. 밥을 먹으며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작당을 하고 놀이도 한다. 마을 삼촌이 아침에 일한 딸기를 놓고 가고, 겨울엔 이집 저집에서 굴을 놓는다. 물 때엔 보말 잡아다 놓는 친구도 있다. 육지에서 라면이 오기도 하고, 농부들이 연대의 마음으로 수확한 것을 보내온다. 마을에 와서 함께 밥 먹은 사람들이 쌀을 보내고 떡을 해 보낸다. 한 달에 한 번씩 식재료 다 들고 와서 밥을 해주는 것으로 연대하는 친구들이 있다. 더러 올레를 걷던 여행자가 머쓱하게 들어와 함께 밥 먹고 강정의 이야길 듣는다. 국가는 구럼비를 빼앗아 파괴했지만, 사람들은 그 이름을 뒤바뀐 풍경에 다시 놓는다. 구럼비 광장엔 하루도 빠짐없이 사람들이 모인다. 일상의 저항이 깨지지 않는 건 구럼비를 데려와 새로 심었기 때문이다.

2) 일상의 정치

돌고래, 똥강이, 멸치, 성계, 반디, 톨(툷), 은어, 산호……. 이것들은 강정 지킴이들의 이름이다. 멸종위기종이나 구럼비 파괴로 보이지 않게 된 생물들의 이름을 가졌다. 오두둑, 호수, 딸

112) 이 글을 쓰는 시점은 4월 말이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쓴다.

기... 강정에선 많은 이들이 본명이 아닌 자신들이 지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나이 성별 직업 역할을 묻지 않고, ~ 씨, 선생님, 누나, 같은 호칭 없이 동의하는 관계 안에서 이름으로만 서로를 부른다. 이런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은 평등한 관계를 위한 장치가 되기도 한다. 강정에서 평등한 관계는 혐오의 정치, 희생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긴 운동의 방식이자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았다. 오랜 시간 주류에 도전하는 '반항자' 이미지로 주류 사회 바깥에 있거나, 혹은 고립되고 열등한 사람들로 '비국민' 취급을 받았고 국가는 그런 비국민에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되어왔다. 이런 혐오와 배제의 정치에 맞서는 다양한 장치와 태도가 강정에 만들어지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강정에서 일찌감치 활발해진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강정에선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하려던 일을 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킴이 집단 안에서 더 중요한 일과 더 높은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다.

3) 기억하는 공간, 기억하는 활동

구럼비로 가던 길이 펜스로 막히자 누군가 그 벽에 문을 그려 넣었다. 문이 열리면 통로가 되고 새로운 길이 나지만 닫힌 문, 열 수 없는 그 문은 안타깝게도 벽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에 영감을 받아 작업했고, 사라진 구럼비 곁 조금 남은 맷부리 바위는 <개구럼비> 라는 이름을 얻었다. 열릴 關, 개구럼비. 열려라! 구럼비.

2017년 4월 16일 세월호 3주기에 맞춰 문을 연 <강정마을 미술관>의 이름은, 그래서 <문>이다. 강정의 일을 비롯한 국가 폭력의 경험을 기억하고 생명, 평화, 강정, 마을에 대한 서로 배움의 활동을 기획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다. 문을 열면서 구럼비 발파 5주년을 기억하는 사진 전시를 했고 2011년부터 강정에 살면서 평화 활동을 하는 대만 여성 에밀리의 그림을 전시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 5년간 이어진 강정평화대행진 각 년도 별 기록물을 2017년 대행진 기간에 맞춰 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억하며 제작한 작품 전시나 인간관계의 평화에 관한 심리 사진 전시 등이 있었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운동 기록 전 등이 준비되고 있다. <강정 평화기행단>과 함께 2017년 한 해 동안 매월 4.3을 여러 주제로 다루는 강연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도 내 생태해설단체인 <한라생태 길라잡이>와 연계해 강정 주민(아동)을 위한 생태놀이 프로그램과 생태드로잉 활동도 준비되고 있다.

강정 마을미술관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여행그룹 강정 평화기행단은 강정 방문자에게 마을을 안내하고 제주도 내 4.3과 전쟁유적 등을 함께 돌아보는 평화기행을 기획한다. 이 외의 다른 공간이나 기획들은 망각에 저항하는 각각의 역할을 가졌다.

4) 생산자 되기

여성 지킴이 상당수가 서귀포 여성농민회 창립을 함께 조직함으로써 토종 종자를 지키고 가꾸는 사업에 동참하게 됐다. 스스로 생산자가 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공동 경작을 하면서 농부학교를 열고 마을 삼촌들과 제주도 농부를 초대해 생명 생태 살림을 강정 투쟁의 방식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강정 평화상단>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강정마을 농수산물 판매대행으로 시작해, 지킴이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강정의 대안 공동체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강정에서 살지 않고 <강정을 산다>는 말, 구럼비처럼 살지 못하고 <구럼비로 산다>는 무엇일까?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내 힘의 우위가 있어야 하는 일이나, 상한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힘의 우위로만 판가름 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 직면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강정의 운동은 ‘판가름’날 일이 아니고 ‘도달해야 할’ 일 인 것이다.

5. 우리가 구럼비다

미국의 군사기지 문제로 연대하는 제주, 오키나와, 대만, 하와이의 연대 운동인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캠프>가 오는 7월 강정에서 열린다. 그런데 이번 캠프의 주제어는 다름 아닌 <우리가 구럼비다>이다.

강정마을의 저항엔 해군기지라는 국가 정책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구럼비라는 바위의 보존은 그 절차상 문제의 한 양태를 나타내기 위해 부각 된 것이 아니었다. 구럼비에 기대어 구럼비를 껴안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실재하는 평화 그 자체였다. 생명이 살아있는 곳, 물이 솟는 그곳은 어떻게 해도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없는 모든 것의 맨 처음이다. “구럼비를 되찾을 때까지 해군과 화해할 수 없다”는 강정의 구호는 단순한 운동 언어가 아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있다면 평화라는 실체는 바로 그런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곳의 운동은 구럼비를 담고 구럼비처럼 살다 결국 스스로 구럼비가 되고 있다.

어떤 것을 되살려낸다는 일은 그것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강정의 구럼비 회복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엘렌 케이¹¹³⁾의 말로 강정의 미래를 예견하고자 한다. 강정의 운동은 군사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현실 투쟁을 넘어서 군사주의에 저항해 미래를 선취하기 위한 운동이 되었다. 박탈당한 구럼비를 되살리기 위해 ‘먼저 온 미래’¹¹⁴⁾를 살게 됐다.

113) 엘렌 케이 Ellen Karolina Sofia Key (1849 - 1926)스웨덴 출신의 여성사상가로 여성문제, 교육문제에 걸친 다수의 저작이 있다.

114) 그레이스의 영화 <스물다섯 번째 시간> 중에서 호수의 말

커먼즈와 꼬문뱅크

공동체은행 빈고

커먼즈와 꼬문뱅크

공동체은행 빈고

共動體恩行 貧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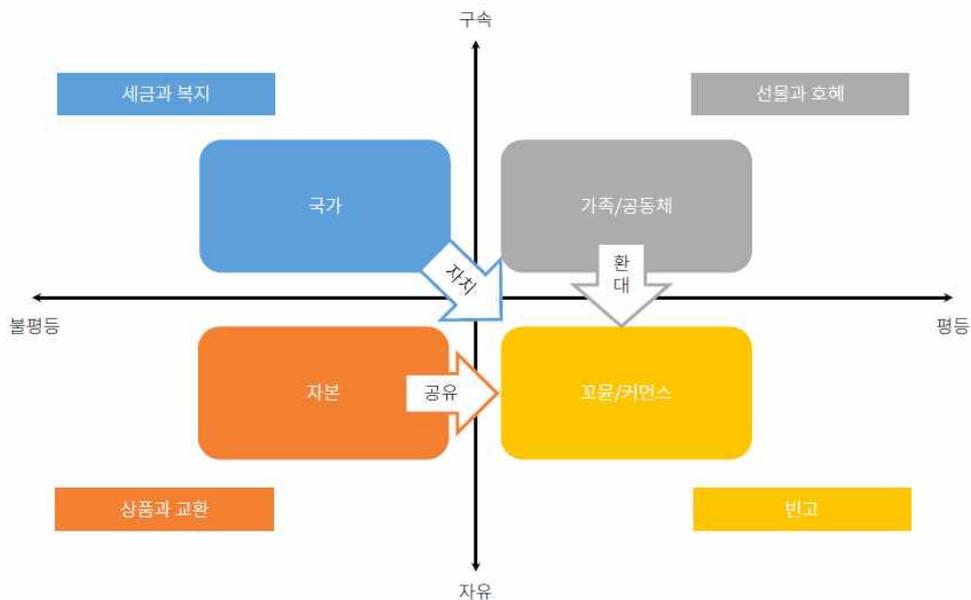
CommuneBank BINGO

커먼즈와 그 적들



이미지 출처: <https://www.serious-eats.com/recipes/images/2016/03/20160324-aqualaba-pancake-oatmeal-vegan-21.jpg>

국가 자본 공동체를 넘어서



커먼즈 어떻게 만들래?



국가 권력 장악



선량한 자본가의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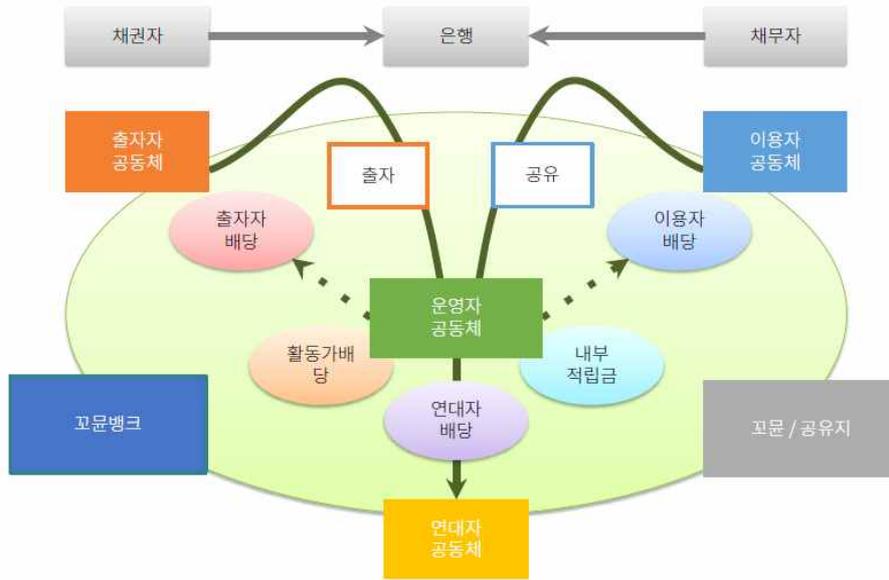
침입, 점거, 탈취

아니면...?

왜 꼬문뱅크인가?

- 사유지를 임대 또는 매입해서 공유지로 전환한다.
- 돈으로 공간을 구하고, 공간을 공유한다.
- 공간을 구하기 위한 돈을 공유한다.
- 커먼즈를 관리하는 공유인들과 코문들과 함께한다.
- 커먼즈를 구성하기 위한 금융적 협동을 실천한다.
- 자본은 사유의 수단이지만, 반자본적으로 운영되는 돈은 공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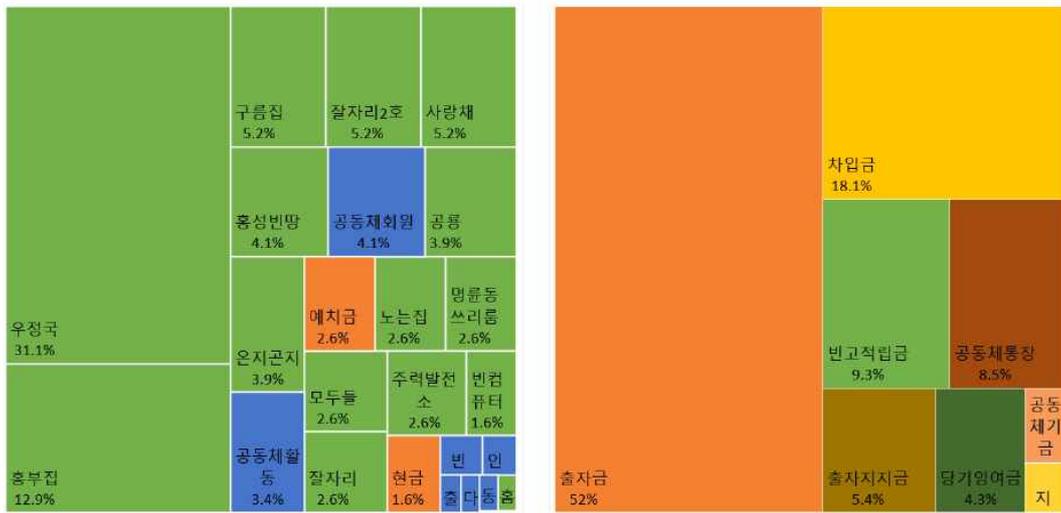
꼬문뱅크



빈고 공유상태표

공유지

공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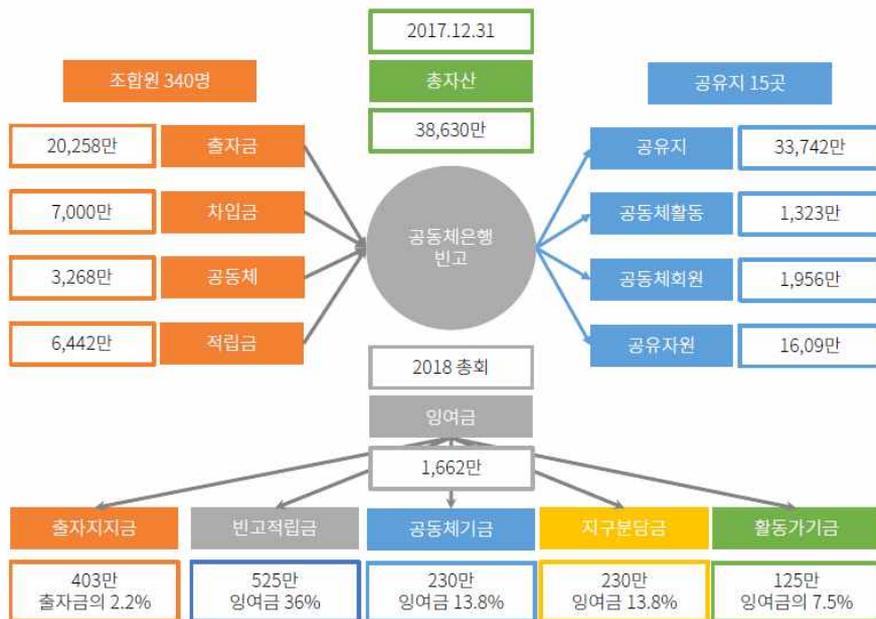


꼬문뱅크 조합원 활동

능력에 따라 출자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한다!
기쁘게 연대하고,
재밌게 운영한다!



공동체은행 빈고 현황



빈고는 얼마나 작은가?

- 2010년 시작. 현재 9기.
- 초기 조합원 : 13명
- 현재 조합원 : 340명
- 출자금 : 2억 (조합원 1인당 평균 60만원)
- 총자산 : 3.8억 (서울 아파트 1가구 전세가 정도)
- 연간 수입 : 3000만원 (1인 노동자 연봉 정도)
- 연간 잉여 : 1600만원
- 활동비 : 35만원*2명
- 비법적 단체
- CMS 출금 없음

빈고는 얼마나 큰가?

- 공동체공간 : 15 곳 / 누적 : 약 45건
- 공동체공간 주민 : 50 여명 / 누적 : 400 여명
- 설립 이후 8년 연속 흑자 (배당률 2% ~ 3.5%)
- 현재 적립금 : 6400만(빈고적립금 3600, 출자지급금 2100 등)
- 누적 출자액 / 반환액 : 9.8억 / 7.3억
- 누적 이용액 / 반환액 : 12.1억 / 8.3억
- 외부 후원금, 지원금 수입 / 지출 : 0원 / 750만

빈고의 특징

법적인 형식을 고려하지 않는 신용협동조합

공동체공간 임대보증금 주택조합

무이자은행? 탈자본은행!

공동체들의 은행

환대에 대한 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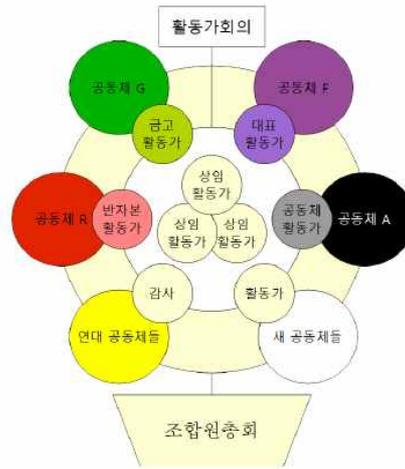
유동성과 유연성

실험적인 운영

빈고 커먼즈



공동체들의 공동체



지구분담금

병역거부자의날 행사 / 일본반핵활동 / 팔당 유기농단지 지키기 / 포이동 공동체 지키기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잔잔 출자후원 / 재능교육농성장 / 밀양분담금 / 빈곤사회연대 /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잔잔 출자후원 / 대한문 쌍차 해고자 주노정 / 계양산 지키기 / 트러스트 / 두물머리 다큐제작 / 꿈꾸는 슬리퍼 / 카페 '그' / 밀양 분담금 / 장애인 등급 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연대 / 유성기업 / 용산비대위 / 콜트콜텍 / 강정마을 평화책방 후원 / 유성기업 / 로자문타나 국제연대를 위한 지역 상영회 / 내성천에서 온 선물 / 땀땀 책협동조합 후원주점 티켓 / 맘상모 / 말레이시아 활동가들 / 유성기업 / 동자동 사랑방 반찬나눔 / 민주노총 서울일반 노동조합 /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 무지개 청소년 세이프 스페이스 / 콜트콜텍 농성장 장작 후원 / 내성천 한 평 사기 / 72시간 송년회 재능투쟁 농성장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 우리동네 나무그늘 상근자 / 투쟁의 그라폰도 / 네팔의 소수민족들의 긴급한 식량지원 / 성북 무지개 한마당 '함께 사니 참 좋다' / 영덕 탈핵 지지 모임 / 에코토피아 / 동자동 사랑방 반찬나눔 / 9월 도쿄의 거리에서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 청년좌파 / 금자취 선물 / 유성기업 영상장비 연대 / 고병원성 조류독감 희생생명 위령제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장 장례위원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여성인권상담소 보다 / 동자동사랑방 / 한광호 열사 민주노동자 장 / 군인권센터 / 워커스 정기구독 / 중국북경 공우지가 / 평창올림픽 반대 에코토피아 / 연대하는 김치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 용산공동정범 배급위원 / 산야 정의단 불심검문 구속 동료 지원 및 불심검문 반대투쟁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체기금

모모 어머니 조의금 / 그림 할아버지 조의금 / 노량사 HIV감염 콘서트 / 계단집 잔액 선물 / 민박 세팅비 지원(해방촌학숙 공동체활동비) / 모두들 2호점 신생공동체지원 / 새집(마루집) 신생공동체지원 / 잘자리 신생공동체지원 / 공룡 신생 공동체지원 / 루쓰공간오픈 축하선물(칠판구입) / 레미 아버지 조의금 / 연두 할머니 조의금 / 모모 결혼 축의금 / 켄짱 외할머니 조의금 / 살림집 화재비용 지원 / 파스 응급실 비용 지원 / 마실집 재정 지원 / 1월 4평 학교 운영비 / 인천 비행 방문 / 마실집 정리 지원 / 지비 축의금 / 모두들 창립총회 / 유농그림 축의금/ 부깅 외할머니 조의금 / 지각생 외할머니 조의금 / 잘자리 겨울대비 / 온지곤지 신생공동체 생성 지원 (도장, 간판) / 혼양 조의금 (잘자리) / 김하운 축의금 / 공룡 흉년으로 인한 재정난 농기구 후원 / 해방촌 빈마을 공동체활동지원 (연말잔치) / 인천 비행 재정 지원 / 빈마을 정서적 폭력 및 스토킹 사건 결정사항에 대한 설명회 / 모두들 총회 지지 / 빈마을 반성폭력교육 / 공룡 옥수수 지지 구매 / 신생공동체 지원 - 모두들 / 신생공동체 지원 - 홍보야지 / 신생공동체 지원 - 잘자리 2호집 / 신생공동체 지원 - 흥부집 / 신생공동체 지원 - 명륜동 쓰리룸 / 동네공간 냉난방기 수리비일부 / 앞집 난방비 - 공룡 / 신생공동체 지원 - 노는집/잘자리 공자 재무교육 / 빈마을 우정국 옥상파티 / 겨울 한파 피해 복구 지원(우정국)/ 겨울 한파 피해 복구 지원(온지곤지) / 겨울 한파 피해 복구 지원(홍보야지) / 겨울 한파 피해 복구 지원 (사랑 채) / 온 지 곤 지 대 동 파 복 구 지 원

빈땅 조합

• 목적

- 지구는 원래 공유지다. 다시 공유지로 되돌리자.
- 우리의 땅을 되찾자. 하지만 또 하나의 지주가 되지는 말자.
- 공유지는 소수만의 공유지가 아니다. 전 지구인, 미래의 지구인을 환대한다.
-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공유지는 풍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유지는 영구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사유화될 수 없다.
- 지구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쓰면서, 가꾸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걸 돌려주는 것. 우리의 빈땅도 그렇게 되도록 하자.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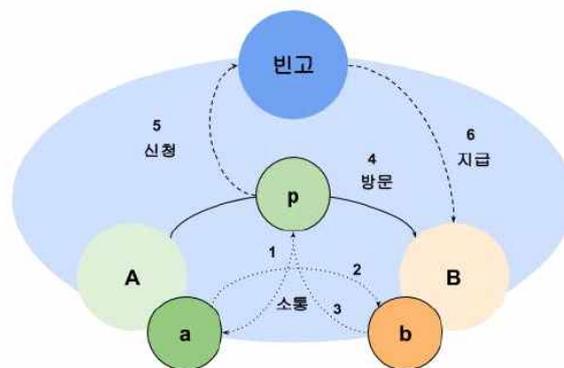
- 각자의 땅을 모아서 공유지로 만든다.
- 각자의 돈을 모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든다.
- 공유지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관리자 공동체를 정한다.
- 관리자 공동체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내고,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공유지 사용료는 전액 다른 공유지를 구할 때 쓴다.

공동체주택 프로젝트

- 목적
 - 지구는 원래 공유지다. 다시 공유지로 되돌리자.
 - 우리의 땅을 되찾자. 하지만 또 하나의 지주가 되지는 말자.
 - 공유지는 소수만의 공유지가 아니다. 전 지구인, 미래의 지구인을 환대한다.
 - 공유지의 비극은 없다. 공유지는 풍요롭게 관리되어야 한다.
 - 공유지는 영구적으로 지켜져야 하며 사유화될 수 없다.
 - 지구는 잠시 우리가 빌려서, 쓰면서, 가꾸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걸 돌려주는 것. 우리의 빈땅도 그렇게 되도록 하자.
- 방법
 - 각자의 땅을 모아서 공유지로 만든다.
 - 각자의 돈을 모아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든다.
 - 공유지를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 땅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할 관리자 공동체를 정한다.
 - 관리자 공동체는 공유지의 사용료를 내고,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 공유지 사용료는 전액 다른 공유지를 구할 때 쓴다.

펭귄조약

- 빈고 조합원이 빈고 공동체를 방문하기 쉽도록 하는 공동체들간의 약속이다.
-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상호 방문을 지원해서 공동체간 인적교통을 활성화한다.
- 조합원이 공동체를 방문할 때, 호스트공동체에게 공동체기금을 지급한다.



조합원 가입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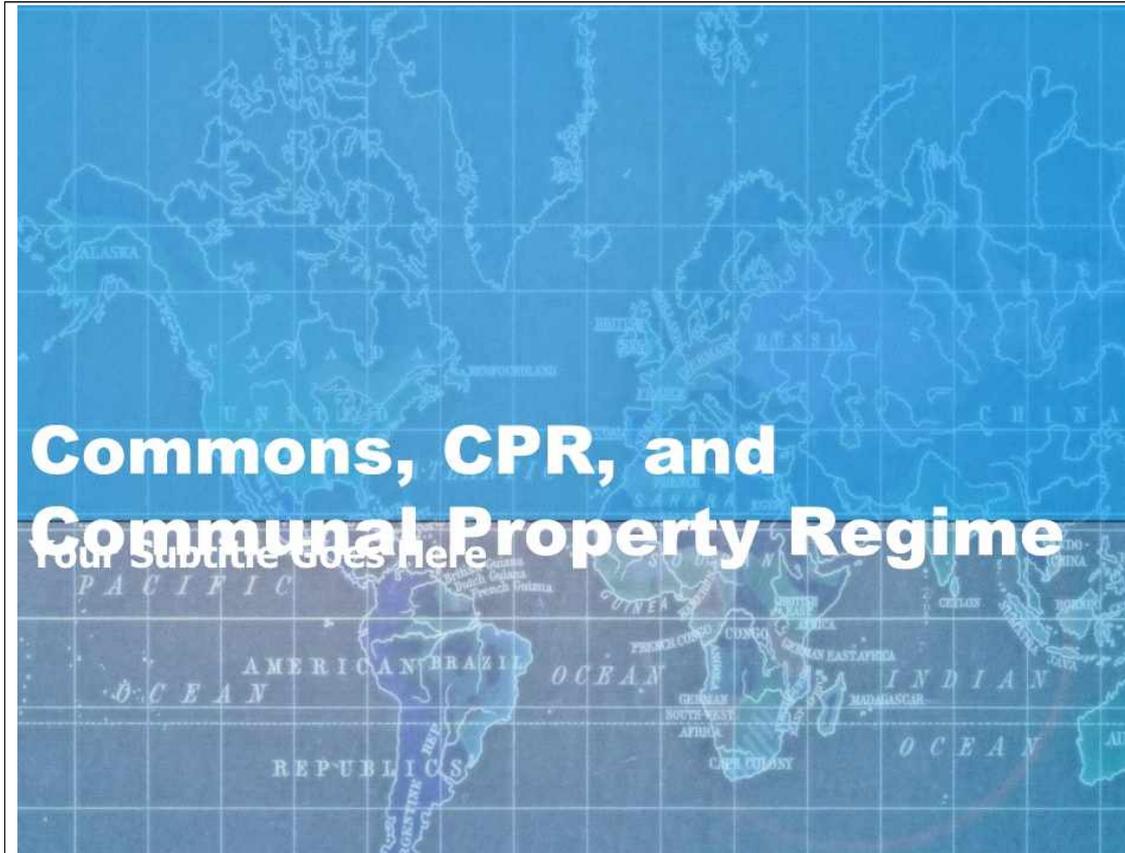
대표전화 010 3058 1968

홈페이지 www.bingobank.org

이메일 bingobank.org@gmail.com

민법과 공동소유

박태현
(강원대 법학대학원)



Commons and CPR

* Commons: In its broadest sense, a commons is a governance system for using and protecting "all the creations of nature and society that we inherit jointly and freely, and hold in trust for future generations."

: 커먼즈는 사회문화 현상(sociocultural phenomena). 커먼즈는 커먼너들이 공유하는(shared) 자원을 육성보호하고자 고안한 자기결정(self-determined)의 규범(norms)과 실천(practices) 그리고 전통(traditions).

*Common-Pool Resources (CPR) : 타인을 그 사용에서 막는 것이 불가능한 않더라도 상당한 비용을 치뤄야 하는" (통상 고갈성<감소성>을 갖는) 재화(a good)

: CPR은 소유/관리 주체(governments-communal groups-private individuals or corporations)에 따라 public goods 또는 private goods 또는 common property resources가 된다

Your Title Goes Here

CPR 관리 체제(regime)로서 커먼즈는 *common property arrangements*에 의지한다.

common property arrangements: ones that tend to be self-organized and enforced in complicated, idiosyncratic social ways, and it generally is governed by what we call Vernacular Law, the unofficial norms, institutions, and procedures that a peer community devises to manage community resources on its own. (State Law and action may set the parameters within which Vernacular Law operates, but it does not directly control how a given commons is organized and managed).

한국법에서 CPR 관리 체제

가. 공유수면(公有水面)

- 정의(소유관계): 바다, 바닷가 및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
- 관리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 (제4조)
- 이용방법: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체계(제8조).

나. 하천

- 정의(소유관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 또는 지방하천(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
- 관리 원칙: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제4조제1항).
- 이용 방법: 하천 점용 허가 체계

다. 지하수

- 정의(소유관계):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 지하수는 공적 자원.
- 관리 원칙: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양질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제3조제1항).
- 이용 방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 체계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 토지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
농업어업 영위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 나머지는 허가

라. 바다

-정의(소유관계): 바다, 바닷가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이용 방법: 어업 면허 체계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에만 면허 (어업권원부에 등록)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

입어나 어장의 구역 분쟁이 있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

한국민법에서 공동소유관계

한국 민법전은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와 「합유」와 함께 「총유」를 규정

*공유: 2인 이상이 물건을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는 관계(민법 제262조제1항)

**합유: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민법 제271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관계(민법 제703조).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 처분 불가(민법 제273조)

***총유: 다수가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민법 제275조제1항). 집합체는 비법인사단. 지분 인정 안됨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민법 제276조).

How do we make a commons?

King Henry III granted commoners rights to use the English forests in the Charter of the Forests. When people have a common right to use some good, and **a law that defends this right**, we have a commons.

공원이용권: 다른 사람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이용 그러나 공원이용권에 기하여 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오래전부터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사유지의 소유자가 건축허가신청.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속되리라고 기대하였다 고 하더라도 건축불허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2017. 7. 21. 선고 2016구합79748 판결)

제주도 풍력자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제주특별법 제30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풍력 허가등 조례'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이하 '풍력 기금 조례'라 한다) 제정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내용:

- 1) 전체 도민의 풍력 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용 이익을 전적으로 전유할 수 없도록 제한
- 2) 공공 관리의 기반으로 발전사업자를 지방공기업 또는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검증되고 개발이익 공유화할 의사가 있는 사업자로 제한
- 3) 마을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

농지공유운동

-한살림과 농지살림운동

남성훈

(한살림연합 조직지원팀 차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살림 밥 운동!

한살림농지살림운동



왜 농지살림 운동인가?



1) 가격/경쟁/효율 우선 농업의 정책과 실천

-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 농지의 농업적 이용가치 저하, 농업종사자의 감소와 고령화

2) 농지의 공익적 가치 유지·보존

- 우렁각시처럼 묵묵히 수행해온 농지의 공익적(다면적) 기능 발휘·실현
- 홍수 조절, 지하수 공급, 대기 정화, 토양유실 방지, 기후 조절,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인간에게 휴식공간 제공, 산림·하천·야생동물과 어울려 자연생태계 전체 균형 유지 등



3) 농지(전용) 감소 제동과 유효이용 촉진

- 적정 농지면적 확보를 통한 식량자급력 향상(세계 식량생산 부족과 불안정 우려)
- 관행화학농법에 의한 농지 오염 억제, 농지의 농업적 이용가치와 생산력 증대, 생태적인 농업(유기농업) 육성 및 확대

4) 농업 포기 및 은퇴 농가 농지 존속·연계

- 힘겹게 가꾼 생태적 농지자원의 관행화학농업 회귀 및 유희화 방지
- 농업 포기 농가 발생 억제(소득보전과 가격지지, 특히 가족적 영세소농에 대해)
- 은퇴 농가 농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기농업 실천 연계



5) 귀농자에 대한 농지 제공을 통한 후계 생산자 확보

- 귀농의 초반 진입장벽의 하나인 농지 문제 해소
- 귀농자를 위한 양호한 적정 농지 제공(임대차) 및
알선(매매)
- 귀농자의 농가경제 및 농촌생활 안정화



농지살림 운동의 기본 방향은?



1) 농지복지 개선 노력

- 농지에 대한 학대와 고문, 공격과 파괴 중단 없이는 인간복지 개선 불가, 농지와 떨어진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따른 현대문명병 환자 점증

2) 농지 공유화(농지 공개념) 노력

-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공유(共有)하는 노력 / 하늘이나 구름, 공기나 물과 같이 사고팔거나 개인이 가져서는 안되는 것처럼(사유화할 수 없는 것처럼) 농지의 공유화(共有財)를 통해, 특히 농지 전용이나 농지의 외지인 소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우리는 토지(농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3) 농지 생태화 노력

- 농지의 영양지수 심각(질소와 질산염에 젖어 있어 온갖 질병의 원인) → 생태농업(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 건강한 농지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육성 노력

4)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지 살림 운동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참여를 통한 농지의 공유 재산화와 생태화 운동 전개



농지살림 운동 주체는?



1) 농지 살림 운동조직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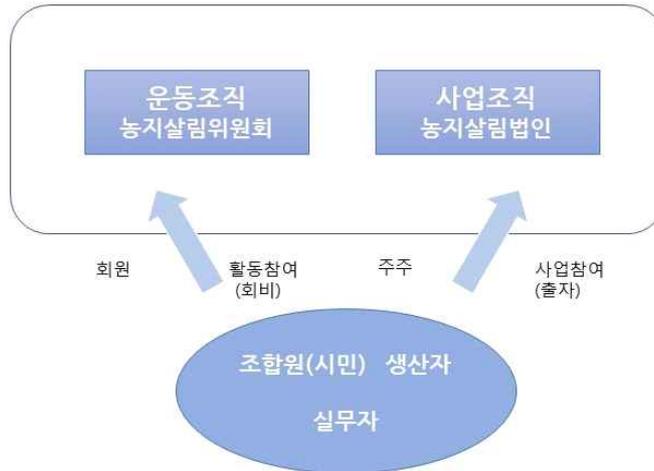
- 다양한 사람들이(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농지 지킴이 운동을 추진하는 운동조직으로 (가칭)한살림·살림 지킴이위원회(또는 한살림농지지킴이운동본부) 결성 / 농지 지킴이 참여 홍보 및 교육 활동, 농지 지킴이 운동 관련 정보 교류 및 공유 등

2) 농지 살림 사업조직 설립

- 다양한 사람들이(생산자와 소비자가) 현물 및 현금 출자를 통해 농지 살림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조직으로 법인 설립(법적으로 농지 취득·확보가 가능한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 협동조합은 현행 법률로는 농지 취득 및 확보 불가능) / 필요시 복수 법인 설립 검토
- 농지 확보를 위한 현물 및 현금 출자 조성, 농지관리(농지 매입 및 임대), 농작업 및 출하 관리 등



한살림 농지살림운동 추진 관계



3) 농지 살림 사업조직 형태의 적합성

- 비농업인 출자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고려할 때,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은 농지 소유 및 확보 불가

<농업법인 설립 요건 비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포함) 5인 이상 조합원이면 설립 가능 • 비농업인(조합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와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조합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하는 자,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자) • 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의결권 행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포함)으로 설립 가능(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 비농업인도 출자 가능(총출자액 80억원 이하인 경우 총출자액의 100분의 90, 80억원 초과하는 경우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 가능 • 업무집행권 가진 자의 1/3 이상 농업인으로 구성



❖ **농업인의 법적 기준** : ①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
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
사하는 자, ②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
닐하우스 기타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위의 4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농지원부 발급 가능

❖ **자경의 법적 기준**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
는 다년생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것



농지살림 현황



한살림농지살림 법인 현황

1. 농업회사법인 한살림디엠지평화농장 유한회사

- 창립일 : 2014. 8. 14.
- 주사무소 : 한살림고양파주(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 사원 : 한살림 회원조직 14곳, 개인 12명
- 보전 농지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 22,268㎡(6,748평)



농사로 알구는 평화

한살림DMZ평화농장의 주인을 찾습니다

한살림DMZ평화농장은,

도·농교류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경기남부 이남에 관중되어 있어 도·농교류를 위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이제 한살림 DMZ평화농장을 통해 우리 지역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가깝고 즐겁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사라져가는 농지와 임진강을 지킵니다.

농업살림의 첫걸음은 사라져가는 농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살림DMZ평화농장은 2014년 3천 평의 농지구입과 5천평의 농지임대를 시작으로 3년 내에 구입농지와 임대농지를 합하여 1만평의 농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임진강만 4개강 사업으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임진강 하천 정비사업 임진강 준설 공사에 대한 반대여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배웁니다.

농성 조성 예정지인 장단면도 임진강에 인한 민통선 이북 지역입니다. 본단의 상징 DMZ에 조성되는 한살림DMZ 평화농장은 교육장을 겸한 체험 사장을 지어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통해 생명과 평화의 위한 배움의 장이 됩니다.

친환경 생산 기반을 넓혀갑니다.

벼와 잡곡 등의 식량작물을 한살림 생산·출하 기준에 맞게 재배합니다. 한살림 전지부은공동체 생산자들이 번갈아 농사 짓고, 생산한 농산물은 한살림으로 출하됩니다. 나아가 한살림DMZ평화농장은 귀농인들의 심습지이자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생산단지로서의 도약을 꿈꿉니다.

임진강과 맞닿아 있는 장단면도 일대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한살림DMZ평화농장이 조성됩니다.

지금 출자에 참여하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 출자금 전액은 한살림DMZ평화농장 조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본 구좌는 5만원이며, 5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회나 이금 시 해당 출자금도 함께 환불 또는 이금)
- 한살림경기시남부, 한살림고양파주상영과 한살림서울 등의 생협과 생산조직이 함께 출자하고 운영합니다.

한살림DMZ평화농장 출자금 납부기간 2014년 10월 31일까지



한살림농지살림 법인 현황

2. 농업회사법인 한살림농지살림주식회사

- 창립일 : 2017. 11. 30.
- 주사무소 :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 주식 보유 : 한살림회원조직 24곳
- 충북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 전답 2,306 m²(700평)



함께 참여해요!
우리도 참여해요!
아이들이 미래!



농지살림



농지를 보존해야 우리농업을 지킬 수 있고, 우리농업이 유지되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살림이 농업 회사법인 '농지살림주식회사'를 설립해 농지를 영구적으로 공유화하여 보존하는 농지살림운동을 시작합니다.

한살림 가치 실천
생명살림의 약속

농지살림

쌀 1kg 생산하는 논 0.7평(10만원 기준) 출자!
60만 조합원이 논 45만 평 지키고
연간 쌀 53만 kg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지 공유화
유기농지 영구보존





유기농지 영구보존



**귀농자
농업후계자
농지 확보**



**식량자급
기반 확보**



**지가상승
토지개발로부터
농지보전**



농지살림운동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농지살림 운동 출자참여 평가



구분	계획 내용	실행 내용
회원생협의 목적출자를 통한 기관출자	☞ 회원생협, 생산자조직별로 한살림 쌀 1kg을 생산하는 논 0.75평(10만원)을 1계좌로 하여 출자자를 모집한 뒤 농지살림주식회사에 기관출자	☞ 회원생협 기관출자 이루어짐
농지 현물 출자	☞ 한살림 생산자등 농민이 농지 현물 출자	☞ 참여 가능한 방식이나 실제 출자 건 없음
정기후원	☞ CMS 등으로 정기후원 회원 모집 · 후원회원에게는 농지살림 소식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농장 방문 프로그램 등에 초청	☞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농지살림주식회사에서 조합원(불특정다수)에게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기 어려워 적극적 실행 안 함
일시후원	☞ 농지살림주식회사 계좌로 소액후원 모금	
농지기부	☞ 기부 의사가 있는 생산자들로부터 기부받은 농지를 공익신탁으로 등록해 친환경농지로 영구 보전	☞ 참여 가능한 방식이나 실제 기부 건 없음



농지살림 운동 향후 계획



구분	내용
조합원들의 목적 출자금을 통한 회원생협 기관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생협, 생산자조직별로 10만원을 1계좌로 하여 출자자를 모집한 뒤 농지살림주식회사에 기관출자 ☞ 농지 1평당 10만원으로 1천 평을 산다는 목표로 1억 원 모으는 농지 1평 살리기 운동 전개
농지 현물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살림 생산자 등 농민이 농지 현물 출자
공익신탁을 통한 농지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의사가 있는 생산자들로부터 기부 받은 농지를 공익신탁으로 등록해 친환경농지로 영구 보전



구분	계획	확인 필요
농지트러스트 관련 법 제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제도하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기부를 받아 농지를 매입 및 보전할 수 없음.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농업 보호와 농지 영구 보전이 목적인 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활동 필요
농지은행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유기농지를 별도로 운용 및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유기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은행에서 유기농지로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고맙습니다.

다시,
밥



세상의
밥이 되는
한살림

미술관과 공유지

이수영
(백남준아트센터)

미술관과 공유지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아트센터

- 전시
- 교육
- 연구

백남준아트센터

- 전시
- 교육
- 연구



공동진화:
사이버네틱스에서
포스트휴먼

COEVOLUTION:
CYBERNETICS
TO POSTHUMAN

국제학술포럼 백남준의 선물 9
International Symposium Gift of Nam June Paik 9

2017.7.8/15/22/29

백남준아트센터 10주년



커머닝

- 사유재산화하는 반하여 공통적인 것을 만드는 것
- 공동체가 생존 혹은 더 좋은 삶을 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
- 전과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커먼스
- 생산 뿐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포함하는 사회 전방위적, 상호작용적 행위

예술 공유지, 백남준

- 나는 TV로 작업 할수록 신석기 시대가 떠오른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놀랄만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바탕을 둔 정보 녹화 시스템에 연결된 기억의 시청각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노래를 동반한 무용이며, 다른 하나는 비디오다... 나는 사유재산 발견 이전의 오래된 과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 그렇다. 비디오아트는 신석기시대 사람들과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 비디오는 누가 독점할 수 없고, 모두가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동재산이다. 비디오는 유일한 작품의 독점에 바탕을 둔 체제로 작동하는 예술세계 사이에서 힘들게 버텨내고 있다. 현금을 내고 사가는 작품, 순전히 과시하고 경쟁하는 작품들로 이루어진 예술세계에서 말이다.
- 백남준, "DNA는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다", 1988.

비디오 공동시장

- 우리가 춤과 음악이 중심이 되는 주말 페스티벌을 TV에서 다루고 비디오 공동시장을 통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과 오락에 미치는 영향은 놀랄만큼 클 것이다. 평화 또한 존 웨인의 전쟁 영화 못지않게 신나는 것이 될 것이다. '세계평화'라는 진부한 슬로건은 또다시 생생하고 상업성있는 것이 될 것이다....

비디오 공동시장

- 오늘날 비디오 문화는 인쇄물보다 더 국가주의적이다. 미국 TV화면에 등장하는 대부분 아시아 사람들은 비참한 난민이거나 불행한 죄수, 혹 가증스런 독재자 뿐이다. 이와 같은 엄청난 정보 결핍이 결국 베트남에서 벌어진 것과 비극에 한 몫을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비디오 공동시장 계획은 유럽공동시장을 위한 협의만큼이나 난관과 좌절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성과는 철학적 측면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더 빠른 자본화 또한 문화경제의 수익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이 금본위 유통을 위한 특별인출권이 승인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미래의 비디오 공동시장의 모델이 될 것이다.

비디오 공동시장

- 1938년 벅민스터 플러, “경제라는 용어의 기원은 그 자체가 생태학, 즉 주거를 근본으로 하는 삶의 기술에 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주거 조건이 아니라 삶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이며 기획이다...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 총체성은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달렸다. 개인의 생존은 번영이냐 절멸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전체의 생존과 운명을 같이 한다.”
- 생태학은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 경건한 세계에 대한 관념이다. 그것은 세계의 기획, 전 지구적인 순환, 인간행동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 ‘너 아니면 나’로부터 ‘너와 나’로의 변화는 이 같은 운동을 주도한 플러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주장이다.

비디오 코문, 글로벌 그루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2273&cid=58862&categoryId=58872>

예술 공유지, 백남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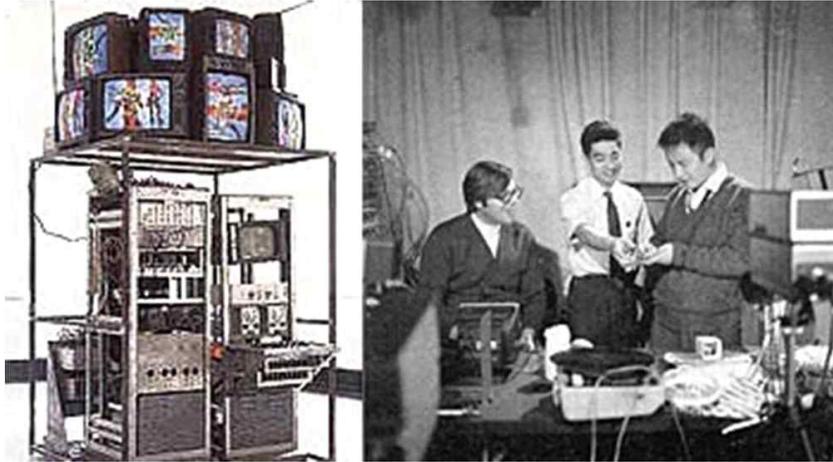
- 플럭서스 그룹
-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 비디오 코문
- 미디어의 기억
- 위성 오페라 삼부작

플럭서스 그룹



Phil Corner, "Piano Activities", 1962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미디어의 기억

- 백남준 후기 작품에서 사용된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 축음기, 라디오, CRT, TV, 비디오, 레이저
-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과 역사에 대한 경험은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문화적 역사적 공유지

위성 오페라 삼부작



미술관 점거 운동





Occupy Museums, *DebtFair* (2017). Photo: Henri Neuendorf.

WHITNEY BIENNIAL 2017 CV

63 ARTISTS AND COLLECTIVES
59 BACHELOR'S DEGREES
40 MASTER'S DEGREES
4 DOCTORATE DEGREES

PRICE OF ENTRY TO THE BIENNIAL:
103 DEGREES AT A COLLECTIVE COST OF \$5.78 MILLION.*

\$60,000+ (2-year program tuition only)

Bard College BFA
 Bard College MFA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BFA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M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B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B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B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FA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FA
 Columbia University BA
 Columbia University BA
 Columbia University MFA
 Columbia University MFA
 Columbia University MFA
 Columbia University MFA
 Columbia University MA
 Davidson College BA
 Earlham College BA
 New York University MFA
 Pratt Institute BA
 Pratt Institute BFA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MFA
 The New School MA
 Tulane University B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BF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F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FA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FA
 Stanford University BMS
 Stanford University MS
 University of Chicago BA
 University of Miami MFA
 Wesleyan University BA
 Wesleyan University BA
 Wesleyan University BA
 Yale University MFA
 Yale University MFA

\$70,000+ (2-year program tuition only)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MFA
 Cleveland Institute of Art BFA
 Cooper Union BFA
 Cooper Union BFA
 Cooper Union BFA
 Cooper Union BFA
 Emerson College BA
 Minneapolis College of Art and Design BFA
 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MA
 San Francisco Art Institute MFA
 University of Hartford MFA

\$40,000+ (2-year program tuition only)

Columbia College Chicago BA
 Cooper School of Design BFA
 Oregon State University BA
 Texas Tech University PhD
 University of Akron BFA

\$30,000+ (2-year program tuition only)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BFA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BFA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FA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FA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FA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MFA

\$20,000 + (2-year program tuition only)

Arizona State University BFA
 Arizona State University MFA
 Arizona State University MA
 Arizona State University PhD
 Ohio University MFA
 Rutgers University MFA
 Trinity Western University BA
 University of California MFA
 University of California-Irvine BFA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BFA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BFA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MFA
 University of Oklahoma BA
 University of Washington BA
 University of Washington BFA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BA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 MFA
 Wayne State University PhD

\$15,000+ (2-year program tuition onl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
 Florida State University BA
 Montclair State University BA
 Portland State University B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BA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BA
 SUNY Buffalo State BFA
 SUNY at Purchase College BFA
 SUNY at Purchase College BFA
 SUNY at Purchase College MFA

Other

Academy of Fine Arts, Vienna
 Chelsea College of Arts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Escuela de Artes Plásticas y Diseño de Puerto Rico BA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MA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Skowhegan School of Painting and Sculpture
 Tokyo University of the Arts PhD
 Universität der Künste MFA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Whitney Independent Study Program

DO YOU BELIEVE IT MAKES SENSE TO GO INTO DEBT TO STUDY ART?

58% SAY NO**

* 63 artists and collectives consists of 79 individuals. Of these 79, 12 do not have public CV information. The remaining 67 have available information accumulated here from personal sites, gallery CVs and interviews. Institutions are grouped at their current (2017 or most recent 2016) tuition fees. Tuition costs are taken from institution websites and do not account for financial aid, scholarships or cost of living. Installa costs were given preference where applicable.
 ** The DebtFair installation includes a public questionnaire for museum viewers. To date, nearly 6,000 responses have been counted and 58% of museum viewers do not believe it makes sense to go into debt to study art. -Occupy Museums, May 2017

DEBTFAIR
 WWW.DEBTFAIR.ORG

무엇이 문제인가

- 높은 작품 가격
- 예술 노동 가치 평가, 예술가들의 빛
- 미술관 전시의 벽-누구를 위하여 전시가 쓰여지는가
- 미술관내 노동의 소외

공유지로서의 아카이브

- 미술관에서 전통적인 예술 매체가 더 이상 우선 순위가 아니며 해방 전통에 대한 헌신에 의해 주도되고 다른 근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를 인정하는 작업의 구성을 제시한다.
- 게르니카 자체는 Jean-Paul Dreyfus의 남북 전쟁 다큐멘터리 Spain 1936을 보여주는 갤러리 맞은 편에 직접 설치됩니다. 따라서 민간인의 외상과 파괴에 대한 기록은 피카소의 회화 판을 두 가지 형태의 단색 보도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공식적인 혁신과 특이한 천재성에 대한 예술-역사적 담론보다는 사회 정치적 역사에서 게르니카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Borja-Villel의 대안은 최근의 '탈식민주의'(지구적 남부의 관점에서 본 세계)와 (공동 소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내고자하는) 공유지에 대한 최근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의 출발점은 여러 근대성이다. 전위 예술과 주변 파생물에 대한 예술 역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상 유럽의 중심을 우선시하고 분명히 '뒤늦은'작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있는 정도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의 맥락. 이 장치는 문화가 국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컬렉션의 기록 보관소로 재구성됩니다. 한편, 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더 이상 시장 인구 통계의 여러 관객이 아니라 급진적인 교육이다: 보물로 보지 않고 예술 작품은 '관계형 객체'로 동원 될 것이다 (Lygia Clark's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육체적, 사회적 및 정치적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모델은 자크 랑 시어 (Jacques Rancière)의 "무식한 교장"으로, 시청자와 기관 사이의 평등성에 대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레이나 소피아 뮤지엄



공유지로서의 아카이브

-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을 '공유지의 기록 보관소 (archiving of commons)'로 되돌리기
- 박물관은 예술 작품을 합법적으로 자료-documentation으로 재 분류하여 예술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 예를 들어, 대중은 도서관에 가서 출판물, 사진 예술작품, 서신 및 기타 원본 자료를 도서관에 가서 볼 수 있음

Casco Art Institution; Working for Commons

- ‘바쁨’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 바쁨은 생산력에서 오는 것- 반자본주의라기 보다 비자본주의적 수행
- 비자본주의적 문화 구조에서 나오는 연구와 실험
- 신청, 보고, 평가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펀딩. 신뢰와 투명성, 상호의존적 관계,
- 비형식적 경제; 지식, 개별적 skillset, 여타의 비화폐적 자원
- act, body, kirakira